민주언론시민연합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언론장악 백서

목 차

제1부 언론장악의 과정과 의미 · · · · · · · · · · · · · · · · · 9

제1장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 · · · · · · · · · · · · · · · · · · · 11

1. 이명박 정부의 공영미디어 장악
   1) 언론장악의 의미
   2) 인적 장악의 과정
   3) 저항과 탄압: 2012년 언론노조대파업
   4) 언론장악의 논리, 수순, 과제

2. 박근혜 정부의 공영 미디어 장악
   1) 굳어지는 장악체제
   2) 권력의 대리인 이사회
   3) 낙하산 사장
   4) 노조와해 공작과 비판적 기자·PD 탄압
   5) 신보도지침과 보도개입
   6) 비판적 프로그램 방송 통제
   7) 조직개편을 통한 탐사프로그램 무력화

제2장 방송 구조 개편과 생태계 파괴 · · · · · · · · · · · · · · · · · 34

1. 정부여당의 ‘미디어 악법’ 개정과 종편채널 도입
  1) ‘미디어 악법’의 발의
  2) ‘미디어 악법’의 문제점
  3) ‘미디어 악법’개정 과정과 종편채널 도입

2. 종편채널 특혜와 방송산업의 왜곡
  1) 종편채널 특혜
  2) 방송산업의 구조 왜곡

제3장 표현의 자유 축소와 탄압 · · · · · · · · · · · · · · · · · · · 48

1.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구성과 정파성 과잉
  1) 방통심의위의 출범과 정파적 다수결 심의
  2) 심의기구가 아닌 ‘검열기구’로의 전락

2. 심의를 빙자한 방송 유사검열과 청부심의 남발
  1) 심의를 통한 ‘낙인효과’
  2) 유사검열을 통한 자기검열의 내면화
  3) 표적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통제
  4) 청부심의와 심의기구의 권력도구화

제4장 방송의 내적 자유 침해: 단협과 편성규약 무시 · · · · · · · · 57

1. 방송의 내적 자유

2. 방송법의 편성규약과 현실 운용
  1) 편성위원회 구성과 기능
  2) 단체협약에 결부된 편성위원회의 무력화

3. 편성자율성 침해사례
  1) KBS 사례 - 고대영 사장 임기 중 사례를 중심으로
  2) MBC

제2부 언론장악 일지 · 73

1. 방송장악 조직적 추진
2. 낙하산 사장 임명
3. 보도 및 프로그램 통제
4. 공정방송 요구 탄압
5. 미디어법 강행 및 종편 허가
6. 공영방송 이사회 극우인사 배치 및 장악 체제 공고화

이명박·박근혜 정권 언론장악백서를 발간하며

2016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시민들은 탄핵과 개혁을 요구했다.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권자의 간절함이 담긴 요구였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다.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은 탄핵이 되고, 개혁을 주장한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비정상적 상황이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 문제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냐는 점이다.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것은 부당한 권력이 국가의 질서를 파괴하는 국정농단 상황에 이르도록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그 중에서도 주권자를 대신해서 권력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유지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장치인 언론조차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점이 특히 심각한 문제였다.

KBS, MBC 등 소위 공영언론을 포함하여 우리 언론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주권자인 시민을 위해서 권력을 감시, 견제하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외려 용비어천가를 외치며 권력에 부응하거나, 더 나아가 권력의 일부가 되어 기득권 질서를 공고히 하였다. 비정상적 언론이 대부분인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됐던 것이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당연히 수용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재편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언론 장악과 재편을 기도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 칭하고 그 원인이 마치 '불공정한' 언론에 있는 것처럼 왜곡된 인식을 유포하며 정권을 잡으면 언론을 재편하겠다고 했던 한나라당의 의도를 관철시킨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공영방송은 내·외적 자유를 상실하고 권력의 대변인이 됐다. 이명박 정부는 미디어 관련법을 개악해서 수구 기득권 신문들의 방송 뉴스 영역 진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수구 기득권 신문들에게만 허용한 종편은 저널리즘의 질을 저하시킨 것은 물론 진실과 무관한 수구 기득권 여론을 전파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비정상적인 언론 상황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은 해고나 각종 징계를 당하고, 입을 다물거나 아니면 유배를 떠나야 했다. 언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널리즘적 왜곡을 견제해야 할 방송규제기구들은 권력을 대리해 언론을 통제하고 편파 왜곡보도를 옹호하는데 복무했다. 그 결과 중요한 사회 의제들은 편파 왜곡 보도로 오염이 됐고, 급기야 국정농단 상황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정당한 감시 견제

활동은 불가능했다. 물론 일부 언론이 비판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활동을 꾸준히 수행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은 역부족이었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파괴된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헬조선'이라 불리는 현실을 초래한 왜곡된 국가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다.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미 왜곡된 질서의 일부가 돼버린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개혁에 저항할 왜곡된 언론을 방치하고 파괴된 민주공화국 질서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영방송의 장악 과정부터 보도 통제에 이르기까지 언론들이 어떻게 장악되고 왜곡되어 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한 이 언론장악백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장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항했던 언론인들은 어떤 고통을 겪었으며 언론의 편파 왜곡보도는 주요한 사회 의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하는 등 인적 장악을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공영방송 장악의 선봉장이 될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KBS 정연주 사장 퇴출,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등의 과정을 통해 공영 방송을 장악해나갔다. MBC는 초기에는 엄기영 사장의 인지도와 보수적 성향을 고려하여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여타 장악된 공영방송과 달리 MBC 구성원들의 비판적 보도가 신뢰성과 영향력을 키워 위협이 되자, 엄 사장을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하고 김재철을 사장으로 앉혀 MBC 구성원들을 탄압했다. 연합뉴스 역시 사장이 된 박정찬은 권력의 입맛에 맞는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내적 자유를 억압했다.

2008년 KBS, YTN, 2010년 MBC, 2012년 언론노조 대파업 등을 통해 정권의 부당한 언론장악에 저항했던 언론인들은 해고와 징계로 현장에서 쫓겨나고 입막음을 당했다. 2012년 대파업 당시까지 부당징계를 받은 언론인 수는 해고 21명을 포함 452명에 달했다.

비록 뜻있는 언론인들은 저항했지만, 언론장악은 자행됐고 방송저널리즘의 붕괴를 초래했다. 광우병 보도 탄압부터, 용산 참사 축소 왜곡보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보도 통제, 4대강 사업 관련 보도 왜곡, 인사검증·정부 인사 비리 축소 보도, 세월호 보도 참사, 메르스 보도 통제, 선거 당시 북한 보도 남발, 사드 관련 보도 지침 등등은 저널리즘이 붕괴된 대표적 사례들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언론 전반에 불신을 가지고, 기자들을 '기레기'라 부르며 배척하는 작금의 현실은 일차적으로 권력의 책임이다. 권력은 공영언론 사장 임명을 통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 규제기구를 동원하여 친권력 지배구조를 구성하거나, 그나마 몇 안 되는 비판적 보도를 징계하고 친권력적인 편파보도를 옹호하도록 했다. 하지만 권력의 요구에 부응하여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고 친권력적 보도를 하도록 취재 제작진을 탄압한 공영 언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그리고 이에 적극 협조한 보도 제작 간부들의 책임 또한 막대하다. 이런 인적 구조를 바꾸지 않고 방송 저널리즘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또 공영 언론을 장악하고 정파적 수구 기득권 언론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수구 신문들이 지상파와 종편이라는 방송 뉴스 영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미디어 관련법들을 개악하였다. 헌재 판결대로 대리투표, 재투표 등 위헌 위법한 절차로 날치기 통과된 법이지만 그 법에 근거하여 종편이 등장하였고, 종편들은 선정적이고 불공정한 보도·시사 프로그램으로 방송의

질을 저하시키고 여론을 왜곡하였다. 더 나아가 방송광고판매시장을 왜곡시켜 방송 생태계 전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보도의 불공정성만으로도 방송에서 퇴출돼야 마땅하고, 경영도 부실하여 사업을 재승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편파적인 심사위원 구성으로 재승인 해줬고 심지어 2차 재승인 심사에서는 TV조선이 낙제점을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구제해줬다. 날치기 악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또 부당한 종편 승인과 재승인 등을 자행한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심의 권한을 권력을 위해 악용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상화 시키는 것 또한 시급한 언론개혁 과제이다.

이 백서는 전술한 발간 목적 달성을 위해 1부에서 언론장악의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그 구체적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일지를 정리했다. 1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공영미디어 장악을 살펴보는 1장, 미디어 악법 통과와 종편의 도입 등 방송 생태계 파괴 과정을 살펴보는 2장, 비판적 보도는 징계하고 편파 불공정 보도는 옹호하는 왜곡된 심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를 살펴보는 3장 그리고 외적 자유를 침해한 1, 2, 3장과 달리 내적 자유 침해를 다룬 4장 등으로 구성하였다.

민언련이 작성한 언론장악 백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농단한 과정의 전부를 포괄하지는 않는다. 장악부터 보도 왜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주도자로 또는 부역자로 기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편파·왜곡 보도로 귀결됐다. 전국언론노조가 여러 차례 걸쳐 발표한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이나 이번 민언련이 함께 발간하는 언론장악백서, 왜곡편파보도백서는 언론장악과 왜곡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각각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것이다. 왜곡된 언론질서를 정상화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바람직한 저널리즘 구조를 회복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상화해야 할 부분을 판단하는데 이 백서가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으로 백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이남표 박사의 기획 작업이 있었고, 1장 1절은 신태섭 교수, 2절은 정연우 교수, 2장과 3장은 이남표 박사 그리고 4장은 김서중 교수가 집필하였으며, 이용성 교수 또한 집필 과정에 도움을 주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부록인 일지 작업과 전체 진행은 조영수 협동사무처장이 수고해주었다.

2017년 7월 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1부

언론장악의 과정과 의미

제1장
정치권력의 공영미디어 장악

1. 이명박 정부의 공영미디어 장악

1) 언론장악의 의미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의 핵심은 '언론장악'이라 할 수 있다. 언론장악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낙하산 사장 투하 등을 통해 언론사의 경영·편성 책임자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장에서 다루는 공영미디어 장악이 그것이다. 반면,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라는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 특정 세력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1]를 말한다. 소수 기득권층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언론구조를 개편하는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문체부에 언론인들의 정치적 성향분석 보고를 요구하는 등 KBS·MBC·연합뉴스·YTN 등 공영미디어들에 대한 인적 장악을 추진했다. 인적 장악은 사장교체, 간부 교체,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 통제의 부활, 비판 프로그램과 비판적인 언론인의 축출, 정권홍보 프로그램 신설,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위기 조장 등 조작적 프레이밍의 일상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단락되자 곧바로 방송관련법을 개악하고 종편TV를 도입하여 인위적 언론구조 개편을 단행했다.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중요시했던 핵심사업의 하나였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병행하여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발

1 언론사를 인적으로 장악하는 행위 뿐 아니라,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특정 세력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언론제도를 개편하는 행위, 저항적인 언론인·시민을 탄압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속한다.

현·확장된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탄압과 축소도 추진하였다. 미네르바 구속을 필두로 인터넷 공간에 비판적인 의견을 올린 네티즌들에 대한 광범한 탄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를 빙자한 유사검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지닌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추진, 통신사업자의 감청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악,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강제 등 표현의 자유 일반과 인터넷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길들이려는 각종 악법 추진과 그에 부수한 처벌들이 그것이다[2].

이명박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지형(시청취구독점유율)에서 보수 기득권층의 구조적 우위를 확대·고착시키는 인위적인 방송구조 개편까지 추진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60%-70%로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신문과 방송의 겸업을 허용하는 방송관련법 개악을 강행했고, 조선·중앙·동아·매경 등 기존 여론시장의 강자가 종편TV를 겸영하게 했다. 넓은 의미의 언론장악이 완성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명박 정부 동안 우리나라 공영미디어들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고, 시장지배적 사영미디어들의 여론지배력은 한층 더 확대되었다. 많은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정권의 언론장악 자체에 대해, 그리고 언론장악에 따라 급증하게 된 부당한 통제와 불공정 보도에 대해 질타하고 저항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몰상식하고 야비한 징계와 유사검열을 통한 겁박뿐이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언론지형은 수구보수 기득권층에 구조적으로 편향된 '95 대 5'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우리나라 언론지형(언론의 시청취구독점유율)은 수구보수 지향 95 대 개혁진보 지향 5의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3]으로 고착되었고, 이는 그대로 박근혜 정부로 계승되었다.

2 이러한 정부의 통제와 탄압을 근거로,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2008년부터 우리나라를 검열이 급증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허용되는 국가'(partly free)로, '국경 없는 기자회'(Reoorters Without Borders)는 2009년부터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3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우리나라 언론지형(언론의 시청취구독점유율)은 수구보수 지향 95 대 개혁진보 지향 5의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략 70(수구보수):25(중립):5(개혁진보)의 구조. 중립은 특정한 정파성을 가질 수 없는 공영미디어들의 시청취구독점유율. 공영 미디어가 정권에 예속된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엔 95:5. 4공, 5공 시절엔 100:0. 그러나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언론지형보다는 여론지형(각종 여론조사와 선거에서 확인되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향성, 후보와 정책에 대한 지지율로 표현). 1987년 6월항쟁 이후 우리나라에서 여론지형은 대체적으로 50:50의 팽팽한 균형 상태를 보여온 편. 언론지형이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에도 여론지형이 대등한 각축을 보여온 것은 '시민의 자발적 소통과 참여'에 의해 사안별로 활성화되는 비제도권 시민공론장에 힘입은 현상. 미국의 제도권 언론지형은 오래전부터 친공화당 60% 친민주당 40%로 고착돼 왔음. 그러나, 미국에서도 실제 여론지형은 50:50의 각축 양상. 이 역시 제도권 미디어 밖에서 시민들이 공론장을 창출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2) 인적 장악의 과정

(1) 정연주 사장 해임과 KBS에 대한 낙하산 사장 투입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첫 관문은 KBS에 대한 인적 장악이었고, 또 그 첫 관문은 KBS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해줄 낙하산 사장의 임명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연주 당시 KBS 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고 압박했다. 정연주 사장은 KBS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하는 첫 단추인 자진 사임을 거부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를 강제해임하는 방안을 택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추진했다.

첫째는 정연주 사장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다[4]. 둘째는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검찰의 정 사장 배임혐의 수사와 기소 등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국가 사정기관을 동원한 탄압이다[5]. 셋째는 당시 다수였던 비여당 성향 이사들에게 정치적 전향이나 자진사퇴를 유도해 소수였던 여당측 이사를 다수로 만들어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의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시기 3인이었던 여당 성향 이사의 수는 이후 이어진 비여당 성향 이사들의 자진사임과 타협 및 해임[6]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8년 7월 말 7인으로 늘어 안정적 다수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전정지 작업이 이뤄진 이후, 정연주 사장은 2008년 8월 5일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 런던 올림픽이 한창인 11일 대통령에 의한 해임, 13일 검찰에 의한 긴급체포의 수순으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그리고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이병순 사장을 임명했다. 언론정책을 주무르는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관계기관 대책회의라는 형식의 비밀회동에서 친여 성향이 분명한 이병순 씨를 사전에 사장으로 낙점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묵살됐다.

취임 이후 이병순 사장은 KBS를 급속히 개조했다. 친여·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을 각급 본부장 등 임원으로 임명하고, 팀제를 폐지하고 국·부장제를 복원해 수직적이고 중층적인 관

4 보수신문, KBS노조(현 제1노조), 우익단체, 한나라당은 정 사장이 'KBS 사장직을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했다',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사상과 과거행적이 좌경·종북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전대표 아들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비난하더니 자신의 아들의 미국적 유지와 병역회피에 대해선 입다물어 위선적이다' 등등 많은 비난들을 서로 덧붙이며 사퇴여론을 조성하고 압박을 가했다.

5 감사원의 감사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정 사장 해임을 위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다. 하나는 검찰이 정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수월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 사장에 대한 보수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을 더욱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감사원과 국세청 그리고 검찰 등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만들어낸 거짓을 근거로 정 사장이 사장직에서 해임된 지 3년 반이 지난 2012년 1월, 대법원은 정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6 신태섭 이사는 그가 소속된 동의대학교로부터 2008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KBS 이사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그가 자진사퇴를 거부하자 최종적으로 동의대학교는 총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06년 9월 KBS 이사직을 맡았다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를 그를 2008년 7월 1일자로 해임했고, 곧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해임으로 인해 KBS 이사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7월 18일 친여적인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료주위적 통제 시스템을 부활시켰다. 실무자들을 제어하는 보수적인 중간·고급 간부의 숫자가 3배 이상 늘었고, 결제 단계도 과거 3-4단계에서 7-8 단계로, 결제소요 시간도 2-3배 늘어났다. 친여·뉴라이트 성향 간부들에 의한 내부통제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이어서 이병순 사장은 10월 21일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 방송을 정례화하고, 10월 29일 KBS의 대표 시사프로그램인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를 폐지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며 정부와 대기업 등 사회적 강자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KBS가 지켜야 할 본연의 저널리즘 기능은 급속히 붕괴됐고, 정권과 정부정책에 대한 보도를 가장한 홍보와 기득권층을 위한 편파·왜곡보도는 일상이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는 사원들에 대한 징계 역시 일상이 되었다. 정연주 사장의 해임과 정권의 KBS 장악을 반대하기 위해 출범한 'KBS 사원행동' 소속 기자와 PD 50여명은 9월 17일 지방이나 한직으로 분산·좌천됐다. 또한, 2009년 1월 29일에는 사원행동 양승동 공동대표와 김현석 대변인이 정직 4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KBS에서 정권을 위한 편파·왜곡 보도와, 이에 저항하는 내부구성원들에 대한 탄압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욱 심화됐다. 김재영(2010)은 이를 다음과 같이 썼다.

> *"일개 조직에서 불과 2년 남짓 동안 벌어진 … 일련의 사건들은, 비유컨대 '피바람'에 다름 아니다. 그것이 일반 공중에 대한 책무와 신뢰를 존립의 근거로 삼는 공영방송이자, 오랜 세월 권력의 나팔수란 오명에 갇혀 있다 신뢰도 부동의 1위로 거듭 태어난 국민의 방송에서 일어난 일임을 감안할 때 KBS를 공적 기구이기는커녕 이성적 조직체라 판단하기도 어렵다."*

이병순 사장 재임 기간 동안,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KBS의 권력 감시와 비판 기능은 거세됐다. 각계각층의 이해와 관심을 대변하는 여론다양성은 사라지고, 상충하는 여러 층위의 문제들을 권력층의 단일 시선으로 재단하는 권위주의적 통합이 여론의 이름으로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 역사가 30-40년 전으로 퇴행해 박정희 유신독재나 전두환 군부독재 시기의 '정권의 시녀'가 부활한 것이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서로 듣고 이해하고 절충할 수 있도록 공론장의 역할을 하는 게 방송법이 정한 공영방송의 본뜻이다. 하지만, 낙하산 사장 투입된 이후, KBS의 주임무는 정부정책 홍보와 정권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조성으로 변했고, KBS에서 자율과 협치는 사라졌다. 이 같은 독재 시절로의 회귀는 이명박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또 다른 낙하산 논란을 빚은 김인규 사장이 2009년 11월 24일 취임한 이후 보다 구석구석 스며들었고, 더 공고해졌다.

(2) MBC, 자율성 전통 무너지고 막가파 홍위병으로 변신

MBC에는 한나라당이 야당이던 시기 구성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의해 오랜 인기 앵커 생활로 전국적인 지명도와 높은 호감도를 지닌 엄기영 씨가 신임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2월 29일 MBC 주주총회에서 새 사장으로 선출되었

다. 그는 후일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나간 것에서도 알 수 있듯 한나라당과 교분이 있는 보수적인 인물이었고, 그로 인해 MBC 사장을 다른 친정부적 인물로 바로 교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MBC에는 주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래로부터 상향식으로 구성원들의 의사가 모아지고 이를 각 부문 본부장들이 존중하는 '분권적 자율성'의 독특한 제도와 문화가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1992년 MBC노조의 대규모 파업 이래 형성·계승돼 온, 그리고 노사협약이라는 제도적 장치에 기초한 오래된 사내민주화의 전통이었다[7].

MBC는 2010년 2월 8일 엄기영 사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자진사퇴하기 전까지, 이병순 사장 취임 이후 바닥으로 추락한 KBS를 제치고, 공정성과 신뢰도 및 뉴스 시청률에서 1위에 올라 있었다. 이는 엄기영 사장이 그러한 전통을 일정 수준 존중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가 한 일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MBC를 불공정한 친정부적 홍보기관으로 이끌도록 엄기영 사장을 회유하거나 사퇴를 압박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권력기관이 MBC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MBC의 비판 프로그램 제작 실무자를 체포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재하는 일[8]이었다.

엄기영 사장은 <PD수첩>에 대한 청와대의 고발과 검찰수사 등 MBC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 야기한 비판여론과 MBC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정부 사이에서 오랫동안 동요하다가, 2010년 2월 자신이 추진한 뉴MBC 플랜이 별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양새로 자진사퇴하였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다수 이사가 정부여당측 추천인사로 교체된 상태였다. 방송문화진흥회는 2010년 2월 16일 그의 후임으로 김재철 사장을 추천했고, 주총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김 사장 취임 이후 MBC는 다른 공영미디어들과 마찬가지로 정권홍보기관 정권호위대로 급속한 타락하는 길을 걸었다.

처음에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 취임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 그가 낙하산 사장으로 불릴만한 정치적 이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MBC에 정착된 분권적 자율성의 전통을 자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오산이었다.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김우룡 이사장은 2010년 3월 17일 신동아 인터뷰에서 '3월 8일 19개 지역MBC와 자회사 인선시 김재철 사장이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MBC 내 좌파 80%를 척결했고, 김재철 사장 선임의 첫 번째 기준이 말 귀 잘 알아듣고 말 잘 듣는 사람'이라며 권력기관의 인선개입을 시사했다.

김재철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부적격 인사를 간부로 전진배치시키는 등 인사전횡을 단행하고, 노골적으로 친여적인 불공정 보도를 강행했다. 이에 대응해 노조는 노사협약에 의거해

7 이는 내적 자유의 보장과 발현에서 개혁적 사장의 의지와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온 KBS와는 다른 상황이다. 경영진과 사원 양측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각 부문 간부들에게 일정한 재량을 노사협약에 의해 보장하는 MBC의 '내적 자유 구현방식'은 방송민주화 세력이 전체 구성원의 다수를 점해왔기에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8 2008년 5월 9일 청와대는 MBC <PD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7월 16일에는 방송통신심의위가 <PD수첩>에게 사과명령을 내렸다. 2009년 4월 28일에는 검찰이 <PD수첩> 조능휘 송일준 PD와 김연희 이연희 작가 등 4명을 체포했다.

노사가 함께 구성한 공정방송협의회를 통해 왜곡·편파 보도에 항의하고, 노사협약에 기초해 인사전횡의 중단, 특히 정치적 편향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황희만 보도본부장의 부사장 승진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 사장은 그 요구들을 수용하기로 약속하고 당장의 위기는 피했지만, 그 뿐이었다. 김 사장은 기존 노사협약에 기초한 공정방송협의와 노사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보도와 인사 양면에서 전횡을 계속했다.

결국 노조는 이대로는 MBC의 독립성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2010년 4월 5일 △김재철 사장 즉각 퇴진 △정권의 MBC 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방문진의 근본적 제도개혁 등을 요구하며 5월 14일까지 39일간 장기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역시 성과를 얻지 못했다. 김 사장은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파업종료와 동시에 그 약속을 저버렸다.

사측은 새로운 노사협약에도 불구하고 인사전횡과 불공정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노조는 잇따른 불공정 인사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와 정부의 민간인사찰에 대한 왜곡보도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정방송협의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김재철 사장은 이에 불응하고, 노사협약을 파기했다.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MBC에서 벌어진 일들은 KBS·YTN·연합뉴스에서 벌어졌던 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인사 단행, 노조원 등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 비판 프로그램의 폐지·축소, 친정부 홍보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이 그것이다. 2010년 파업의 실패 이후 MBC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 말할 수 없는 빈사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MBC는 드라마와 오락 등을 앞세우고 그 뒤에서 얄팍하고 선정적인 정치적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는 기형적이고 섬뜩한 방송으로 전락했다.

(3) 불공정보도로 얼룩진 연합뉴스

2009년 3월 27일 연합뉴스 이사회는 박정찬 당시 연합뉴스 이사를 연합뉴스 사장으로 선임했다. 박 사장은 취임 당시 낙하산 사장으로 분류될 만한 특징들을 갖지 않았고, 따라서 연합뉴스의 사내구성원은 MBC노조가 김재철 사장의 취임시 그랬던 것처럼 그의 사장선임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박 사장은 자신의 노선을 분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악에 대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기타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들에 대해 진실이나 사실과 무관하게 확실하게 정부 편을 들 것을 간부들과 기자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이후, 연합뉴스는 확실하게 불공정한 편파·왜곡 보도의 대열에 동참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9].

2010년 9월 15일, 연합뉴스는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국정원 사찰을 폭로한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내린 국정원 패소판결을 오전 10시 38분 첫 기사로

9 연합뉴스노조가 2010년 9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의 65.9%가 기자직 조합원의 경우 70.8%가 연합뉴스 보도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답했고, 조합원의 87.4%가 연합뉴스 보도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답했다.

판결내용 위주로 제목과 내용을 사실보도했다. 그러나, 오후 3시 그 기사의 제목은 '국가가 악의적 비판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뒤집어졌다.
2010년 9월 27일에는 박정찬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연합뉴스는 미국 쇠고기 수입에 맞선 촛불시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불신하는 네티즌, 최진실 괴담의 네티즌들을 함께 매도하는 기획기사 '한국의 유언비어…괴담에 춤추는 나라'를 이명박 정부 임기 반환점에 맞춘 특별취재 형식으로 내보내 많은 시민들의 빈축을 샀다.
연합뉴스노조는 박 사장에게 부당한 제작자율성 침해와 간섭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시와 탄압뿐이었다. 박정찬 사장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합뉴스를 잘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직을 연임되었다.

(4) YTN노조에 대한 탄압과 장악

2008년 5월 29일 YTN 이사회는 구본홍 씨를 새 대표이사로 추천했다. 구본홍 씨는 이 대통령 특보 출신으로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적 낙하산임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이에 YTN노조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7월 17일 YTN은 용역들을 동원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열어 40초만에 구본홍 내정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 원충연 메모와 'BH 하명'으로 표기된 불법사찰 문건에서 드러났듯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YTN은 총리실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고, 임원진 교체는 그 문건의 내용과 조응해 진행돼 왔다.
구본홍 사장은 노조원들의 출근저지 투쟁에 의해 회사 밖을 맴돌다가, 8월 26일 YTN 간부에 대한 기습인사를 단행해 사내통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그 뒤, 자신을 반대한 노조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에 착수해, 10월 6일에는 노조 지부장 등 6인을 해고하고, 돌발영상팀장 등 6명을 정직에 처했다. 이어서 회사는 2009년 3월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YTN 총파업 하루 전인 3월 22 노종면 위원장 등 YTN 해직언론인 6명 중 4명이 긴급체포됐다.
그러나, 노조의 거센 저항으로 구본홍 사장은 YTN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했다. 그는 8월 3일 돌연 사장직을 사퇴하고, 배석규 전무가 사장직무대행을 맡았다. 2009년 9월 총리실 민간인 사찰팀은 "YTN내부동향" 문건에 배 직무대행에 대해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정식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썼다. 그는 그 문건에 기록된 대로 2009년 10월 9일 직무대행을 떼고 사장이 되었다.
배석규 사장은 취임직후 노조로부터 92.8%의 찬성으로 불심임을 당했지만, 그는 사원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YTN 논조의 친정부 편향과 노조탄압을 끝까지 강행했다. 이후 그는 보도국장 직선제 폐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지국 발령, 해직사태 장기 방치, 박원순 시장 등 YTN판 블랙리스트 논란, 돌발영상 무력화, 공금 횡령의혹 등 파문을 연속적으로 일으키며, YTN을 정권의 호위대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3) 저항과 탄압 : 2012년 언론노조대파업

2012년, MBC·KBS·YTN·연합뉴스 등 4개 공영 미디어 노조와 국민일보노조 등 5개 언론사 노동조합들이 동시다발 장기 연대파업(이하 언론대파업)을 전개했다. 4개 공영 미디어 노조가 파업에서 내건 요구는 불공정 방송을 주도하고 있는 낙하산 사장의 퇴진과 공정방송 쟁취였다. 국민일보노조는 사측에게 임금협상 성실교섭과 부당 해고철회 및 불공정보도의 실행자인 편집국장 교체를 요구하고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사유화 반대를 외쳤다. 파업까지 가진 않았지만, 비슷한 시기에 2명 해고를 포함 5명의 중징계를 야기한 부산일보와 4명의 노조원이 징계를 당한 SBS 사태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2년 5개 언론사의 총파업일수는 596일, 여기에 각 지역MBC노조의 파업 128일을 더하면 총파업일수는 724일에 달했다. SBS와 부산일보를 더하여 언론장악과 불공정성에 대한 저항의 과정에서 부당징계를 당한 언론인의 수는 해고 21명 등 총 452명에 달했다.

(1) KBS새노조의 파업투쟁

2012.03.06. - 06.08. 95일간 파업, 133명 부당징계

KBS새노조는 2012년 3월 6일 재적 노조원 1064명 중 투표율 90.5%, 찬성율 89%의 의결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의 요구는 낙하산 김인규 사장의 퇴진, 불공정보도를 주도한 이화섭 보도본부장의 사퇴, 그동안 누적된 부당한 징계의 철회와 원상회복이었다. 6월 5일 KBS새노조와 사측은 △대선 공정방송위원회에 노조위원장과 사장이 동시에 참여, △탐사보도팀 신설, △라디오 주례연설 폐지 추진, △징계최소화, △본부장 거취 논의 등을 합의하고. KBS새노조는 파업 95일차인 6월 8일 파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합의에 의한 파업종료 이후, KBS 사측은 KBS의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추적60분>의 기획과 내용에 부당한 통제[10]를 가하고, 파업에 대해 특별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김현석 위원장을 해임하고, 홍기호 부위원장을 정직 6개월에 처하는 등 노조 집행부와 전 기자협회장 16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해 6월 5일의 노사합의를 파기했다. KBS새노조의 파업투쟁 과정에서 사측에 의해 징계를 당한 조합원의 수는 총 133명에 달하였다.

10 KBS새노조가 경영진과의 합의과정에서 주요하게 이끌어낸 것이 바로 '탐사보도'의 부활이다. 복귀한 KBS새노조는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60분>을 통해 '공영방송MBC의 장기파업 사태'를 7월 18일 보도했다. 그러나, <추적60분, MBC 파업편>은 기획단계부터 진통을 겪었다. 7월 2일 KBS 권순범 시사제작국장이 <추적60분>제작진의 'MBC 파업사태' 취재 아이템에 대해 '방송제작 불가' 방침을 내린 것이다. 노조와 여론의 반발로 어렵사리 제작이 결정됐지만, 다시 MBC 사측의 방해가 이어졌다. MBC 사측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위협 등 외압을 가한 것이다. 결국, <추적60분, MBC 파업편>은 본연의 심층탐사를 달성하지 못하고, 양측 주장을 단순나열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2) MBC노조의 파업투쟁

2012.01.30. - 07.17. 170일간 파업, 해고 10명 등 230명 부당징계

2012년 언론대파업의 전체 흐름을 주도한 것은 MBC노조의 파업이다. MBC노조의 파업은 2012년 1월 30일 시작됐다. MBC노조 파업은 김재철 사장이 취임한 이후 2년간 정권홍보성 불공정 보도가 점점 더 급증하고,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통제와 간섭이 심해져 제작의 자율성이 손상되고, 손석희 김미화 등 프로그램 진행자의 부당교체 등 인사전횡이 벌어졌다.

파업의 발단은 2012년 1월 6일 MBC 기자협회가 불공정 보도의 강요해온 전영배 보도본부장과 문철호 보도국장의 보직사퇴를 촉구하고, 이들에 대한 불신임투표를 결의한 것이다. 사측은 기자협회의 요구를 일방 묵살하고 기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이에 기자협회는 12일부터 침묵시위를 시작했고, 25일부터는 사상 처음으로 뉴스제작 거부에 돌입했다.

MBC노조의 파업은 기자협회의 저항을 이어받아 1월 30일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MBC노조는 파업의 목표를 '공영방송 MBC 정상화와 김재철 사장 퇴진'으로 잡았다. MBC노조 파업에 따른 노사간의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재철 사장의 비도덕성과 비리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대거 드러났다[11].

한편, 법 집행에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검찰은 김재철 사장을 부당하게 비호했다. 검찰은 사측이 노조를 불법파업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힘을 쓰는 반면, 노조가 김 사장을 각종 비리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시늉조차 아껴왔다. 김재철 사장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4월 21일 업무상배임혐의에 대한 조사의 명목으로 영등포 경찰서에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였다.

---

11 김재철 사장의 비리와 불법 혐의는 △편성·제작의 자율성 파괴, △정권홍보 방송강행 및 확대 △이를 위한 인사전횡에 그치지 않는다. 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재철 사장은 △핸드백 등 각종 명품, 여성전용 피부관리업소, 마사지, 특급호텔 과도투숙 등 회사 법인카드를 1일 평균 100만원씩 2년간 7억원을 사용했는데, 이중 명백히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 금액만 최소 2억1천만원이다. 노조는 2012년 3월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1차 고발했다. 또한 김재철 사장은 △무용가 J씨에게 과도한 출연료 지급 등 20억원 상당의 부당 특혜를 제공했다. 노조는 2012년 4월 이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로 2차 고발했다. 김재철 사장에게는 △무용가 J씨의 오빠를 중국 동북3성 대표로 특채한 부당 특혜제공의 혐의와 △MBC 조직을 이용해 통해 대기업들의 수십억 규모 협찬을 무용가 J씨에게 몰아준 배임혐의도 더해졌다. 또한,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무용가 J씨와 오송역 주변 아파트 3채를 공동구입해 공동관리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투기와 명의대여 등 불법을 저질렀음을 폭로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2012년 5월 김 사장을 부동산투기 및 부동산실명제위반 혐의로 3차 고발했다. 김 사장이 무용가 J씨에게 과도한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대기업 협찬을 주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J씨와 함께 불법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한 2015년 6월 MBC 사측이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MBC 직원 전체를 불법사찰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MBC노조가 밝힌 바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5월 중순경 MBC 회사망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스크탑, 노트북 등에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몰래 설치했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 해킹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모든 문서, 메신저 본문, 이메일 본문, 블로그에 올린 글, 컴퓨터 자료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복사한 내용 등 사용정보를 회사 서버로 자동 전송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MBC 직원, 작가는 물론 MBC를 방문해 인터넷 망을 사용한 누구에게라도 예외 없이 설치되었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검찰은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집행부 5명에 대해서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사측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는 검찰의 단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MBC노조는 파업 170일차인 7월 17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파업을 잠정중단하기로 총의를 모으고 18일 업무에 복귀했다. 이는 여야가 16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새로 구성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김재철 사장을 퇴진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점, 연말의 대통령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대선공정보도를 위한 현장에서의 노력과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을 새로 구성된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퇴출시키고 MBC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여야의 약속은 11월 8인 다수인 여당추천 이사들이 돌연 마음을 바꿔 김재철 해임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지켜지지 않았다.

한편, MBC노조의 파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참여 인원이 증가해 동력이 커지는 이례적인 양상을 보였다. MBC노조가 파업을 시작할 당시 참여인원은 5백명 규모였다. 그러나, 파업을 중단한 7월 중순, 파업 참여자는 본사 800명 지역사 500명 등 1300명 규모로 커졌다. 그것은 파업의 정당성과 조합원들의 의지가 컸고, 다른 한편으로 김재철 퇴진과 파업지지에 지지 서명한 국민이 단기간에 76만명을 돌파하는 등 국민의 성원이 컸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12], 파업기간 동안 채용한 시용인력 등을 앞세워 노조원들을 대량 대기발령 냈다. 또 이른바 신천교육대(MBC아카데미)에서 강제교육을 받게 하거나, 노조원의 본 업무와 무관한 곳에 유배 보내는 등 노조원을 현장과 격리시키는 보복성 인사에 골몰했다. 사측은 MBC 노조원 10명을 해고하는 등 230명을 징계하고, 고소·고발 및 거액손배소를 진행하는 등 강경탄압으로 일관했다.

(3) 연합뉴스노조의 파업투쟁

2012.03.15. - 06.25. 103일간 파업, 9명 부당징계

연합뉴스노조는 그간 악화일로를 걸어온 불공정 보도의 책임자인 낙하산 박정찬 사장의 연임 반대를 외치며 재적인원 504명 중 471명 투표(투표율 93.5%), 396명(84.1%) 찬성으로 2012년 3월 15일 23년만의 총파업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징계와 저항 등 치열한 공

12 사측은 파업기간 중에 최승호 PD를 해고했을 뿐만 아니라, 파업중단 이후에도 기존 <PD수첩>피디들을 모두 대기발령, 정직 등 중징계 했다. 나아가 <PD수첩> 작가들도 전원 해고했다. 사측은 <PD수첩> 작가들의 해고사유를 아이템이 진부하고 시청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것은 터무니없다. '검사와 스폰서', '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김종익씨 민간인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등 <PD수첩>의 프로그램들은 시사프로그램임에도 높은 시청률을 보였다. 다른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의 날을 세우지 못했을 때에도 성역 없는 감시와 비판으로 오히려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방 끝에 파업 103일째인 6월 25일 △보도 공정성 제고(중간평가를 받는 편집총국장제[13]를 신설, 공정보도 책임평가제 도입, 공정성 문제가 있을 경우 편집국장을 포함한 제작국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요구할 권리 인정), △합리적 인사와 사내 민주화 제고(호봉과 연봉사원, 제작과 비제작 부서, 지역, 성별간 차별 해소 노력, 노조가 인사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 포함), △지역취재본부 시스템 개선, △파업 사태와 관련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등을 사측과 합의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사측은 합의를 파기하고 총 9명의 노조원을 징계했다[14].

(4) YTN노조의 파업투쟁

2012.03.08.부터 10차례 게릴라식 파업, 55일간 파업, 해고 6명 등 51명 부당징계

YTN노조는 낙하산 사장 임명이 초래할 역사적 퇴행과 반민주적 부작용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2008년 6월부터 구본홍 특보의 YTN 사장 임명을 반대하는 투쟁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사측은 YTN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끝없이 추락시키며 정권호위를 위한 불공정·편파 보도를 강행했고, 노조는 그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때마다 노조에 돌아온 것은 권력과 회사의 가혹한 탄압이었다.

YTN 뉴스의 불공정성이 점입가경 심화·고착되자 2012년 YTN노조는 그에 대한 저항으로 다시 파업투쟁에 들어서게 된다. YTN노조의 2012년 파업투쟁은 시기와 사안에 따라 결행하는 게릴라식 파업의 형태로 2012년 3월 8일의 제1차 파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총 55일간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6명의 기자를 해고하는 등 총 51명의 노조원을 징계했다. 또한, 23명을 고소했고,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5) 국민일보노조의 파업투쟁

2011.12.23. - 2012.07.17. 173일간 파업. 해고 3명 등 20명 부당징계

국민일보노조 파업의 원인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한 임금협상

13 편집총국장제는 경영과 편집의 독립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이다. 기자직 사원 3분의 2가 참여해 과반의 찬성을 얻은 이가 총국장을 맡아 보도를 관리하는 제도로 중간평가와 불신임 건의도 가능해 편집 독립성을 강화한 제도이다.

14 2015년 3월 2012년 당시 편집국장으로 불공정보도를 주도해서 파업의 원인 제공자라고 노조의 비판을 받던 박노황 연합인포맥스 특임이사가 연합뉴스 사장으로 취임했다.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2012년 103일 파업의 주요한 성과로 편집권 독립의 상징이었던 편집총국장제를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한다면서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폐기처분했다. 또한 박노황 사장은 2015년 5월 15일 2012년 노조위원장이었던 공병설 기자와 2010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했던 이주영 기자를 지역으로 보복 발령했다. 이외에도 파업 당시 동참한 고참급 기자들이 다수 지역으로 발령됐다. 특히 2009년 공정보도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2012년 파업에 최고참으로 완주했던 김태식 기자를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해고했다. 김태식 기자는 2017년 1월 연합뉴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항소심에서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결렬이고, 둘째는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주 조민제 사장의 비호를 위해 취재와 편집의 자율성을 침해해온 김윤호 편집국장에 대한 불심임투표가 75.2%라는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은 사측의 단협위반이었다. 셋째는 비리사주를 비판한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해사행위로, 이재만 경영전략실장과 박승동 이사를 조 위원장의 해고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사측이 전격 해고한 사건이었다.
국민일보노조는 2011년 12월 23일 해고철회, 편집국장 교체, 임금협상 성실교섭, 조용기 목사 일가의 국민일보 사유화 반대 등 네 가지 요구를 걸고 기자 105명과 사원 7명 등 차장급 이하 사원 90%가 참여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노조의 선(先)사과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조합원 20명을 고소하는 등 탄압일변도로 대응했다.
그러다가, 6월 14일 파업 173일만에, 노사는 △공정보도를 위한 지면평가위원회 가동 △민·형사상 고소·고발·진정의 취하 조치 착수 △파업사태 정리와 지면쇄신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 △임금 4.5%인상 등을 합의했고, 노조는 파업을 마쳤다. 국민일보 사측은 1명을 해고하는 등 총 20명을 징계했다.

4) 언론장악의 논리, 수순, 과제

(1) 논리

1987년 6.29 선언에서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언론은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다'고 선언했다. 이명박 정부 역시 같은 내용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언론장악을 선두에서 이끌었던 신재민 문광부 차관도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법으로 규율하거나 정립할 사안이 아니며, 통제나 간섭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그렇지만, 신재민 차관은 2008년 5월 9일 정부 관계자들이 모인 언론대책회의에서 "인터넷 상의 각 부처 관련 이슈를 모니터 및 신속 보고하고,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진원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또한, 2008년 11월 14일에는 YTN노조의 구본홍 신임사장 임명 반대투쟁에 대해 "일반 기업이라면 노조원들은 열흘 만에 잘릴 일인데 언론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더 오래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왼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가운데 갖다 놓으라"고 말했다고 발언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공영미디어에 대한 인적 장악을 본격추진하고 있는 시기에, 공개석상에서는 '언론자유'를 운위하고, 비공개 대책회의 자리에서는 '언론장악'의 실행을 독려하는 언행불일치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와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말을 앞세웠지만, 뒤에서는 5공시절 '보도지침'에 버금가는 '보도협조' 시스템을 은밀히 시행하다가 꼬리가 잡혀 국제적으로 망신을 산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철학과 정책이 행위로만 표출된 것은 아니다. 간명하고 핵심적인 언어로 정식화된 사건이 있었다. 2008년 8월 박재완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현 재경부 장관)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KBS는 정부 산하기관…사장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기조를 구현할 인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는 당시 벌어지고 있던 그리고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된 정부의 언론장악 논리를 명료하게 드러내 준다. 이는 언론을 정치권력의 하수인, 좋게 말하면 '조력자'로 간주하는 제3세계 개발독재 국가 또는 파시즘의 전형적인 언론관이다. 이명박 정부 언론정책은 말과 행동이 상반된 신재민 차관의 이중적이고 모호한 표현과 언론이 정권의 도구여야 함을 공공연히 천명하는 박재완 수석의 단선적이고 명쾌한 표현 양쪽을 다 포괄한다.

(2) 수순

2008년 진행된 KBS·MBC·YTN·연합뉴스 등 공영미디어에 대한 정부의 인적 장악(협의의 언론장악)은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수순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사전정지 작업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최측근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인적 장악, 이사 교체를 통한 KBS와 방문진 이사회 장악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가장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과정으로 낙하산 사장 투입이다. 기존 사장의 자진사퇴 또는 해임, 그리고 그 후임으로 정권의 전위 역할을 담당할 낙하산 사장을 추천·임명하는 과정이 그것이다.
셋째 친정부 편파방송을 함께 도모할 간부인사 단행이다. 낙하산 사장이 기자·PD 등 내부 종사자의 편성·제작의 자율성을 축소하거나 배제하고 전횡을 할 수 있도록 관료주의적 상명하달식 통제체제를 부활시키는 인사권과 편성권의 장악 과정이다.
넷째 정부의 인적 장악과 그에 따른 불공정·편파 방송에 비판적인 사내구성원들에 대한 탄압과 징계이다. 이는 파업을 주도한 노조원과 사측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직능단체 구성원에 대한 광범하고 가혹한 징계의 형태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에 대한 비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의 폐지 또는 축소와 친정부 홍보프로그램 편성과 실행의 일상화가 그것이다. 저널리즘 본연의 임무인 정부여당 등 거대권력 감시와 여론다양성 구현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과 사회비판 프로그램은 모두 배제됐고, 그 자리는 정권 홍보와 호위에 협력하는 사람들과 비판을 빙자한 탈정치적이고 친정부여당적인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이를 통해 친정부적 여론몰이나 종북위기 조장 등 정권의 안위를 위한 조작적 프레이밍이 공영미디어의 일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사전기획된 과정이라는 점이다. 2008년 1월 2일,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문체부에

언론사 간부들의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점, 감사원·검찰·국세청·교육부·방통위·이사회 등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공공기구들이 일사분란하게 인위적 사장 교체를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인 점, 동의대학교가 신태섭 교수에게 KBS 이사직 사퇴를 2008년 3월 21일부터 5월 15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불응시 해임을 예고한 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의 '2008년 (대통령) 하명사건 처리부[15]'에 신태섭 이사가 소속 대학에서 해임되었음을 보고한 내용과, 'KBS YTN 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가 대통령의 하명에 의해 진행중임을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은 그 과정이 정권에 의한 언론장악이 일정한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사전에 기획된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둘째는 불법부당한 과정이라는 점이다. 신태섭 이사와 정연주 사장 해임의 위법성, 언론노조의 파업의 정당성, 사측 징계의 위법성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된바 있다[16]. 이외에도, 이사회 다수 장악 과정, 사장 교체 과정, 간부 인사, 비판 프로그램 폐지와 정권홍보 프로그램 신설, 사측의 노조탄압과 과잉징계 등 대부분의 과정이 상식과 윤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방식이었다.

셋째는 음성적이고 은밀한 정치공작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정상적인 정책이라면 의당 공개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경청하며, 국회에서의 논의와 타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번 인적 장악은 이와 반대의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불법부당을 사전 기획한데 따른 필연적인 속성이 아닐 수 없다.

(3) 과제

사법부는 낙하산사장 투입과정에서 해임된 KBS 정연주 사장과 이사에 대해 그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방송장악에 저항하다 해고 등 징계를 당한 MBC 노조원들에 대해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며 징계무효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 정권이 남긴 공영미디어 인적 장악의 잔재는 해당 공영미디어의 반국민적 편파·왜곡 방송을 계속 유지시키고 있고, 방송인들의 저항과 징계 또한 현재진행형이다. 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언론자유 탄압의 진상과 책임은 여전히 가려져 있

15 2012년 3월 '리셋 KBS 뉴스'가 특종으로 폭로했다.

16 정연주 사장 해임의 물꼬를 튼 동의대학교의 신태섭 교수의 2008년 7월 1일자 해임은 2009년 11월 13일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판결이 나왔다. 또한 2009년 6월 5일 행정법원은 신태섭 교수 해임에 따른 대통령의 KBS 보궐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2010년 4월 23일 KBS 이사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직 복귀가 불가하여 원고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행정소송을 각하하였다.) 2012년 1월 12일 대법원은 정연주 사장 해임의 근거가 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확정하였다. 2017년 4월 28일 대법원은 2012년 95일 파업을 주도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KBS새노조 전·현직 집행부들에게도 최종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MBC 이용마 박성제 박성호 기자, 정영하 전노조위원장, 최승호 강지웅 PD은 2015년 4월 고법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렇지만, 현재 대법원은 2년이 넘도록 판결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다. 이상호 기자는 2015년 7월 8일, 권성민 PD는 2016년 5월 13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이 확정된 상태이다.

고, 해직자들은 여전히 해직자이고, 부당징계자의 원상회복도 요원한 상태이다.
이명박 정권이 구축하고 박근혜 정권이 계승한 언론장악과 탄압의 진상은 명백히 규명되어야만 하고, 그것을 주도한 자와 부역한 자에게 응분의 법률적·도의적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 그 부당함에 항의하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와 원상 또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정권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탄압이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는 반헌법적인 폭거라는 점을 명확히 기록해야 한다. 방송장악과 탄압의 진상규명과 부당징계자 원상회복은 공영미디어 정상화를 위한, 민주주의의 회복과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자 초석이 아닐 수 없다.
언론을 장악해 통치수단으로 삼으려는 독재정권이 다시 출현할 경우, 이를 법과 제도만으로 막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최선도 아니다. 그것은 그러한 퇴행적 시도를 완충하는 데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을 근원적으로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그런 언론장악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윤리적으로나 실정법상으로나 용납되지 않는 상식과 문화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는 누군가 그런 시도를 하면 국민으로부터 중하게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는 역사 바로 세우기이다.
그러므로 2008년부터 자행돼 지금까지 계속돼온 언론장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에게 응분의 죄 값을 치르게 하는 것, 현존하고 있는 낙하산 사장과 그 부역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그 같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 관문이자 그 성패의 필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공영미디어 장악의 진상·책임 규명과 부당 징계자 원상·명예 회복'은 수구보수 언론의 폄훼처럼 정치보복이 아니다. 이는 공영미디어의 정상화, 언론개혁, 민주주의 회복·발전의 진정한 시작이자 불가결한 토대이다.

2. 박근혜 정부의 공영 미디어 장악

1) 굳어지는 장악체제

2012년 MBC노조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일 때 당시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이던 박근혜의원은 '노조가 파업을 풀면 문화방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정권출범 때 여야가 합의한 대로 13년 4월부터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개월간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여론에 밀려 흉내만 낼뿐 애초에 방송장악을 포기할 의도가 조금도 없었다. 방송 독립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은

논의 흉내만 내는데 그쳤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시일만 끌고 여당위원들은 이명박 정권에서의 공정방송 투쟁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의제였고 새누리당이 추천한 자문교수들도 동의한 공영방송 사장선임 특별다수제 등 공정성확보 방안은 새누리당 위원들이 격렬하게 반대하여 무산되었다. 여전히 이사회를 통해 다수결로 공영방송 사장을 정권의 의지대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해직언론인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국회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앞장설 것이며, 정부 당국과 관련 단체, 방송사 노사 양측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는 취지의 결의안을 내기로 했지만 그저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처음부터 새누리당은 노사의 문제로 보면서 정치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의지도 없었다. 이상민 특위위원장이 YTN과 MBC를 방문해 사장과 면담을 하면서 해직언론인 문제와 관련한 공정성특위 결의문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이들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그쳤다. 방송사 경영진들은 결의문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는 척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에서 공영방송 장악은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 날로 깊어지며 공고화되어갔다. 내부적인 저항력도 약화되고 사회적인 관심도 줄어들었다.

2) 권력의 대리인 이사회

공영방송 이사회는 사장을 선임할 뿐만 아니라 예산 승인과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는 방송에 대한 시각과 의도를 드러낸다.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의 의지를 관철하는 통로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공영방송 이사장을 비롯하여 정부 여당이 추천한 이사들은 극우적 색채가 뚜렷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한 왜곡보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사회의 상식과 현실인식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국민의식 통제의 수단으로 방송을 동원하려는 의도가 감지되었다.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없이 권력의 의중을 반영하여 방송을 장악하는 합법적 제도에 지나지 않았다. 이사회 구성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통제 장치의 정점에서 사장 등 주요 핵심간부들의 조직장악을 지원하거나 절차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기구였다.
정권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진 대표적 뉴라이트 인사인 이인호 씨를 KBS 이사장으로 내려보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며 역사인식을 거꾸로 돌리려는 속셈이 반영된 것이다[17]. 방

17 KBS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 깊은 미래>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제작 자율성 침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승만 정부가 6.25 전쟁 발발 직후 일본망명을 추진했다'는 내용의 KBS 보도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 '부당 방송 개입'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송통위신심의위원장으로 박효종[18] 씨를 임명한 것이나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같은 의도로 기획된 이념 투쟁으로 해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 씨를 이사로 추천했고 2014년 9월5일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이사들만으로 회의를 열어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2015년 9월 2일 이사장으로 재선출하였다. 이사장 뿐만 아니라 다른 이사들도 극우적 인사들을 추천하였다.

"동성애자는 더러운 좌파"라는 혐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5·18 민주화운동과 4·19 혁명을 부정한 인물, 방문진 이사를 두차례나 연임하고 극우적 발언을 일삼아 극우 스피커라고 불리는 인물 등을 이사로 추천하였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도 극우적 인물을 앞세웠다. 민주화 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메카시즘 발언을 일삼고 5·16 쿠데타를 "정신적으로는 혁명"이라고 발언한 공안검사 출신의 아스팔트 극우 고영주 씨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여당은 극우적 성향의 인물들을 이사로 임명하여 이사장과 정권을 엄호하게 했다.

3) 낙하산 사장

이명박 정권의 낙점을 받아서 정권 홍보에 앞장서던 사장들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교체되었다. 각종 논란과 구설을 빚으면서 MBC를 망가뜨린 주범 김재철사장은 2014년 3월26일 해임되었다. 해임안 결의 사유는 방문진의 임원 선임권 침해, 운영제도 위반 및 공적책임 방기,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에 대한 성실 의무 위반,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한 문화방송의 공적 지배제도 훼손이었다. 그해 6월 5일 KBS 이사회는 길환영 사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세월호 보도개입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직접적 계기였다.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사장으로 내려보냈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이 입수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업무수첩 20권에는 청와대의 언론 통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티타임'이라고 상단에 표시된 2014년 6월 15일 자 업무수첩에는 "18일 KBS 이사회", "KBS 사장", 6월 28일 자에는 차기 KBS 사장 후보자였던 "고대영 조대현"이라는 기록이, 7월 3일 자에는 "KBS-조대현7"이라고 적혀 있다.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도 "KBS정기 이사회-사장 임명 논의" 등의 기록이 나와있다. 이들의 업무수첩 내용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수석 비서관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청와대는 KBS 사장 선임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닦았다'는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고 5·16쿠데타를 두고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고 말한 극우·독재적 역사관을 지닌 인물

2015년 10월 KBS 사장 임명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사장으로 지원한 강동순 전 KBS 감사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청와대 지명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 내용대로 고대영 후보는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편파보도로 기자협회 투표에서 불신임을 받고 노조 신임투표에서도 불신임을 받아 해임된 인물이었다. 뿐만 아니라 접대와 폭행 등으로 말썽을 빚기도 한 이력이 있다.

MBC도 김재철 사장에 이어 그보다 한술 더 뜬다는 김종국 사장체제가 내부를 완전 장악하고 내적 자율성을 억압했다. 2017년 3월에는 정부 비판 보도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며 '뉴스데스크' 시청률 하락의 책임자로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고, 2012년 파업 당시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지목된 김재철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서, 보도 제작 아이템을 두고 기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파업의 단초를 제공한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는 사장 취임뒤 바로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박성제 기자, 최승호 PD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밝힌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전시켰다. 전임 안광한 체제에서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을 대부분 본부장급으로 승진시켜 공정방송을 요구하던 내부 구성원들을 탄압한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정권의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부적인 신망이 높고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 사장이 아니라 정권의 의도대로 공영방송을 동원할 사장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명박 정권이 닦아 놓은 길이어서 상대적으로 저항도 덜 받으면서 장악체제를 구축하였다. 집요하고도 비열한 공작과 탄압이 장기화하면서 내부의 견제력은 약화되어갔다.

4) 노조와해 공작과 비판적 기자·PD 탄압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지키려는 내부 구성원들은 조직 장악의 걸림돌로 여겼다. 무리한 징계와 부당 전출은 탄압의 주요 수단이었다.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른 빌미로 제작현장에서 쫓아냈다[19].

MBC 경영진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2008년 4월 방영)의 제작진인 조능희·김보슬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제작진은 소송을 통해 징계무효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데 2014년 4월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금 수위가 낮아지긴 했

19 2016년 1월 "최승호·박성제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시켰다."등 백종문 당시 <문화방송>(MBC) 미래전략본부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하 녹취록)이 공개되었다.

지만 징계를 했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위축시키겠다는 보복 의도다.
2014년 10월에는 MBC가 인사배치를 통해 교양국 PD들을 비제작부서로 보내고 기자들은 보도와 무관한 예능·드라마마케팅 부서로 발령하기도 하였다. 업무상 필요성이나 전문성과 관련없는 보복성 인사로 길들이려는 것이다. 이러한 보복성 인사가 부당한 전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경영진은 보복의 칼날을 지속적으로 휘둘렀다.
한학수 PD는 부당전보·대기발령·신천 교육대(서울 신천동에 위치한 MBC아카데미) 등 탄압을 받다가 2014년엔 신사업개발센터로까지 밀려나고 201717년 3월에는 다시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로 발령났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던 기자·PD들은 제작과 관련이 없는 사업장 관리나 영업, 송출 등으로 흩어졌다. 사법부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끈질기고도 철저한 보복을 통해 내부 저항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기자나 PD에게 제작현장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이며 삶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기회의 박탈은 이들의 정체성의 박탈이다. 경영진들의 이러한 탄압이 부당하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판단으로도 확인된다. 법원은 MBC 구성원들에게 가해진 전보와 징계의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해 싸웠던 MBC 기자들이 전보·채용·승진·징계·교육 등 경영진의 인사관리 전반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심리적·정서적 모멸 및 학대로 위축되어가는 현실은 파업에 참여했던 임명현 MBC 기자의 성공회대 석사학위 논문 <2012년 파업 이후 공영방송 기자들의 주체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MBC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경력사원을 대거 채용하여 보도국 등에 배치하는 것은 내부적인 저항을 무력화시키는 또 다른 수단이었다. MBC노조에 따르면 13년 52명(12년 시용기자의 정규직 전환 포함), 14년 8명, 15년 10명, 16년(9월 기준) 12명을 채용했다. 대체인력이 확보됨으로써 그만큼 노조의 파업 투쟁력은 현저히 약해졌다. 구성원들 가운데 일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 자부심을 포기하고 무력감과 패배감이 짙어졌다. 경영진의 부당한 지시, 불공정한 통제와 개입에도 점차 순치되어갔다. 비판적 목소리를 낸 PD·기자·아나운서 등에게는 온갖 불이익이 가해진 반면 경영진 체제에 순응하고 포섭되어간 구성원들에게는 보직과 승진 등에서 달콤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다.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을 책동하여 조직을 장악해 들어갔다.

5) 신보도지침과 보도개입

청와대가 공영방송 보도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이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은 청와대의 보도통제를 증언하였다. 2014년 5월 김시곤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비교하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서울 여의도 KBS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길환영 KBS 사장은 김 국장에게 사직을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김 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길 사장의 보도·인사 개입 사실을 폭로했다.

2013년 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KBS <뉴스9> 당초 편집안과 사장의 보도개입 사례 34건이 포함돼 있는 '국장업무 일일기록'이라는 비망록을 공개했다. 길환영 당시 사장과 청와대가 정권이 불편해하는 사안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고 통제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뉴스9> 편성안이 길 사장의 지시로 어떻게 바뀌어 방송됐는지 상세히 기술했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전화해 뉴스 편집에 불만을 제기한 내용도 기록했다.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축소, 생략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법조팀의 특종취재조차 방송보도를 막으려했다고 한다. 비망록에는 2013년 5월 벌어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뉴스에 간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통령 동정이나 발언을 주요하게 다루게 지시하는 사례도 많았다. 성추행 사건은 줄이거나 감추고 대통령 발언은 부풀리라는 것이다. KBS 기자협회가 펴낸 청와대 길환영 사장 보도개입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직후인 14년 5월 5일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해경 비판 자제를 지시한 이후 실제로 KBS <뉴스9>는 애초 편집안에서 해경 비판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한 뒤 보도되었다. 구조과정에서 해경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은 삭제되었고 사안과 관련이 별로 없는 해경의 역사 등이 들어갔다.

보도 아이템, 보도 분량, 보도 순서에까지 일일이 개입하는 꼼꼼함을 보여주었다.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 사실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KBS를 상대로 낸 정직무효 확인소송에서도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017년 4월 1심 선고에서 "길환영 사장은 9시 뉴스에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내용이 방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시, 개입함으로써 보도본부 독립성을 침해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관련 리포트 순서를 앞쪽으로 배치하라는 요구 및 국정원 대선개입 특종 관련 스크롤 자막 송출 중단을 지시한 적이 있고, 2014년 5월 5일 14시 30분경 보도본부 간부 참석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 자제하라' 취지로 발언했고 실제로 기사 내용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세월호 참사 보도 때에는 KBS에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뉴스편성에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녹음이 2016년 6월 공개되었다[20].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직접 요구했다. 이 수석은 "하필이면 대통령이 오늘 KBS를 봤으니, 내용을 바꿔 달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4월 21일 <뉴스9>에서 보도된 <둘쨋날 밤 군 재투입, '황금시간' 놓쳤다> 리포트가 밤 11시 '뉴스라인'에는 빠졌다. 보도통제는 이러한 민감한 현안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 등 행사를 보도한 뉴스 순서조차 전화로 항의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보도국장 인사에까지 개입한 의혹이 짙다.

20 이원종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홍보수석 본연의 업무인 협조 요청"이라고 두둔했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청와대 보도 개입 폭로와 함께 보도국장직을 사퇴한 직후인 2014년 5월 12일, KBS는 당시 백운기 시사제작국장을 신임 보도국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지적과 정황증거가 나오자 일주일만에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권력의 직접 개입이나 사장 등 간부를 통한 간접 개입의 사례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여전히 그들이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자신들의 지시와 명령에 순응하는 자들을 주요자리에 앉히며 암묵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보도와 통제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눈에 들기 위한 내부적인 경쟁도 치열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6) 비판적 프로그램 방송 통제

권력이 불편해 하는 프로그램은 애초에 제작마저 되지 않고 그나마 상당히 순화되어 제작된다하더라도 방송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러한 과정은 제작진들의 자기 검열기제로 작동한다. 제작진들은 방송이 되지 못하거나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아이템을 제작할 기획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게 한다는 것이다.

2013년 8월 방송예정이던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은 방송을 못하게 통제를 하였다.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주요 축이며 당시 통합진보당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여 당을 해체하려는 정권의 충실한 집행자인 국정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내용이 수정되어 방송되기는 하였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21]에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결국 이러한 통제와 제재는 제작진의 자기 검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KBS가 2013년부터 탐사보도팀이 취재해 온 <친일과 훈장>이라는 2부작 프로그램의 방송은 편성되지 못했다. '친일과 훈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누가 왜 받았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대기획 보도였다.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 친일행적자 훈장 수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어서 이승만 박정희 정권 비판이 금기처럼 된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의도적으로 방송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2년 반이 지난 2016년 2월에야 1부 '간첩과 훈장'이 <시사기획 창>을 통해 겨우 방영됐다. "정부기관이 반론하지 못한 내용은 모두 빼라"는 데스크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 핵심 내용이 변질된 상태였다. 2부는 언제나 방송될지 기약조차 없는 상태다. 제작에 참여했던 기자

21 위원장 포함 정부 여당 추천위원이 6명 야당 추천위원이 3명으로 구성되어 민감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합리적 토론과 결정이 아니라 수적 우위를 앞세워 정치적 편향 심의를 한다고 6:3위원회라고까지 비아냥거림을 받는 기구

는 결국 사표를 내고 독립언론 <뉴스타파>로 옮겨서 기획의 취지는 <훈장과 권력>이라는 4부작 프로그램으로 빛을 보게 되었다. 국가의 훈장이 민족 독립, 민주이념, 공동체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데 독재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는 프로그램 마저도 권력의 심기를 거슬리까봐 방송 못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모습이다. 한편 MBC는 제작된 프로그램 불방 논란마저 눈에 뜨지 않는다. 아예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관련 프로그램이 기획되거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7) 조직개편을 통한 탐사프로그램 무력화

조직 개편은 내부를 통제하고 제작과 편성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개편을 빌미로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비판적인 팀을 해체 또는 약화시킬 수도 있다. 통제가 어려운 구성원들을 제작에서 배제시키거나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를 할당할 수도 있다.

MBC는 2014년 10월 교양제작국을 해체했다. 이는 2012년 파업 후 이어진 조직개편을 통한 내부통제의 한 방편이었다. MBC는 파업투쟁이 있던 2012년 <PD수첩>, <남극의 눈물> 등을 제작하던 시사교양국을 분리해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을 만들었다. 시사PD와 기자들을 시사제작국으로 배치하였다. 기자와 같은 업무에 투입된 PD 들은 업무방식이 서로 달라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사회 비판적 목소리가 약화되었다. 시사교양국 소속 PD들이 두 개의 국으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분리되어서 위계적 통제에 대한 내부적인 견제력이 현저히 약화되어갔다. 교양제작국마저 폐지되면서 비판적 PD들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경영진들의 조직 장악은 더욱 쉬워졌다[22]. 비판적 프로그램들은 폐지되거나 비판적 성향이 무뎌졌다. 특히 민감한 정치현안은 아예 외면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는 기미가 보인다는 평가가 났다. 대표적인 시사 탐사프로그램인 <PD수첩>도 신뢰가 떨어졌다.

KBS의 조직개편도 시사탐사프로그램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꾸준히 진행되었다. 2010년, KBS는 '저널리즘 기능을 통합하겠다며 <추적60분>을 보도본부로 옮겼다. PD들이 제작하는 탐사고발시사프로그램을 기자들이 소속된 보도본부로 이관한 것이다. 사회고발 기능을

22 미디어오늘은 2015년 11월21일 '요즘 MBC, 왜 이렇게 볼 게 없나 하셨죠?'란 제목의 기사에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이 경영진의 간섭과 교양제작국 해체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제는 '교양국 해체 1년, "사회적 의제 피하고 민감한 이슈 발제조차 못 해"…PD저널리즘 전성기 시사교양 전멸'이었다. 이에 MBC는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시키고 소송비용은 전액 MBC에 부담시켰다.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아이템은 애초에 기획단계에서 통제되기 일쑤였다. 제작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TV제작본부로의 이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TV제작본부는 PD들 중심이고 보도본부는 기자들이 중심이다.

정치권력에게는 KBS와 MBC의 대표적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불편하고 위험한 존재였다. 비판의 칼날은 정권을 향할 수도 있으므로 무력화시키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PD들은 기자들에 비해 업무의 자율성과 높다. 제작 아이템과 방향에 대해 위계적 통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 제작진의 책임하게 진행된다. 반면 보도국은 취재 아이템과 취재의 방향에 대해 간부들의 개입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만큼 조직적 통제와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을 뜻한다. 애초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조직으로 만들어갔다.

참고문헌

임명현(2017). <2012년 파업 이후 공영방송 기자들의 주체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MBC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제2장
방송 구조 개편과 생태계 파괴

1. 정부여당의 '미디어 악법' 개정과 종편채널 도입

1) '미디어 악법'의 발의

2008년 12월, 여당인 한나라당은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하여 언론중재법, IPTV법, 전파법, 지상파방송디지털전환특별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들 법안들 중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무선국 허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고,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들을 담은 것으로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었다.

그러나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겸영금지 조항(일간신문과 뉴스통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교차소유 금지)을 완전히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구나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에 대한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편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겸영 규제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미디어 지형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 이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되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언론이 뉴스를 방송할 수 있는 보도전문채널이나 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하고 규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두 달 앞선 2008년 10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공간의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모두 7개의 미디어 관련 법률 개정안, 더구나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법, 정보통신망법의 4개 법안은 이명박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미디어 악법' 또는 '언론장악법'으로 통칭되기 시작했다. 최초 발의한 개정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2-1>와 같다.

<표 2-1.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최초 발의안 주요 내용>

법안	주요 내용	문제점
신문법	- 신문·방송 겸영 허용 - 신문시장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 폐지	여론 독점 및 미디어 공공성의 훼손 가능성
방송법	- 대기업의 지상파(지분한도 20%)와 종편·보도PP(49%) 소유 허용 - 신문·통신의 지상파(20%)와 종편·보도PP(49%) 소유 허용 - 외국자본의 종편·보도PP(20%)와 위성방송(49%) 소유 허용 - 대기업·신문·통신의 위성방송 소유 허용	재벌·보수언론의 방송 진출로 권언유착 우려
언론중재법	- 인터넷포털·언론사닷컴·IPTV를 적용 대상에 포함 -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민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재판	인터넷 통제 수단화 가능성
정보통신망법	- 사이버 모욕죄 신설 - 피해자의 삭제요청시 24시간내 조치 및 통보	현행법으로 규제 가능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031818535&code=940705 (일부 수정후 인용)

2) '미디어 악법'의 문제점

(1) 허구적인 '경제 살리기' 프레임

'미디어 악법'에 대한 학계, 방송계 등의 비판이 쏟아지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경제 살리기 법'이며, 반드시 통과시켜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009년 1월 6일 SBS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하여 "미디어 관련법은 경제 살리기 법이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활력을 얻게 하는 경제법으로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발언했다. 한나라당은 2009년 1월 14일 홍보자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 하는 방송 관련 좋은 일자리가 2만개 이상 늘어난다.", "방송규제 완화는 2007년 기준으로 15.6% 시장규모 증가(1조 5,999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규모 증가로 방송서비스 부문 취업자는 4,470명 증가, 경제 전체적으로 2만 1,465명의 취

업 유발 효과 및 2조 9,419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 악법이 경제를 살린다는 주장은 근거가 매우 취약하며,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했다. 종편채널과 보도PP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2007년 기준 전체PP 종사자 9,102명과 보도PP 종사자 897명(YTN 627명, MBN 270명)에 비추어 볼 때, 방송부문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2,508명, 장기적으로 4,470명 늘어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비현실적인 전망이었다. 미디어 악법 개정으로 경제 전체 취업유발 효과로 일자리가 2만 1,465명 증가한다는 예측도 방송산업의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하는 취업계수이므로 산출 근거 자체가 허구적이었다.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달리 소유규제 완화는 방송산업의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96년 FCC가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을 통과시켜 대기업의 언론사 진출과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이후 언론계 종사자들의 수가 다음 <표 2-2>와 같이 감소했다. 미디어 복합기업은 수직적 결합과 수평적 결합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인력을 구조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표 2-2. 미국 TV와 라디오 종사자의 연도별 변화 추이>

분야	연도	종사자 수
아나운서	1999	45,010
	2000	42,220
	2001	40,990
	2002	40,280
	2003	38,990
기자	1999	17,530
	2000	19,900
	2001	19,020
	2002	16,890
	2003	16,350

* 출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108114320

(2)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숨겨진 거짓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홍보자료를 통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만이 공익성을 과도하게 내새워 지나치게 강한 진입장벽과 소유·지분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

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끔 신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야 마땅하기에 '미디어 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신문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장 진입을 봉쇄하는 것은 신문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주장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2008년 당시에도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자회사 중앙방송과 중앙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미 방송산업에 진출해 있었다. 조선일보 또한 <비즈니스앤>이라는 케이블TV PP를 소유·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미디어 악법 개정의 근거로 내세웠던 '우리나라만 신문방송 겸영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표 2-3>이 보여주듯, 2007년 기준으로 이미 여러 신문사가 방송산업에 다양하게 진출해 있었다.

<표 2-3. 신문사의 방송산업 진출 현황 (2007년 기준)>

신문사	케이블TV PP		비고
중앙일보	중앙방송	Q채널	중앙방송 매출액 267억 원
		J골프	
	중앙 애니메이션	카툰네트워크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비즈니스앤	디지털조선일보 매출액 305억 원
한국일보	석세스TV		
국민일보	쿠키TV		
매일경제신문	MBN		2000년 방송법 개정 이전 개국
한국경제신문	한국경제TV		매출액 378억 원
헤럴드경제	동아TV		
서울경제	서울경제TV		
머니투데이	MTN		
이데일리	이데일리TV		

*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109009008
* <비고>의 매출액은 2007년 기준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근거한 것임.

당시의 방송법으로도 신문이 얼마든지 방송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대기업의 방송산업 진입도 가능했다. 재계 자산순위 선두를 다투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등이 PP를 설립하여 방송영상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까다롭게 규제하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PP뿐만 아니라 SO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도 가능했다. 이미 2004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SO에 대한 대기업 지분 제한 33%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송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 활성

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미디어 악법'처럼 소유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 또는 현실의 왜곡이었다.
까다로운 진입장벽 또는 겸영 금지가 존재하는 영역은 방송산업 일반이 아니라 민주적 여론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파방송, 종편과 보도PP일 따름이었다. OECD에 가입한 해외 선진국도 무제한적으로 신문방송 겸영이나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신자유주의적인 소유규제 완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조차도 동일 지역에서의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미국의 기준을 따르자면, 전국적 사업규모를 가진 국내의 과점신문 역시 전국적으로 송출되는 방송, 그것도 여론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지상파·종편·보도PP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3) 여론 다양성의 왜곡

이명박 정부는 소유규제 완화가 채널 선택권과 여론 다양성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2009년 1월 22일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종합편성PP와 보도채널의 도입이 내용 다양성, 사상·관점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의 접근 다양성을 의미하는 노출 다양성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디어 소유 집중은 민주적 여론형성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다.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안이 문제인 까닭은 보도 기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파방송, 종편PP 및 보도PP에 대기업과 신문사(더구나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보수신문)의 진출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지상파, 종편 및 보도PP에 대한 대기업/신문사의 시장 진입은 산업 활성화만이 아니라 여론에 미치는 영향과 다양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다. 영국의 미디어경제학자 도일(G, Doyle)이 지적하듯이 '미디어 소유를 다루는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경제가 아닌 다양성의 확보'때문이기 때문이다[23].
채널 수의 증가가 직접적으로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대기업과 보수신문의 종편·보도PP 진출을 통한 채널 증가를 다양성 증진으로 평가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과 방송 진출이 용이한 수준의 자본력을 지닌 보수신문의 정치·사회적 세계관의 동질성을 간과했거나, 더욱 정확하게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여론을 획일화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보수적 또는 기업친화적 시각을 가진 대기업과 신문사에 의한 여론 과점이었다. 엄밀하게 여론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유규제 완화는 필연적으로 소유 집중으로 가져오고, 이는 여론 다양성을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명박 정부가 애써 무시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누가 소유하는가?'와 '무엇을 방송하는가?'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23 이탈리아의 경우, 2004년 '가스리피법'등을 통과시켜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대폭 허용한 결과, 언론자유 순위가 세계 70위권 아래로 급락했다.

3) '미디어 악법' 개정 과정과 종편채널 도입

(1) 미발위 구성과 미디어 악법 강행 처리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 악법 개정안 발의에 맞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언론학계에서도 곧바로 문제제기와 함께 악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 2008년 12월 9일, 203명의 언론학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미디어공공성포럼'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 법안은 정부의 뜻에 맞는 재벌과 족벌신문에 의한 여론 장악을 도모'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도 12월 26일부터 총파업을 벌이면서 미디어 악법 개정 저지에 나섰다.

야당과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에 부딪힌 정부여당은 타협을 시도하여 2009년 1월 6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협상에 나섰다. 타협의 결과물은 미디어 관련 7개 법안 중에서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1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하고, 첨예한 논란을 낳고 있는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5개 법안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2009년 3월 5일, 여야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산하에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이하 미발위)'를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여야가 각각 10명의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여 20인으로 구성된 미발위(공동위원장: 여당 추천 김우룡, 야당 추천 강상현)는 2009년 3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 자문기구 성격의 미발위는 모두 14차례의 전체회의와 주제별 공청회 4회, 지역 공청회 3회를 개최했으나 활동 범위와 역할, 사회적 의견수렴의 방법 등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이로 파행을 거듭하다가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인 한나라당은 애초부터 미발위를 미디어 악법 개정을 위한 구색 맞추기 용도로 한정했다. 미발위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 여당 추천 김우룡 위원장은 언론매체를 향해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회의를 공개하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 미발위가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에서 여론조사를 아예 배제했고 공청회도 최대한 적게 개최하자는 주장을 거듭했다. 사회적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한다는 논의기구 자체의 회의 공개를 반대하는 여당의 의도는 분명했다. 미디어 악법의 국회 강행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2009년 6월 25일, 미발위는 여야 각각의 별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여당 추천위원들의 최종 보고서는 '의견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매체 독과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후에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바탕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허용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에게 다양한 보도를 제공하고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신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문 및 대기업의 방송 진입에 따른 장기적 효과로 여론 다양성, 시청자 주권과 같은 언론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방송법 개정을 통한 방송사업 소유규제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야당 추천위원들의 최종 보고서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다양성 상태에 대한 진단도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여론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체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여론다양성 수준의 진단을 위해 범사회적인 ‘여론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 말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미발위의 파행적 운영과 여야의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미발위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의견수렴이라는 명분을 쌓았다고 판단하고, 미디어 악법 처리에 나섰다. 2009년 7월 14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하여 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7월 22일, 김형오 의장은 미디어 악법 직권상정을 밝혔고,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여 여야 의원들의 물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했다.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최초 투표에서 재적 의원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나 재투표라는 수단까지 활용하면서 독단적으로 미디어 악법을 처리했다.

(2) 방통위의 종편채널 도입

한나라당의 미디어 악법 강행처리에 뒤이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09년 7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8월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승인관련 구체적 정책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면서 “결코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방송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는 시장 현실에 눈을 감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 경쟁력이 사업자 선정 요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서 2010년 8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사업자 수에 대해서는 숫자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일정자격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업을 승인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자본금 규모는 3,000억 원을 기준금액으로 제시하고, 규모에 따라 차등배점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9월 17일에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승인 기본계획안에서 밝힌 정책목표는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였다.
협소한 방송광고 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일시에 다수의 종합편성채널이 시장에 진입하면 방송광고 시장에 약탈적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과점 보수신문 모두에게 특혜를 주어 이명박 정부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셈으로 절대평가 방식의 다수 종편채널사업자 선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결국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조선, 중앙, 동아, 매일경제 등 4개 신문사를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6개 사업자가 신청하여 한국경제와 태광그룹을 제외한 보수신문 모

두가 종편채널 시장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2. 종편채널 특혜와 방송산업의 왜곡

1) 종편채널 특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악법'을 통한 방송구조 개편의 목표는 친정부적인 보수언론의 여론 지배력을 높이는 것이었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 채택한 것이 종합편성채널의 대거 시장 진입이었다. 종편채널은 사업자 선정 자체에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종편채널 사업 자체가 다른 방송사업자와는 달리 특혜를 등에 업고 출발했다.

(1) 종편채널 의무재송신과 '황금채널' 배정

방송법 제78조 제1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방송 플랫폼 사업자가 KBS1 채널과 EBS를 의무적으로 재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목적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TV를 시청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공성을 지닌 두 채널의 방송프로그램을 볼 수 있게끔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방송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유료방송 플랫폼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르면 "종합편성"이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당연하게도 지상파방송도 종합편성을 한다. 하지만 KBS1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 채널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우리 방송법과 시행령 상으로 보면, 조선·중앙·동아·매경 종편채널이 KBS2, MBC, SBS 등의 지상파방송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지닌 셈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종합편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의무가 더욱 높다. 때문에 종편채널의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제53조는 새롭게 방송시장에 진입한 종편채널들을 모든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 시청자가 자동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특혜로 작동한다.

더 큰 문제는 방송통신 규제기구이자 종편채널의 승인을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의 수장인 최

시중 위원장이 방송법을 무시하고 유료방송 플랫폼에게 종편채널의 '황금채널' 배정을 실질적으로 강제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2010년 10월,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종편채널 사업자에게 지상파에 인접한 낮은 채널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채널의 "효율적인 시청권을 위해 채널 선정에 대해 SO와 협의할 것"이며 "(이러한 '황금채널' 배정이) 방통위의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효율적인 채널 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래 PP에게 어떤 채널을 배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료방송 플랫폼(SO, 위성방송, IPTV)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른다. 시청률이 높아서 시청자의 주목을 끌 수 있는 지상파방송 채널들을 낮은 번호대에 배치하고 그 앞뒤로 홈쇼핑채널들을 배정하여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지상파 채널들 사이를 오갈 때 홈쇼핑을 시청하게끔 만드는 것이 유료방송 플랫폼의 중요한 재원 중 하나다. 홈쇼핑채널들을 지상파와 인접한 채널로 배정하는 대가로 SO가 홈쇼핑으로부터 받는 송출 수수료는 2015년 기준으로 7,714억 원에 달하며, 종편채널을 승인한 2010년 기준으로도 4,975억 원에 이른다. 이는 SO의 방송사업 수익 중에서 시청자로부터 받는 수신료 다음으로 큰 몫을 차지한다. 2010년에는 SO의 매출에서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2.7%였고, 2015년에는 34.1%에 달한다[24]. 종편채널은 지상파 바로 뒤의 황금채널 대역에 배정되었음에도 SO를 비롯한 유료방송 플랫폼에게 송출 수수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SO로부터 프로그램 제공 대가를 받는다. KBS1과 EBS는 의무재송신 채널이기에 SO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지만 종편채널은 황금채널 배정 특혜와 함께 프로그램 제공 대가도 받는다.

(2) 광고영업과 편성 및 기금 특혜

방송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서 지상파방송은 스포츠 중계 등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종편채널은 다른 유료방송PP와 동일하게 중간광고를 할 수 있다.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도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더 많은 방송시간을 광고로 판매할 수 있다. 협찬도 마찬가지다.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서도 종편채널은 지상파방송과는 다른 규제를 받고 있다.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의무 편성 비율이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상인 반면, 종편채널은 다른 유료방송PP와 동일하게 100분의 20 이상이다.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비율도 지상파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내에서 방통위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 반면, 종편채널은 100분의 15 이내에서 편성하면 된다.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에 따라서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은 방송광고를 직접 판매할 수 없고 허가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24 해당 수치는 방통위의 <2011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와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따랐음.

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미디어렙은 부칙 제4조를 통해 종편채널에게 최초 사업 승인일로부터 3년 동안 직접판매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었다. 또 KBS와 MBC는 공영미디어렙을 통해서만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종편채널은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서도 특혜가 작동했다. 2011년 종편채널이 출범한 이후 2015년까지는 다른 방송사업자들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출범 초기에 '유치산업 보호' 논리를 펴면서 방통위가 기금 납부를 유예했기 때문이다. 2016년에야 비로소 종편채널에게 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방송광고매출의 0.5%에 불과했다.

종편채널 JTBC는 2015년에 1,200억 원대의 광고매출을 올렸는데 기금 분담금은 불과 6억 원 가량에 불과했다. 광고매출 622억 원인 MBN은 3억 원, TV조선과 채널A는 각각 2억

<표 2-4.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의 비대칭 규제>

구 분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근거
국내프로그램 편성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60 이하	방송법 시행령 57조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100분의 35 이내에서 고시	100분의 15 이내에서 고시	방송법 시행령 58조
광고시간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5% 이내, 최대 18%(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최대 15%)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7% 이내, 최대 20%	방송법 시행령 59조
중간광고	(스포츠 중계 등을 제외하고는) 금지	허용: 매회 광고시간은 1분 이내 -45-60분 미만 1회 이내 -60-90분 미만 2회 이내 -90-120분 미만 3회 이내 -120-150분 미만 4회 이내 -150-180분 미만 5회 이내 -180분 이상 6회 이내	방송법 시행령 59조
가상광고 간접광고	프로그램 시간의 5% 이내	프로그램 시간의 7% 이내	방송법 시행령 59조의 2, 3
방송통신발전 기금 징수율	-KBS: 광고매출의 2.87% -MBC: 광고매출의 4.30% -SBS: 광고매출의 4.30% - OBS: 광고매출의 2.30% - 지역 MBC: 광고매출의 2.30% (목포, 여수, 원주, 충주는 1.30%)	-5년간 유예 -2016년 최초 징수 - 광고매출의 0.5%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5조 고시

6,000만 원과 2억4,000만 원에 그쳤다. 반면에 광고매출이 136억에 불과한 울산MBC는 4.5배 이상의 광고매출을 거둔 MBN과 비슷한 금액의 분담금을 내야 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OBS도 광고매출의 2.3%를 기금으로 징수하는 반면,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TV조선과 채널A는 불과 0.5%만을 분담하면 되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2) 방송산업의 구조 왜곡

(1) 종편채널의 급성장 원인: 불법·탈법 광고영업 통한 시장 약탈

종편채널은 2011년 방송을 시작한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방송매출이 늘고 영업손실이 줄어들었다. 4개 종편채널을 합쳐보면,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액이 32.5% 급등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2015년에 처음으로 흑자전환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편채널의 급성장은 무엇 때문일까?

<표 2-5. 종편PP의 방송사업매출 및 영업손실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년 대비 '15년	
							증감액	증감률
계	방송매출	846	2,264	3,062	4,016	5,321	1,305	32.5%
	영업손실	-870	-3,098	-2,474	-1,286	-595	691	적자감소
TV조선	방송매출	69	513	716	885	1,136	297	28.3%
	영업손실	-115	-543	-233	-122	45	167	흑자전환
jtbc	방송매출	83	642	891	1,309	1,972	663	50.7%
	영업손실	-377	-1,397	-1,553	-861	-564	297	적자감소
채널A	방송매출	80	480	672	924	1,136	212	22.9%
	영업손실	-310	-738	-365	-138	-9	129	적자감소
MBN	방송매출	614	628	783	898	1,076	179	19.9%
	영업손실	-68	-419	-322	-165	-67	98	적자감소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6).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34쪽.

방송광고 시장으로 한정시켜 보면, 2011년 모든 방송매체의 총 광고매출은 3조6,342억 원이었고, 2015년에는 3조4,737억 원으로 오히려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상파 3사를 보더라도 KBS, MBC, SBS 모두 2011년에 비해 2015년의 광고매출 규모가 축소되었다. 반면에 종편채널은 빠른 속도로 광고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송매체들의 프로그램 품질과 같은 경쟁력이 하락했고, 반면에 종편채널들의 경쟁력만 상승했기 때문일까?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최근 수년간 시청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CJ계열PP 또한 2011년에 3,562억 원의 광고매출을 거둔 반면, 2015년에는 3,184억 원으로 뒷걸음질 쳤기 때문이다.

<표 2-6. 매체별 광고매출 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4년 대비 '15년	
						증감액	증감률
KBS	5,987	6,236	5,793	5,223	5,025	-199	-3.8%
MBC	5,977	4,933	4,790	4,460	4,651	191	4.3%
SBS	5,280	4,981	4,738	4,408	4,366	-41	-0.9%
종편채널	716	1,710	2,355	2,229	2,863	634	28.4%
CJ계열PP	3,562	3,555	3,153	2,868	3,184	316	11.0%
기타 PP	3,584	4,016	3,704	3,735	3,978	243	6.5%
SO	1,144	1,099	1,220	1,417	1,392	-25	-1.8%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6). <2015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9쪽. 수정후 일부 인용.

종편채널의 광고매출이 급증하고 다른 방송매체들의 광고매출이 줄어들거나 제자리걸음에 그친 까닭은 방통위를 비롯하여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해 온 종편채널 특혜와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묵과에 기인한다. 특혜와 차별적 규제로 인위적으로 방송산업의 구조를 종편채널에 유리하게 재편해왔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는 <선데이저널>은 2015년 3월 5일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 없었다'라는 제호의 기사에서 종편채널 광고국의 업무일지를 폭로했다. 이는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조선·중앙·동아·매경이 종편채널 사업자로 선정되어 시장에 진입했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드러난 것이다. <선데이저널>이 폭로한 MBN의 광고영업일지에 따르면, 종편채널이 광고주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프로그램을 빌미로 협박에 다름없는 광고영업을 반복해왔던 것이다.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MBN은 신문과 종편의 영향력을 무기삼아서 협찬이나 돈을 받고 업체나 제품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런 조악한 홍보방송을 다시 돈을 받고 재방송하기까지 했다. 또한 MBN 미디어렙 광고1팀의 업무일지에는 자사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다른 종편채널의 유사한 불법·탈법적 광고영업 행태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이에 같은 해 5월에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이 TV조선과 채널A에도 유사한 광고영업 관행이 있음을 폭로하기도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러한 불법·탈법 광고영업과 그로 인한 방송저널리즘의

파행은 종편채널의 사업 승인을 취소할 만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방통위의 엄중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조사 착수 6개월 만에 나온 징계 결과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2015년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불법행위 2건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MBN의 광고대행사인 MBN미디어렙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미디어렙법 위반행위로 과징금 2억4천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으나, MBN을 직접 제재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렙에만 처벌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미디어오늘> 등의 미디어비평지는 방송편성의 주체인 MBN에 실질적 징계를 내리지 않고 미디어렙만 처벌한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본체는 건드리지 않고 꼬리만 잘랐"으며 MBN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아서 재승신 심사 때 단 1점의 감점도 받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시민단체가 3월에 민원을 제출하자 방통위는 공문 제출을 '늦춰달라'고 요구했고, 민원 제출 사실을 MBN에 알려줬다는 의혹도 아울러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방통위는 빙산의 '일각' 중에서도 '일각'만 제재했다. 민언련은 영업일지에 나온 54건의 불법의심행위 중 보도를 통해 사실확인이 가능한 37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그 중 21건이 실제 방송에 반영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방통위는 그 중 6건만 제재했다. 정부의 조사가 시민단체의 조사에도 못 미친 것이다. 민언련에 따르면 협찬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속칭 조지는 보도를 내보낸 정황도 있으며, 타 종편이 '협박'을 통한 광고영업을 했다는 기록도 있다.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신문과 방송의 연계판매 정황도 있다. 기자가 광고영업을 한 사례도 버젓이 쓰여 있지만 방통위는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5210

종편채널을 도입하면서 방통위는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과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 간 종편채널은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 성장하기는커녕, 불법·탈법적인 광고영업으로 다른 방송매체의 광고시장을 '약탈'하는데 열중했을 따름이었다.

(2) 방통위의 거듭되는 '부정 재승인'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3년 6월 14일,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으로 왜곡 보도한 종편채널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 "5.18 왜곡을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밝혔다. 그러나 2014년 3월 19일, 방통위는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편채널 3사에 대해 '조건부 3년 재승인'을 의결했다.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최종 '심사채점표' 공개를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쪽 상임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야당 상임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는 재승인 의결을 강행했다.

종편채널 재승인 심사는 계량적인 정량평가 항목이 없지 않으나 결국 정성평가가 결정적이고, 따라서 공정한 심사위원 구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방통위는 결격사유가 명확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애초부터 '재승인 의결'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형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친 것과 다름없는 행태를 보였다.

2015년 12월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앞둔 3개 종편채널에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결격사유 명단 제출을 요구했고, 종편패널은 일부 명단을 누락한 채 방통위에 제출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방통위를 이를 엄밀히 검토해야 마땅하나, 방통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부적절한 인사들을 묵인한 채로 심사위원에 포함시켰다. 재승인 심사위원에 포함된 안정민 한림대 교수는 TV조선의 '공정보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인물이고, 또 다른 심사위원이었던 인하대 하주용 교수는 2015년 9월과 12월에 채널A 사내교육에 외부전문가로 초빙돼 특강을 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 방통위가 스스로 밝힌 심사위원 결격사유에는 ▲해당법인 및 주요 주주사의 임직원 ▲해당법인 및 주요 주주사의 1% 이상 주주 ▲해당법인 등에 고정적으로 기고하거나 출연한 자 ▲2011년 1월 이후 해당법인 및 주요주주사의 시청자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자문이나 용역 수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유에 해당하는 두 명의 교수를 방통위가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TV조선과 채널A는 결격자 명단을 누락시켜 허위로 방통위에 제출한 것이고, 방통위를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묵인한 채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종편채널의 심각한 역사 왜곡을 엄중하게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허언에 불과했고, 더욱이 결격인사를 심사위원에 포함한 채로도 진행된 심사는 종편 3사 모두에게 '재승인'이라는 '면죄부'를 주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7년 3월 24일, 방통위는 다시 한 번 이해하기 어려운 재승인 결과를 발표했다. TV조선, jtbc, 채널A에 대한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에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조건부 재승인"을 받은 것이다. 방통위가 재승인 기준을 650점으로 정해놓고도 그에 미달하는 625점을 얻은 TV조선을 재승인했다.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또 다시 조건부로 '면죄부'를 준 셈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 OBS도 650점을 얻지 못했으나 조건부로 3년 재허가를 의결한 사례가 있기에 TV조선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우가 다르다. OBS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방송프로그램 내용에는 별반 문제가 없었고, OBS 직원들이 급여를 반납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재허가를 요구한 바 있다. 반면, TV조선은 2015년에 흑자전환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편파 편성과 콘텐츠 투자 미비, 오보·막말·불공정방송으로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렇듯 반복적으로 불거지는 종편채널 재승인 과정의 문제점은 규제기구의 공적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있으며, 재승인 심사를 형식적인 겉치레에 그치게 만들고 있다. 이 와중에서 종편채널은 특혜와 탈법을 먹고 자라고 있다.

제3장
표현의 자유 축소와 탄압

1. 방통심의위의 정치적 구성과 정파성 과잉

1) 방통심의위의 출범과 정파적 다수결 심의

2008년 5월 15일 방송과 통신 분야의 콘텐츠 심의를 아우르는 '민간 독립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공식 출범했다. 방통심의위는 방통위의 출범과 함께 옛 방송위의 방송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통신심의 기능을 합쳐서 맡게 됐다. 같은 해 2월에 제정·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3인, 국회 소관 상임위 추천 3인 등 모두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1기 방통심의위 박명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방송의 공공성 기준 구체화, 심의방식 원칙 세우기, 인터넷 심의 방향 설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방송과 통신의 콘텐츠 공공성을 보장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문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25]. 또 박 위원장은 5월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심의위의 직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에서 대해서는 조만간 심의에 착수할 것이며 "공정성과 객관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토대로 당사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26].

그러나 박 위원장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발언이 허언에 불과하며 방통심의위는 정파적 다수결을 통해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활동을 옥죄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2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5151743245&code=960801
26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2104338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2008년 7월 1일 방통심의위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네티즌들이 올린 조선·중앙·동아일보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기업들의 불매운동 게시글 대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고 '해당 정보의 삭제' 요구를 결정했다.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7조와 8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사법기구가 아닌 심의기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날의 결정은 표결을 통해서 다수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삭제 요구에 찬성한 심의원들이 6명이었던 반면, 3명의 위원은 해당 게시글들이 기업의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 부합한다고 맞섰으나 소수의견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같은 해 7월 16일 방통심의위는 4월 29일과 5월 13일 방송된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27]. 이날의 심의는 야당인 민주당 추천 심의위원들 3인의 항의와 퇴장으로 파행을 거듭한 속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 6인 위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앞선 불매운동 게시글 심의와 똑같은 결과가 반복된 것이다. 이로써 명확해졌다. 방통심의위는 정치·사회적 논란을 빚는 사안의 심의에서 여야 추천 6:3 구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정파적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공정성이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심의위원의 수적 우위에 기대어서 정치권력에 불리한 언론에 대해 언제라도 '불공정하다'고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2) 심의기구가 아닌 '검열기구'로의 전락[28]

누구나 방송이 공정해야 한다는 명제를 정당하다고 여길 것이다. 따라서 방송법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6조 제1항). 그러나 공정성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27 대법원은 2012년에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판결했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또한 파기환송 시켰다. 사법부의 판결이 직접적으로 공정성을 다룬 것은 아니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임을 밝힌 셈이다.

28 이 부분의 내용은 다음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것이다: 이남표(2012). 방송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방송문화>, 8월호, 10-15.

언론학자들은 흔히 사실성과 균형성을 공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하위 개념으로 여긴다. 공정하려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 아니며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더라도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 뉴스가치가 있는 사건을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 보도하는 것, 특정한 프레임 안에서 산술적 균형에 매몰되는 것도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公正, fairness)이라는 말은 한자어나 영어 모두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을 담고 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것은 단순한 중립성을 넘어서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며, 이는 윤리적 가치평가와 함께 역사적·이데올로기적 판단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초월적 진리의 담지자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성은 미리 주어진 사실성과 균형성의 추구를 통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사후에 구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이는 공정성을 가치중립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개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29]. 즉 방송을 포함한 언론보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선험적 진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당성 주장에 대한 합당한 근거 제시와 논의를 통해서 판명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공정한 보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근거 제시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를 펼쳐서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려는 방송이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을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다루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정답을 우리는 미리 갖고 있지 않다. 명확하게 합의된 규칙이 없기에, 만약 그러한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이해 당사자들의 타당성 주장과 근거 제시를 통해서 '상대적이고 사후 규제적인 원리에 의해 사회적 합의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심의'라고 한다. 사전적 의미로 심의는 어떤 사항에 대해 그 이해득실 등을 상세하고 치밀하게 토론하는 것으로 이성적인 논의를 통해 하나의 타협을 형성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정치의 원리 중 하나를 말한다. 심의 과정을 통해서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우리 사회에서 심의의 제도적 주체는 방통심의위다. 또 방통심의위는 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준사법적 행정기구로서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의해서 방통심의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제18조). 따라서 방송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이를 위해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한다(방송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문제는 심의를 위한 준사법적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심의 의결을 통해서 방송사의 재허가와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을 실질적으로 내릴 수 있는 방통심의위 스스로가 공정할 수 있는가이다. 심판의 역할을 맡고 있는 방통심의위가 공정하지 못하다면,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방송 공정성의 사회적

29 최영재·홍성구(2004). 언론 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26-342.

구성은 시작부터 좌초하거나 코미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여야 6:3의 구도로 구성된 방통심의위는 앞서 보았듯이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야당 추천 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의 의결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같은 YTN의 이른바 '블랙투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중징계를 6:3으로 의결했다. 2009년에는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후>에 대해 각각 경고와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다. 2011년에는 KBS <추적60분>의 천안함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역시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의 의결로 결정했다.
이처럼 첨예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사안들의 심의 결과는 한결같이 6:3이라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비율을 그대로 따랐다. 공정성의 사회적 구성에 필요한 근거 제시와 타당성 주장을 통한 합리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대체되곤 했다. 이런 방식으로 심의가 다수결에 의한 정파적 결정으로 퇴색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에서 공정성 심의는 심의의 이름을 빌린 사후 검열 도구로 전락했다. 방송통신심의위는 스스로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기구가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런 비극이다. 그런 비극이 이명박 정부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2. 심의를 빙자한 방송 유사검열과 청부심의 남발

1) 심의를 통한 '낙인효과'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는 심의 과정 자체의 '불공정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게 만드는 일종의 '낙인효과'를 발생시킨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수구세력이 아무런 근거 없이 '빨갱이'라고 반복적으로 호명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나, 최근에도 벌어지고 있는 자신과 입장이 다른 집단에게 '종북세력'이라고 딱지를 붙여 매도하는 것과도 같다.
2008년 방통심의위가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림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이 무언가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대표적인 낙인효과의 사례다.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부실한 협상과정을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익적 목적에 의한 정부정책의 비판보도에 있어서는 일부 지엽적인 과장이나 오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 따라 그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2011년 9월 2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 전원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1심과 2심 판결은 방송 내용의 세세한 부분이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를지라도 전체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재판부도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제작진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럼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40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PD수첩> 제작진은 체포되고 포승줄에 묶이는 등 고초를 겪었으며, 일부 언론에 의해 마치 심각한 범죄자처럼 매도당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심의위와 정치검찰, 보수언론은 일종의 삼각편대를 이뤄 낙인찍기로 여론을 호도하려 했던 것이다. 먼저 방통심의위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려 <PD수첩> 광우병 편이 심각한 허위보도를 했다고 불을 지핀다. 이어서 검찰이 제작진을 체포하고 기소하면서 범죄자의 외양을 입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수언론은 <PD수첩>이 얼마나 불공정한 방송인가를 반복하여 보도하면서 증폭시킨다. 따라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수의 국민들은 마치 <PD수첩>이 허위보도를 일삼은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2) 유사검열을 통한 자기검열의 내면화

심의는 검열과 다르나 방통심의위의 정파성 과잉에 따른 정치심의는 실질적으로 '사후검열'과 같이 작동한다. 그리고 이는 방송사의 징계를 통해 취재·제작 종사자들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내면화하게끔 만든다.

방통심의위의 주의, 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같은 심의 결정은 해당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방송사는 방통심의위의 징계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다시 사내에서 징계한다. 간접광고나 어린이/청소년보호, 지역/인종/성 차별 등 소수자 보호의 사안에 대해서 방통심의위가 방송 프로그램을 징계하고, 이에 대해 방송사가 해당 제작진을 징계하는 것이야 논란의 여지가 적다. 그러나 정치적 공정성을 이유로, 더구나 정치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보도의 공정성을 빌미삼아 제작진을 징계하는 것은 언론의 감시견(watchdog)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된다.

2011년 9월 19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진에 대해 정직 3개월과 감봉 6개월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 명예 실추'를 꼽았다.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 회사가 시청자에게 사과를 했고 이에 해당 보도를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징계는 대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사법부가 문제 되

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함으로써 명예를 실추했으니 책임을 묻겠다'는 식인 것이다.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은 2월 16일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진행된 사장 후보자 면접에서 "광우병 보도가 허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프로그램 관련자들을 중징계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MBC에게 치명적이었다"는 것이다[30]. 그러나 정작 대법원은 광우병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 대한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무리한 중징계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방통심의위의 과잉 정파성에 입각해 진행된 '불공정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이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에 징계무효 소송을 냈고, 사측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고, 2심 재판부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에 징계를 취소했던 MBC 사측은 2014년 4월 7일 느닷없이 다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정직과 감봉 징계를 의결했다. 사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008년 광우병 보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두 차례의 사과방송으로 인한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라고 강변했다. 제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코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는 방통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반복해서 <PD수첩> 제작진을 옥죄는 명분 아닌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제작진에 대한 징계 사유로 거듭 꼽고 있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정작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다.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방통위가 방통심의위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방송사업자에게 내리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청자에게 대한 사과 명령은 방송사업자 스스로 인정하지도 않은 잘못을 마치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사과인 것처럼 알리도록 함으로써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방송사업자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저하시키고 그 인격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서 2013년 3월 23일 방송법이 개정되어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제재조치로 명하는 제100조 제1항 제1호가 삭제됐다.

다행스럽게도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MBC 사측의 재징계는 또 다시 법원에 의해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취재·제작 종사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방통심의위의 징계에서 비롯한 반복 징계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검열의 내면화를 부추기게 된다. 악무한적인 징계와 소송의 악순환이라는 굴레가 두려운 언론인들은 공익을 위해 요구되는 감시견 역할을 포기하고 정치권력의 애완견(lapdog)으로 순치되어 안락한 일상을 누리고 싶은 유혹에 마주하게 된다. 이 모든 악순환의 출발점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획책한 방통심의위의 유사검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30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56

3) 표적심의를 통한 비판언론 통제

2008년 11월 26일 방통심의위는 '낙하산 사장 반대' 과정에서 조합원 징계에 항의하며 앵커들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출연한 YTN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 추천 위원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방송에 나선 앵커와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했고,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만이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었다.

문제는 이 중징계가 다른 방송사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결 직후에 방통심의위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는 MBC와 SBS 기자·아나운서들의 검은색 옷차림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건의했고, 그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이들이 출연했던 프로그램을 따로 제재하지는 않았다. 방통심의위는 어느 정도의 검은색 옷차림이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 당시 YTN을 제재했던 사유 중 하나였던 방송심의규정 제9조 제4항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적용도 일관성이 없었다. YTN의 '블랙투쟁'에 대해서는 이 심의규정 등을 근거로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내린 반면, 2010년 KBS가 방송 도중에 '노조 불법파업'이라는 흘림자막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정을 적용했음에도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으로 작용하는 법정 제재가 아닌 행정지도 성격의 '권고'만을 의결했다[31].

결국 문제는 방송심의규정이 아니라 해당 사안의 정치적 성격인 것이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방송내용은 중징계하고, 그렇지 않은 사안은 징계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따라서 이는 '표적심의'를 통한 언론 통제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2013년 9월 7일 KBS <추적 60분>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을 사내 사전심의에 따르는 방송보류 판정과 재편집 등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방송했다. 같은 해 11월 21일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모호하고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등 규정 자체도 문제이고, 이를 적용할 때도 편파성이 작동했다[32]. 제11조는 다음과 같다.

>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 최영묵(2011.1.24.). 월권과 탈법 통한 '청부'심의, 해체해야 할 '통치'기구.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 토론회 발제문.

32 박건식(2013.10.2). 표현의 자유와 그 적들. 한국언론정보학회·한국PD연합회 공동주최 '방송심의, 표적과 과잉으로 얼룩지다'토론회 발제문.

위 규정은 앞부분과 뒷부분의 내용이 모순적이다. 앞쪽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을 하지 말라'는 것인 반면, 뒤쪽은 '그에 대한 심층취재가 공공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방송인들이 도대체 방송을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을 강조하면 재판 중인 사안은 가급적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나, 뒤의 내용에 입각해보면 공익을 위해 충분한 심층취재가 필요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11조의 앞과 뒤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부만 취사선택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이 흔히 벌여졌다.

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다.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를 가리키는 지에 따라 방송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1심이 끝나면 재판이 끝난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 판결까지 결정되어야 비로소 재판이 끝난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만약 대법원 판결까지라고 한다면, 방송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보도할 수 없게 된다[33]. 심층탐사보도를 피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은 무조건 소송절차를 시작하여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34].

더 큰 문제는 방통심의위가 심의규정 11조 위반을 이유로 정치권력에 불편하거나 권력을 비판하는 프로그램만들을 표적 심의하여 징계한다는 점이다[35]. 2008년 이명박 정부와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11조를 근거로 방송이 보류되거나 징계를 받은 프로그램들은 ▲KBS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KBS <추적 60분> '4대강 사업권 회수 논란'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1심 무죄 판결 방송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등이었다. 반면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논란은 모두 재판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방송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보도에 대해서는 방통심의위가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청부심의와 심의기구의 권력도구화

33 앞의 글, 21-22쪽.

34 방통심의위는 이렇듯 모호한 방송심의규정 제11조를 뒤늦게 2015년 10월 8일에서야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판의 결과를 단정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미리 판단하는 내용
2. 재판의 결과 또는 재판의 내용과 관련되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내용
3.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는 내용
4. 그 밖에 법관의 양심에 따른 독립된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35 앞의 글, 23-24쪽.

박근혜 정부의 방통심의위는 직접적으로 청와대의 여론통제 도구로 활용됐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밝혀진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는 2014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200일 동안 정치권력이 어떻게 방통심의위를 권력도구화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자료였다.[36]

김 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2014년 8월 8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제보도가 범람"하고 있다면서 "방통심의위 활용"을 지시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 활용발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8월 10일에는 "미래수석실 산하 방통심의위 담당 비서관을 확인"토록 했고, 이어서 8월 26일에는 "방통심의위 통신 분야 인적 구성"을 보고토록 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음란성 패러디를 삭제"하고 관련 "검색어"가 뜨지 않도록 "조치"토록 한다.

같은 해 9월 5일에는 방통심의위의 KBS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보도' 심의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김 실장은 "국가정체성과 헌법가치 수호 노력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고 질타한다. 심의결과가 중징계가 아닌 행정지도 차원의 권고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강한 의지와 열정, 체제수호관"을 가지고 "전사들이 싸우듯이" 대처하라고 지시한다. "인사관리를 통해 일선행태"를 바로잡으라고도 발언한다.

9월 15일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jtbc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예상되는 jtbc의 보도에 대해 "보수 분위기 기조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니 "적극적 오보 대응 및 법적 대응"에 나서라고 주문하면서 "방통심의위 제소 활용"을 지시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통심의위의 민원조차도 청부와 동원을 일삼았다는 사실이다. 김 실장은 jtbc의 탐사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방통심의위에 일반인(을 동원해) (청부민원을) 신청"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청와대가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방통심의위를 활용한 청부심의를 주문하고, 더구나 청부민원까지를 동원하여 심의기구를 정치권력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올해 3월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제공한 jtbc의 태블릿PC 보도에 대해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제작진을 불러 의견진술 하도록 결정하기도 했다. 검찰과 특검에서 모두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 맞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를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시기 내내 방통심의위는 방송을 순치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첨병 역할을 수행해왔다.

36 이하의 업무일지 내용 발췌는 다음을 참고했다. 김동찬(2017. 검열 게이트의 문지기 방통심의위,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미디어미래연구소·언론개혁시민연대·박홍근 의원·김경진 의원·추혜선 의원 공동주최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토론회 발제문.

제4장
방송의 내적 자유 침해
: 단협과 편성규약 무시

1. 방송의 내적 자유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헌법이 규정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립 가능한 제도이다. 시민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려면, 공적 사안들을 숙지하고 그에 관해 토론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한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언론은 공기업, 사기업을 불문하고 주권자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실하고 공정하게 보도(공공 저널리즘) 해야만 한다. 진실하고 공정하게 제반 권력을 감시, 비판, 견제하려는 언론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외부의 압력과 충돌할 수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언론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보도(외적 자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인의 행위는 또 언론사 내의 압력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공공 저널리즘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언론인은 자신들이 취재, 보도, 제작하는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내적 자유). 이 역시 국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야만 한다. 그것이 편집권의 문제요, 언론의 내·외적 자유의 문제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다. 4조 1항과 2항은 내·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방송법은 4조 3항에서 특히 인사권을 가진 경영자의 편성권 침해를 방지하고 내적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4항에서는 내적 자유(자율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편성규약을 제정 운용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 105조와 106조에서 각각 4조 2항과 4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③ 방송사업자는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성명을 방송시간내에 매일 1회 이상 공표하여야 하며,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2. 방송법의 편성규약과 현실 운용

방송법 4조 4항에서 규정한 방송편성규약의 제정 공포를 통한 내적 자유(자율성) 보장은 양대 공영방송에서 부분적으로 유사성과 상이성을 나타내며 제도화됐다. 양 방송사가 동일하지 않은 것은 방송법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는 정권 초기 방송개혁 요구를 수렴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포'(4조 4항)토록 하는 (통합)방송법을 제정하였다. 방송편성규약이 담아야 할 기본 사항이 명시되어 편성의 자율성이 확실하게 담보되어야 하지만 추상적이고 선언적으로 규정하였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였지만, 필연적으로 포함될 편성위원회의 위상과 그 운용 지침 같이 편성규약이 담아야 할 내용이 구체적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편성위원회의 구조, 운영 그리고 노동조합의 단체 협약 관계에서 차이를 보였다.

1) 편성위원회 구성과 기능

KBS는 편성위원회를 전체 편성위원회와 더불어 본부별 편성위원회도 두도록 하였으며, 본부별 편성위원회 위원은 본부장을 포함한 책임자 위원과 실무자를 대표한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였다. 반면 MBC는 차장급 이하 사원 중에서 국실별 총회를 거쳐 선임된 보도부문 4명, 편성·제작부문 4명과 보도부분 민주방송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라 한다)간사, 편성·제작부

문 민실위간사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 단일 편성위원회 구조다. 따라서 KBS는 편성위원회가 책임자와 실무자가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면 MBC는 실무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기구로서 자율성 침해에 관해 판단하고 국장과 협의하는 위상을 갖는다.

한편 각 사의 편성위원회는 KBS의 경우처럼 단체협약에 따라 설치한 '공정방송위원회(공방위)'가 전체 편성위원회를 대체하거나, MBC의 경우처럼 편성위원회가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공정방송협의회(공방협)'의 논의 결과를 수용하거나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보장성에 편성위원회의 운영을 긴밀히 결합시켜 놓았다.

이는 방송법이 편성규약을 제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그 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각 사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을 예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이라고만 해놓아서 실무자의 자율성 침해가 발생한 사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기제나 강제적 수단을 명시적으로 규정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사 단체협약에 연결시켜 협상력을 갖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2) 단체협약에 결부된 편성위원회의 무력화

법적 강제력을 갖기 위해 단협과 연결시킨 편성위원회 운영은 단협 존중이라는 건강한 노사문화를 수용하는 경영진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1) MBC: 단협 일방 해지 선언 후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공방협

하지만 MBC의 김재철 사장과 그 뒤를 잇는 사장들이 보인 노조 무시, 파괴 행태가 진행되면서 방송법상이 보장한 편성 자율성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MBC는 김재철 사장이 2011년 1월 14일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무단협 상태이다. 단협에 있는 '공정방송' 조항이나 공방협이 원활히 기능하는 동안에는 실무자 대표성의 위상을 갖는 편성위원회가 굳이 열릴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무단협 상태에 이른 지금에는 편성위원회가 유일한 통로다. 그런데 실행력이 높은 공방협에 의존했던 MBC는 편성위원회를 연 적이 없고 지금도 열리지 않고 있다. 편성위원회가 책임자들과 함께 소통하는 구조가 아니라 개최의 의미가 반감하기 때문이다. 사측은 단협 체결을 위한 단체 교섭 자체를 거부하여, MBC 구성원이 편성 자율성 보장 요구를 해볼 기회조차 박탈해왔다.

(2) KBS: 구속력 있는 공방위는 형식적 대응, 부문별 편성위원회는 무시

MBC의 사례를 참조했는지 KBS도 사측이 단협을 위한 단체교섭에 적극 나서지 않아서 2016년 12월 14일 이후 무단협 상태에 돌입했다. 사측은 단체교섭 대신 방송편성규약을 개정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를 제안해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면서도 이 회의가 단체 교섭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즉 단협의 무력화라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것이다. 법적 강제성이 있는 단협보다는, 힘의 우위를 이용해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편성규약을 개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KBS에서는 무단협 상태인 지금까지도 노사 단체협약을 근거로 운영하는 공정방송위원회는 매달 한 차례 꼴로 열린 편이다. 하지만 실제 불공정방송 행위를 한 사측에 책임을 묻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었다. 공방위 개최의 목적은 노사 간 불공정 방송 사례의 문제를 노사가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에 합의하는 데 있다. 그러나 고대영 사장 취임 뒤 열린 공방위 14차례 가운데 이 같은 합의에 이른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의례적 개최로 책임만 면하려 할 뿐이었다.
오히려 공방위는 노측이 제기하는 불공정 방송의 문제점을 사측이 해명하고 부인하고 반박하는 자리로 이용되고 있다. 예로서 2017년 5월 17일 열린 269차 정례공방위의 경우 '검증 없는 의혹 받아쓰기 대선 보도 건', '호전적 북한 보도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사측은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방의 양이 문재인 아들 특혜 의혹 집중됐기 때문이었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북한 관련) 취재역량이 타사보다 나은 위치에 있고 취재도 열심히 해서 얻어진 새로운 사실이 많아 보도량이 많았다' 등의 주장을 펼쳤을 뿐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것은 부문별 편성위원회다. 방송편성규약의 요체는 방송 보도와 제작 실무자들의 자율성 보장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관철시킬 본부별 편성위원회는 고대영 사장 시절 보도위원회와 TV 편성위원회가 각 한 차례씩 열렸을 뿐이다.
보도 실무자들의 대표인 KBS 기자협회장과 책임자 대표인 보도본부장이 논의할 수 있는 보도위원회의 경우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 2016년 5월 16일 단 한 차례 개최된 것을 제외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실무자측인 기자협회장은 편성규약 시행세칙에 의거해 월 1회 정례 보도위원회 개최를 매달 요구해 왔고, 보도 자율성을 둘러싼 긴급 현안을 논의할 임시 보도위원회 개최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책임자 측인 보도본부장은 번번이 일방적으로 이를 묵살했다.
언론노조 KBS본부 교양기제 중앙위원이 실무자 대표이고 제작본부장이 책임자 대표인 TV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대영 사장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던 TV위원회는 KBS 스페셜 '광장의 기억'(가제) 불방 사태를 계기로 처음 개최됐다. 그나마도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TV위원회 개최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열리게 된 것으로, 이전에는 책임자 대표 측이 거부해왔다. 편성규약상의 또 다른 한 축인 라디오위원회는 아예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법적 효력을 갖는 단협 상의 공정방송위(편성규약 상 편성위원회)는 마지못해 열지만 해결을 위한 협상 노력은 전무 했고 부문별 편성위원회는 사실 상 무응대하는 것이 사측의 태도였다. 이런 방식으로 공영방송 실무자들이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 사이 '공영방송' KBS는 각종 조사에서 영향력, 신뢰도가 계속 하락했다. <시사저널>의 각계

전문가 집단 조사에서 JTBC에 1위 자리를 내주었으며, <시사인>의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JTBC에 1위를 내주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언론학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는 2011년부터 3위에 미치지도 못하더니 2016년에는 순위 표시에서도 사라졌다. '자체 조사'인 PSI에서는 1위를 유지했지만 그 수치는 계속 하락세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공공저널리즘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4조를 개정하여 편성규약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고 편성위원회의 기능과 권한도 구체화 하며, 각 조항의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37], ① 편성규약 안에 '방송사업자와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들로 구성하는 공정보도위원회의 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율심의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을 포함할 것을 명시토록 한다. 만약 상정된 안건을 둘러싸고 노사간 견해차가 조정되기 어려울 경우 제 3의 외부 기구(예로서 시청자위원회 같은)가 이를 논의하도록 하는 실효적 장치를 포함한다. ②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는 인사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편성위원회로 하여금 '보도·제작·편성 분야의 간부의 임면제도'를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 한 가지, 중간평가제·소환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편성위원회가 편성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③ 취재 제작 책임자들이 편성규약이 보장한 취재 제작 자율성을 침해할 경우 이를 조사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절차를 포함한다. ④ 형식적 운영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위원회의 구성·운영의 과정과 결과를 사안별로 즉시 사내에 공개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대외 공표하도록 하는 것 등도 방송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3. 편성자율성 침해사례

<표 4-1. 2008년 이후 3사 해고, 징계자 현황> (단위: 명)

징계 종류	MBC	KBS	YTN
해고	8		6
정직	79	15	26
출근 정지	1		

37 민주언론시민연합(2017). 2017 민언련이 제안하는 언론개혁 과제. 민주언론시민연합

징계 종류	MBC	KBS	YTN
감봉/감급	43	15	
근신	30		
견책		3	1
경고	1	100	17
주의각서	7		
대기발령	54		1
명령 휴직	3		
전체	223	133	51

* 출처: 언론노조, 2012년 12월 기준.

1) KBS 사례 - 고대영 사장 임기 중 사례를 중심으로

(1) 공정방송 요구의 징계

KBS의 경우 해고자는 없지만 각종 징계를 남발했다. 비록 경고가 많기는 하지만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사례도 33건에 이르렀다. 정연주 사장 불법 해임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었지만, 고대영 사장 시절 편집권을 침해한 대표적인 사례만 언급해보고자 한다. 고대영 사장은 사장 이전에도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 참사를 축소, 편파보도토록 한 점,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 조사를 경마식 황색 저널리즘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보도했고 장례식에서 추모 현장의 애도 분위기를 걷어내 비판을 사게 만든 점,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의혹 보도를 막은 점,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축소한 점 등에서 이미 오래 동안 비판을 받아 왔다.

· 공정방송 감시활동을 오히려 징계

KBS는 2016년 2월 19일 KBS 본부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 간사 정홍규에게 2심에서 6개월 감봉 징계 결정을 했다. 정홍규는 2015년 11월 14일 KBS 메인뉴스 <뉴스9> '민중총궐기 집회 교통체증-수험생 발 동동' 민중총궐기 관련 보도를 앞두고 취재기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 경위를 묻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공추위 간사로서 정당하고 일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 KBS 경영진은 단협이 정한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위원의 활동을 부인한 것으로 단협을 위반한 것이다.

2016년 7월 12일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무효 확인 결정을 했다. 민중총궐기 보도를 앞두고 취재기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취재 경위를 묻고 불공정 보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회사가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정홍규를 징계할 때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인 김준범도 함께 징계위에 회부되어 1심 견책 그리고 2심은 주의를 결정하였다. 김 기자는 불공정 보도가 의심되는 기사를 담당한 취재 기자에게 취재 배경을 묻고 기자가 전하는 어려움을 청취했다는 이유다.
김준범 기자의 경우 발단이 됐던 보도는 2016년 1월 20일 KBS 메인뉴스 '뉴스9'의 중계차 연결 코너 '청년 대한민국 현장을 가다, 대륙 전역 배송' 리포트였는데, 김 기자는 이 리포트 담당 기자에게 보도 배경 등을 묻고 어려움을 청취했다. 보도에 등장하는 중소기업의 선정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내부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중소기업 대표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청년특별위원 출신 이종식 씨였다고 한다.

이는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침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공정방송추진위원회와 편성위원회 중 보도위원회가 내부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해왔다는 점을 볼 때, 정당한 기구의 불공정방송 감시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혹이나 정 기자와 김 기자의 문의가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했다면 KBS 단체협약(제26조 ③,④,⑤)과 방송편성규약(제9조, 제14조)에 의거해 공방위나 편성위를 열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징계 여부를 추진했어야 마땅하다.

· 기자협회장 편집회의 발언 탄압

2015년 12월 16일 보도국 아침 편집회의에서 평기자 대표로 참석한 이병도 기자협회장은 '세월호 청문회 마지막 날인 만큼 마무리하는 보도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정지환 보도국장은 '아이템에 대한 기자협회장의 발언은 부장들에게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고, 따라서 편집권 침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자협회장이 '편집권을 존중한다, 참고해달라는 의견 개진일 뿐이다'라고 했지만 보도국장은 이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병도 기자의 의견 개진은 규정에 의거한 정당한 행위였지만 보도국 최고 책임자가 편집권 침해라며 압박을 한 것이다. 2001년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KBS 방송 편성 규약'은 '취재 및 제작 실무자는 편성·보도·제작상의 의사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권리를 갖는다.'(제6조(취재 및 제작 실무자의 자율성 보장) ②)고 규정하고 있으며, '편성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제15조(편성규약의 효력))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편성 규약'에 근거해 운영되는 보도본부 본부별 편성위원회인 '보도위원회 운영 세칙'은 '보도본부내 뉴스 기획/편집회의에 평기자 대표가 참여한다. 평기자 대표는 편집회의 이외에 뉴스 최종 편집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 시행세칙은 2004년 제정 당시 보도본부장과 기자협회장이 공식 서명한 규칙이다. 정당한 권리를 편집권 침해라고 압박한 보도국장 행동이 규정 위반이다.

· 사드 성주 '외부세력' 프레임 보도 강제와 역 징계

KBS 경영진은 2016년 11월 11일 이영섭 기자협회장(본사)과 노준철 전 전국기자협회장(지역), 이하늬 전 전국기자협회 대구경북지회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25일 '주의'조치로 마무리했다. 경영진이 특별감사를 요청하여 진행한 징계 절차의 마무리다. 비록 '주의'로 끝났지만 기자들의 자기검열을 유도하는 위축효과는 컸을 것이다. 기자들을 대표하는 협회장들의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이에 근거하여 징계하겠다고 나선 것이었기 때문이다.

징계 요구 사유는 노준철, 이하늬 기자의 경우 지난 7월 본사 보도 책임자들이 강압적으로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외부세력 개입 확인'을 리포트로 제작하라고 지시한 것에 항의하며 발표한 전국기자협회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 이영섭 기자협회장 역시 전국기자협회 성명서에 앞서 성주 시위 관련 '외부 세력 개입' 뉴스가 방송되기 전과 후 이 보도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한 글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는 게 징계 회부 사유였다. 현장을 취재한 기자들이 외부세력 개입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고 진실을 알렸지만 9시 뉴스 큐시트에 외부세력 개입 기사 발제를 올려놓고 계속 압박했다. 그리고 이에 정당하게 문제제기한 것이지만 징계 절차라는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이다.

· 고대영 사장 사드 보도지침성 발언 비판에 재갈 물리기

KBS 경영진은 2016년 10월 3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성재호 위원장을 징계에 회부했다. KBS본부 노조가 고대영 사장의 편집권 침해 사실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는 이유다.

고대영 사장은 7월11일 KBS 임원회의에서 김진수 해설위원의 사드 관련 논평이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KBS 뉴스의 방향과 맞지 않다"는 등 보도지침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원회의에 참석한 해설국장이 해설위원들에게 전한 내용이었다. 그리고 해설국장은 그보다 5개월 여전 내보낸 김영근 해설위원의 논평도 KBS의 뉴스 방향과 맞지 않다는 보도국 간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보도본부장이 관련 해설위원들을 해설위원실에서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할 거라고 전했다 한다.

MBC 해고자 해고무효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한 바와 같이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위 공정성의 보장요구는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이고 KBS의 단협을 고려할 때 성재호 위원장은 보도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라는 노조위원장으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를 특별감사하고 징계에 회부하여 노조의 정당한 행사를 위축시키고자 했다.

·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보도 지시 항의 기자 징계: 송명훈, 서영민 기자 무효 판결

2016년 7월 29일, KBS 보도본부 문화부 팀장과 부장은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는데 평단에서 혹평하는 것은 문제라며 두 기자에게 '관객과 따로 가는 전문가 평점'(가제)이라는 아이템으로 취재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두 기자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한지 3일밖에 되지 않아 흥행 돌풍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뚜렷한 근거 없이 전문가 평점을

비판하고 특정 영화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도를 할 경우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가 발생하며, 결국 '인천상륙작전'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보도를 하게 된다는 이견을 제시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두 기자는 또 KBS기자협회 이영섭 협회장을 통해 KBS 방송편성규약 제6조 6항(부당한 상황의 경우 편성위원회 개최요구 건)에 따라 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2016년 8월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두 기자에게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부당한 홍보기사 작성의 지시는 방송법 4조 1, 2항에서 규정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것이며, 두 기자는 제작 실무자는 양심에 따라 자율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KBS 방송편성규약 6조 3항을 준수한 것이고, 팀장과 부장은 부당한 압력을 금지한 편성규약 5조 2항을 위반하고, 경영진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5조 4항을 위반한 것이다.

· 정연욱 기자 제주 발령

2016년 7월 13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기자협회보>에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 개입을 시도했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녹취록을 보도하지 못한 채 침묵하는 KBS 보도국 상황을 자조적으로 비판했다. KBS 경영진은15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정 기자를 제주방송총국으로 인사 발령 냈다. 사측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절차라고 했으나 지방순환 근무 기준에 따라 이미 지방 근무를 끝낸 정 기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고 글이 나간 지 이틀 만에 제주도로 발령을 낸 것은 분명 보복 조치였다.

실제로 발령이 논란을 야기하자 보도본부 국·부장단 31명이 집단 성명을 냈다. '무엇이 부당 인사입니까? 외부 매체에 황당한 논리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기고를 하고서 아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 아닙니까?'라는 내용이었다.

정 기자는 인사명령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1심 재판부는 2017년 3월 31일 인사 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인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들이 낸 해당 성명을 주된 입증자료로 지적했다. KBS는 항소를 포기하고, 2017년 4월 20일 정연욱 기자 인사 명령 취소와 함께 원직 복직시켰다. KBS의 구성원들이 KBS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보도에 문제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려는 시도였다.

(2) 보도·제작 프로그램 통제

· '친일과 훈장' 불방

KBS 탐사보도 기자들은 수년에 걸쳐 준비하여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훈장 수여의 본질을 다룬 '훈장' 2부작을 만들었다. 역사의 중요 순간에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미화되

고 정권의 훈장 수여로 그들의 가해 사실이 은폐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였다. 1부는 '간첩과 훈장' 2부는 '친일과 훈장'이었다. 하지만 간부진은 8개월 여 방송을 막았고 결국 2016년 2월 2일에서야 '간첩과 훈장'을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방송하였다. 그리고 '친일과 훈장'은 끝내 방송하지 못했다.

우여 곡절 끝에 1부만 방송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해가 있었다. 우선 방송날짜도 편성하지 않은 채 원고의 데스킹을 요구했다. 기획안은 그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제출했고, KBS는 방송날짜가 잡혀야 프로그램 편집용 원고를 제출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었다.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내용과 관련해서 특정 인물의 인터뷰를 모두 삭제하라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더군다나 1부가 방송되기 이전에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던 기자 둘을 의사와 무관하게 각각 보도국 라디오뉴스제작부와 디지털뉴스국 디지털뉴스부로 인사조치 했다. 또 훈장을 담당하던 팀장도 네트워크부로 발령을 냈다. 프로그램의 제작을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2부를 방송하지 못한 최문호 기자는 KBS에서 퇴사하여 뉴스타파로 옮겼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완 취재하여 훈장과 권력 4부작을 내보냈다. 그리고 이 4부작은 안종필 자유언론상, 가톨릭 매스컴 대상, 이달의 방송기자상 등의 수상을 이뤄냈다. 역설적인 것은 KBS경영진이 그렇게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KBS의 '훈장'이 한국기자협회에서 주는 한국 기자상에서 기획보도부문 수상을 했다는 사실이다.

· KBS 스페셜 '광장의 기억' 편성 보류: 정파적 유불리 판단

KBS에서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맞냐'며 취재보도를 막았던 정지환 보도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를 하자 적극적으로 취재해보라고 자세를 바꿨다. 미흡하지만 KBS가 국정농단과 탄핵에 관련하여 사실보도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을 맞이하여 광장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려던 피디들의 의지는 다시 한 번 꺾였다.

KBS PD협회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소극적으로 다뤄왔다는 문제의식에서 2016년 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현안을 제대로 다루는 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했다. 중간 간부들도 문제의식에 동의해 KBS 스페셜에서 2017년 2월 11일 '블랙리스트', 3월 11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방송했다. 그 다음 기획은 '광장의 기억'이었다. 제작과 편집을 마쳤지만 제작본부장 등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로 방송을 연기하자며 편성을 막았다. 취재 제작을 허락하지 않았냐는 항의에, 본부장은 PD가 '역사적 기록과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촬영을 요청'해 승인했던 사항이라 해명했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한 것도 아니고, 평화 집회로 대통령 탄핵을 이끈 광장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 특정 정파에 유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이었다.

당시 고대영 사장이 제작본부와 방송본부의 간부들에게 특정 프로그램들과 아이템을 직접 거론하며 '편향적'이라느니 '포퓰리즘'이니 '야당의 아젠다가 아니냐'고 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그렇다면 광장의 기억 불방 사건은 사장의 편성권 침해 사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편성 자율성 억압을 위한 조치들

· 기자협회 정상화 모임

2016년 총선 기간 동안 KBS는 과도한 북한 관련 보도 등 편파 보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언론노조는 총선미디어연대를 결성해 선거보도가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모니터 활동을 진행했다. 여기에 KBS 기자협회가 속한 방송기자연합회도 함께 했다. 한국기자협회의 기자협회보가 이 결과들을 포함하여 고대영 사장 이후 KBS가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기자협회정상화모임(국부장단과 평기자 포함 1차 111명, 2차 합계 129명)이라는 이름으로 비판성명서가 나왔다. 이 성명은 기자협회보 기사가 사실과 다른 '편향적인 기사'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협회 회원사(KBS)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최근 9시뉴스의 시청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고 국민과 멀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과연 객관적인가"라고 반박했다. 시청률이 1위이지만 계속해서 그 수치는 떨어지고 있으며, 영향력이나 신뢰도도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현실에 눈감은 주장인 것이다. 또 정상화모임은 총선미디어연대가 공정하지 못한 모니터 결과로 압박하고 있다며 방송기자연합회가 총선미디어연대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KBS 기자협회가 기자들에게 갑이고 상전처럼 행동한다고 비난했다. 기자협회의 정당한 공정보도 감시 활동을 위계질서 상 우위에 있는 간부들이 압력이라고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노동조합(언론노조)에 대한 사측 간부들의 집단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나 좌파로 모는 극우 언론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반박했다.

편집책임자로 있는 간부기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성명을 내서 후배 기자들을 협박 하는 '비정상적' 상황의 해소를 요구하는 이사들에게 고대영 사장은 사적 모임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기협 정상화 모임의 행동은 KBS 편성규약을 위배해서 기자들을 징계하고 프로그램을 불방시키는 등의 행위를 넘어서 공식적으로 권력 우위에 있는 간부들이 비공식적인 압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여 기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행위였으며, 사장은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엄중히 경고해야 할 사항을 방관함으로써 사실상 조장하였다.

· 라디오 이제원 국장의 정파적 행동

KBS 간부들이 자신들의 편파왜곡 행위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협박하는 상황은 일상에서 반복됐다. 라디오1프로덕션 이제원 국장은 2017년 5월 9일 저녁, 개표관련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에 갑자기 들어 와 부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될 정도로 편향된 지시를 내리려 해서 물의를 빚었다. 이 국장은 개표 방송 출연자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선거'라고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으며, "어떻게 국민들의 힘으로 물러나게 한 거냐?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고 흥분한 상태로 담당 PD에게 큰 소리를 질러댔다. 이 국장의 소란이 심해지자 기술 감독이 담당 국장에게 '조

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방송사 직원이 자신의 사적 불만을 가지고 생방송의 방송사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원 국장의 징계가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

이 국장은 이전에도 프로그램 PD가 고정 연사 후보 명단을 가져오자 "이들이 좌빨이 아닌 이유를 5가지씩 적어보라고"고 지시한다거나 극우적 성향의 특정 인사들을 패널로 섭외할 것을 지시하는 등 수차례 담당 PD의 편성 자율성을 침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조 헌법재판소'라며 반헌법적 사고를 드러냈으며, '5·18 항쟁 북한국 침투설' 등 가짜 뉴스를 링크하는 등의 행위로 제작 가이드라인 32장 소셜미디어 이용원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편성규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공정보도 감시 활동도 징계하는 경영진이 이제원 국장을 방치하는 이중 잣대는 곧 편성권이 규정이 아닌 인위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4) 출연자 통제

· 아침마당 선대인, 황교익 등 출연자 하차 사례

KBS 경영진 또는 간부들이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례가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출연진 또는 출연하기로 되어 있던 선대인과 황교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연을 정지당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2016년 9월 <아침마당>의 '고급정보열전'에 출연하고 있었다. 그는 9월 12일 방송에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가 제대로 규제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시청자 평가에서 3위를 하여 규칙에 따라 3회 동안 더 출연하는 것을 보장받았다. 하지만 13일 출연정지를 통보받았다. 제작진은 출연정지를 하게 된 경위를 처음에는 '윗선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라고 했다가, '방송 내용에 부정적인 내용이 KBS의 의견인 양 오해할 수 있다는 제작진의 판단'때문이라고 변명했다 한다. KBS 내부는 물론 외부 출연자라도 정부 비판적인 내용은 내보낼 수 없다는 뜻이다.

황교익은 <아침마당>에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녹화까지 했지만 2017년 1월 16일 방송출연 정지를 통보받았다. 문재인지지 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다. KBS는 '사실 상의 대선정국에 돌입한 현 시점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출연 시기를 잠정 연기해 줄 것을 권유'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는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고, 대선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KBS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이나 선거보도 세부준칙 등을 적용할 수 없는 시기였다.

KBS는 이 시기가 사실 상 대선 시기라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제작보도 가이드라인 중 선거보도 세부준칙 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보도 준칙>의 제 21조(후보자 인터뷰 및 출연) ②항 '선거기간 중 비정치 분야 취재를 하는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을 인터뷰하거나 방송에 출연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 제 21조 ③항은 선거기간 보도에 있어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캠프에서 공식 직책을

맡고 있거나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람이라도 선거와 관련성이 낮은 특정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인터뷰나 출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뷰나 출연이 선거 과정에 편향된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편향된 입장이 방송되지 않도록 방송 전에 주지시키도록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음식 전문가인 황교익은 선거 관련 발언이 아닌 음식과 관련하여 발언할 경우 심지어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출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황교익의 출연분은 녹화 방송이었다. 따라서 문제 발언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걸러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KBS는 '문재인' 지지 포럼에 참여한 황교익이라서 출연을 시키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송해의 방송 출연에 문제가 없었고, 당시 안희정 지사 지지를 선언한 홍석천의 프로그램 출연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정부를 비판하거나, 야권의 유력 주자와 관련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출연을 금지시킨 KBS의 행태는 결국 KBS가 정권의 대리인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5) 방송편성규약 개정 시도

다양한 사례에서 KBS 경영진은 방송편성규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경영진은 편성규약 위반으로 비판 받았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대영 사장은 방송편성규약을 개악하려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16년 5월에 알려진 개정 내용에는 본부별 편성위원회를 폐지하고, 편성위원회 사측 책임자도 실·국장급으로 낮추어 위상을 격하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편성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방송편성규약은 노사합의에 의해 제·개정된 것으로 15조에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회사와 조합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더군다나 16조에 '방송의 자유와 편성·보도·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과 관련해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의 '공정방송' 조항과 규정을 따른다.'고 하여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방송편성규약 개정은 없었지만 방송편성규약은 KBS가 방송법 4조가 규정한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서, 일방적인 방송편성규약 개정 기도 자체가 편성권 침해의 한 사례라 할 것이다.

2) MBC

MBC는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후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방협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취재 보도, 편성 제작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실 MBC는 편성 자율성을 언급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다. <표 1>과 같이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해고 8명을 비롯하여 무려 223명을 징계한 MBC의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일부 가시화된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이미 억압이 구조화된 MBC의 현실을 오히려 왜곡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편성자율성을 침해한 구체적인 몇 가지 탄압 사례를 언급한다.

(1) 편성권 침해의 결과

·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편성권 침해

편성의 자율성이 사라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공방협을 열수 없게 된 2011년 <PD수첩>에서 불방된 주제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2011년에 이렇게 불방된 사례가 있다는 것은 당시 PD 수첩의 PD들이 저널리즘 가치를 실현할 소재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MBC가 장악되기 이전 편성 자율성이 주어지던 시기에 내적 자유를 경험했던 PD 수첩 제작진들의 역량이 그나마 작용했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예 이런 불방 사례조차 찾기 힘든 상황으로 전락했다.

<표 4-2. 2011년 MBC PD 수첩 불방 사례>

2011년 MBC PD 수첩 불방 사례	· MB 무릎기도 파문 · 후쿠시마 원전과 국내 원전 · 한진중공업 사태 · 미군 고엽제 파문 · 4대강 공사현장 잇따른 사망 사고 등	· 남북경협 중단 1년 점검 · 대통령 국가조찬기도회 무릎기도 파문 · 한상대 검찰총장 의혹 점검 · 복수노조 시대, 삼성 노조 간부 해고 파문

· 풍자를 징계한 MBC: 안혜란 PD 정직 3개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사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참여 정부 시절 '노통장'과 같은 풍자를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KBS 개그콘서트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개그는 몇 번 나오다가 사라져 버렸다. 그런 상황에서 풍자로 인기를 누리던 프로그램은 MBC 라디오 '최양략의 재미있는 라디오'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2013년 진행자 최양락과 배칠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를 통해 'MB님과 함께하는 대충 노래교실'이라는 풍자코너를 진행했다. 이 코너에서 2013년 4월 1일에는 비리로 인해 퇴진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 MBC는 5월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전 MBC 사장과 관련하여 확

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실을 전달하여 방송 강령과 방송제작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당시 연출을 맡았던 안혜란 PD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고, 안 PD의 재심 청구에도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하였다.
안 PD는 징계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안 PD 승소, 2심은 사측의 항고 기각, 그리고 대법원이 2015년 5월 11일 2심 결과를 확정하여 징계 무효가 됐다.

(2) 공정방송 요구를 징계로 응답

· MBC 대신 참회한 권성민 PD, 해고로 보답한 MBC

2015년 예능 PD인 권성민은 자신의 처지를 만화로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대법원에서 해고 무효 확정). 권 PD는 2014년 5월 세월호 보도 참사를 일으킨 MBC를 대신해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 MBC 경영진은 이 글을 문제 삼아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권성민 PD는 정직 기간 동안 풍자성 웹툰을 그렸고, 그 중의 하나로 자신의 처지를 유배로 비유하는 웹툰을 올렸다. MBC 경영진은 또 이 일을 문제 삼아 해고라는 극형을 가했다.
권성민 PD는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권 PD가 그린 웹툰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은 MBC 사측이 상고한 것에 대해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MBC의 권성민 PD 해고가 논할 가치조차 없는 부당한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두 사례처럼 편성의 자율성이나 개인의 의사를 짓밟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해도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는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김재철 사장이 일방적으로 단협을 해지한 이후 새로운 단협은 체결되지 않았고, 단협에 근거한 공방협은 열리지 않았다. 공방협은 이런 행위들을 조율할 수 있는 편성위를 대리하는 기구지만 단협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측이 전혀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치지 않는 인사 보복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가 있던 2017년 3월 10일 MBC 사측은 7명(임채유·이근행·한학수·허태정·이정식 PD, 김수진·김민욱 기자)을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로 발령냈다. 이들 중 5명은 이미 부당전보로 현업에서 배제되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이근행 PD는 2010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김재철 전 사장 선임에 반발해 파업을 이끌다 해고된 인물이다. MBC 경영진은 2012년 12월 24일 부당해고 했던 이근행, 정대균 2 인을 해직 무효의 방식이 아닌 특별채용 형식으로 복직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 둘은 노조와 논의한 끝에 노조 전임자로 일할 것을 전제로 특별채용을 수용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현업에서는 배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학수 PD도 2012년 파업 직후 부당전보·대기발령·신천 교육대(신천동에 위치한 MBC아카데미) 등을 거쳐 2014년 신사업개발센터에 가서 현업에서 이미 배제돼 있었던 상태였다. 김

수진·김민욱 기자는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동료들과 함께 피케팅과 1인 시위, '제대로 뉴스데스크' 제작 활동 등에 참여한 후 대기발령-신천 교육대-경인지사 등을 거쳐 현업과 무관한 부서에 4년째 배치되어 있었다. 전술한 안혜란 PD도 현장에서 배제되어 심의국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들의 사례는 원직에서 배제되어 직종과 무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기자 PD들의 대표사례일 뿐이다.

· 소송에서 확인되고 있는 부당 징계들

MBC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223명이 징계를 받고 회사에서 쫓겨나거나 현장에서 배제됐다. 이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음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사측이 지고 있는 현실이 반증하고 있다. 현재까지 회사로 돌아오고 있지 않은 MBC 해고자 6명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재판이 장기간 계류 중이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재형)는 2017년 4월 14일 MBC 기자·피디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 소송'에서 회사 쪽의 상고를 기각했다[38]. 기자·피디들이 승소한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승소한 이들은 '황우석 사건'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인 한학수 피디, <피디수첩> '광우병 편'을 만든 이춘근 피디를 비롯한 피디 6명과 임대근·이정은·박종욱 기자 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2014년 10월31일과 11월17일 MBC의 대규모 조직개편 때 본래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곳으로 보내졌다.

당시 MBC 쪽은 "경영 위기를 돌파할 조직개편으로 업무상 수익성·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처"이며 "직종을 특정해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변경은 인사이동에서 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안팎에선 부당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1·2심 재판부도 기자와 피디로 오랜 경력을 가진 원고들이 전보 발령으로 기자 피디로서 경력이 단절되고 능력과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받아 불이익이 매우 크며, MBC가 기자와 피디들을 신규로 채용하면서도 해당 사원들을 경인지사 등에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규정이 정한 전보의 원칙과 맞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부당한 보복조치였다는 것이다.

부당한 보복 조치로 자율성을 위축 시키거나, 뜻 있고 전문성을 가진 MBC 기자 피디의 현장 배제를 통해 공정한 보도, 공공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 MBC의 현실이다.

38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790785.html

2부

언론장악 일지

1. 방송장악 조직적 추진

1) 대통령직 인수위 언론계 성향 조사 문건 (2008. 1)

2008.1.12.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론사 간부들과 산하기관 단체장,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광고주나 산하 단체장에 대한 광범위한 성향 조사를 했다는 경향 신문 첫 보도.

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 (2008. 3)

2017.3.26. - 이명박 대통령, 언론 단체 반발에도 불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강행

3) 신재민 문체부 차관 언론통제 위한 '국정홍보회의' (2008. 5)

2008.5.9.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주재로 국정홍보회의 열림
- 경향신문, '쇠고기 파문 보도에 대한 언론들의 논조와 이에 대한 대응책이 논의됐다'는 내용과 '쇠고기 파문을 비판적으로 다룬 언론들에게 정부 광고 배정 등에서 차별적 대응을 검토토록 지시'기사 보도

2. 낙하산 사장 임명

1) KBS 장악

(1) 권력기관 앞세워 KBS 정연주 사장 강제 해임

가. 사퇴 압박 (2008.3)

2008.1.4. ~ 3.13. - 한나라당 강성만 부대변인, 심재철 원내 수석부대표 등이 KBS 정연주 사장의 신년사를 두고 원색적 비난, 사퇴 종용하는 압박
- 안상수 원내대표도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사람들은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을 받든지 아니면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퇴 압박

2008.4.11. - KBS 노조, 수신료 인상 실패,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정연주 사장의 사퇴를 주장

2008.5.12.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나.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2008.5.14. - KBS 전 간부를 내세워 'KBS와 국세청 간의 법인세 소송에서 자의적인 소송 취하로 287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배임혐의로 고발

2008.8.12. - 검찰, 정연주 사장 긴급체포

2009.08.18. - 서울중앙지법 배임혐의 무죄 판결

2012.01.12. - 대법원 배임혐의 무죄 확정

다. 감사원 동원한 KBS 특별감사 결정 (2008.5)

▶ 정연주 사장을 해임하고 KBS를 장악하기 위해 보수단체를 앞세운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2008. 5. 15. - 보수성향 단체(뉴라이트 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KBS MBC 정상화운동본부)들은 KBS의 적자누적 등의 방만 경영, 인사특채, 광우병 문제 등의 편파방송을 주장하며 KBS 특별감사 청구

2008.5.21. - 감사원, KBS 특별 감사청구 수용

라. KBS이사회 장악

① 김금수 이사장 사임

2008.5.12. - 최시중 방통위원장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 사퇴 압박

2008.5.21. - 김금수 KBS 이사장 사의 표명

②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2008.7.1) 및 KBS 이사 해임 (2008.7.18)

▶ 신태섭 교수의 교수직 해임은 정연주 사장 해임을 반대하던 KBS 이사직을 해임하고 이사회를 장악하기 위한 빌미를 찾으려는 꼼수

2008.3.21. - 동의대학교 총장과 부총장, 신태섭 교수에게 학교를 위해 KBS 이사직을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 5.15까지 8차례에 걸쳐 회유와 압박.

2008.5.31. - 신태섭 교수가 거듭된 자진사퇴 요구에 불응하자 동의대학교 이사회는 5월 31일 징계위를 열어 7월 1일자로 교수직 해임을 의결. (동의대 측은 총장의 승인 없이 KBS 이사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삼았으나 신 교수는 교육 업적 보고서에 이사 활동도 점수로 인정받았다며 반박, 해임 통보 취소 소송 제기)

- 이명박 정부가 동의대에 신 교수를 해임하지 않으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를 실시하겠다며 압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남

~2008.6.24. - 언론현업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시민단체와 동의대 총학생회에서 신 교수의 부당한 해임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KBS 장악시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냄, 동의대에는 해임 철회 요구

2008.7.18. - 방통위, 긴급안건으로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의 건'을 상정, 의결하면서 신태섭 KBS 이사 해임 확정(동의대에서 교수직이 해임되었으므로 KBS 이사 자격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고 억지 주장하며 KBS 이사직 해임,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대통령에게 보궐이사로 추천)

2009.1.16. - 부산지법에서 교수 해임 무효 소송 승소

2009.6.5. - 행정법원,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에 따른 대통령의 KBS 보궐이사 선임이 위법하다고 판결.

2009.11.17. - 대법원, 동의대의 신태섭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는 원심 확정 판결.

2009.12.10. - 신태섭 교수 동의대 복직 통보

2010.4.23. - 고법, KBS 이사임기가 만료되어 이사직 복귀가 불가하므로 원고에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보궐이사 선임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 상고심을 각하

마. KBS 정연주 사장 해임 (2008.8)

2008.8.5. - 감사원,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연주 사장에게 4차례에 걸쳐 출석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

- 누적 적자, 방만 경영, 코드 인사 전횡, 법인세 환급 소송 취하에 따른 KBS의 손실 등을 이유로 경영책임자로서의 자격 없다고 판단, KBS 이사회에 해임 권고안 전달

2008.8.6. - 정연주 사장,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반박,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 현행 방송법에는 KBS 사장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없음을 강조

2008.8.8. -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 해임 결의안 의결
- 소수 이사들이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며 퇴장해 표결에는 6명의 이사만 참여
- 정연주 사장 변호인단, 해임제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

2008.8.20. - 서울행정법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임 처분 정지시켜달라는 정연주의 신청 기각, 정연주 항고

2008.8.22. - 별도로 진행된 재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도 "현행법상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며 정연주가 제기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2008.9.5. -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도 "이유 없다" 며 기각

2008.8.11. - 이명박 대통령,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정연주 사장 해임 제청안에 서명
- 대통령의 해임권 논란과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권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법리적 논쟁 정리가 된 사안이라 밝힘
-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명박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민주주의를 다시 배우고 있다는 비판이 실린 논평을 냄
- 방송장악·네티즌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이명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탄핵소추 사유로 충분하다 주장
- 정연주 사장, 입장 발표문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뿌리째 흔들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비난

2009.11.12. - 정연주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 행정 13부는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 정연주 승소 판결

2012.1.12. - 정연주 해임의 주된 사유였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에 대해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

2012.2.23. - 해임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해임처분 취소 판결 확정

바. KBS에 경찰 난입

2008.8.8. - 수천 명의 경찰과 1백여 대에 이르는 경찰 버스로 KBS 포위. 사복 경찰이 KBS 건물 안으로 난입. KBS 구성원들을 물리력으로 진압.

(2) 청부사장 이병순 체제 출범

2008.8.26. - 이병순 'KBS 사장' 임명.
: 8월 5일 감사원이 KBS 이사회에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을 요구, 8월 8일

해임제청, 8월11일 해임에 이어 3일 만에 KBS 이사회는 사장 모집 공고를 냈고, 다시 3일 뒤인 17일 최시중, 이동관, 유재천씨 등은 밀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김인규 카드'를 대신할 인물을 논의. 이로부터 4일 뒤인 21일 KBS 이사회는 사장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고, 25일 이병순 씨를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 KBS를 장악하기 위한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한 작전을 펼쳤고 기자와 PD들로 구성된 사원행동은 권력이 준 장악의 임무를 맡은 청부 사장으로 규정.

(3) 대통령 언론 특보출신 김인규 사장 취임 (2009.11.24.)

▶ 사장추천위원회의 요식적 절차를 거쳐 2009년 11월 19일 KBS 이사회는 야당 추천 이사들이 기권한 상태에서 김 씨를 사장 후보로 결정하여 사장 제청(전임자의 잔여임기만 채운 임시 사장체제는 물러가고 대통령 직계에 의한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짐)

.

(4) 청와대, KBS 고대영 사장 선입 개입 의혹 및 임명 (2015.11)

2015.10.27. - KBS 이사회가 고대영 KBS 비즈니스 사장을 KBS 차기 사장 후보자로 선출(고대영은 보도국장 시절 기자협회 신임투표에서 93.5%의 불신임을, 보도본부장 재직 시절 84.4%의 불신임을 받아 해임된 인사)

2015.11.13. - KBS 사장 후보에 지원했던 강동순 전 KBS감사가 청와대가 KBS 사장 후보 선임에 개입했음을 폭로.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KBS 이인호 이사장과 이사에게 전화를 걸어 KBS 사장 후보로 선임된 고대영 전 보도본부장을 '청와대 지명 후보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고 함. 또한 "지금 절차상으로는 이사회 거쳐서 청문회 거쳐서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하게 돼 있지만 이건 형식 논리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7표(여당 추천 이사)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덧붙임

2015.11.24. - 고대영후보자 KBS사장으로 취임

2) YTN 장악

(1) 사추위 구본홍 사장 임명 (2008.5)

2008.5.28. - YTN 사장추천위, 구본홍 고려대 석좌교수를 차기 사장 후보로 추천

- 구본홍 교수는 MBC 보도본부장 출신으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명박을 지지해 왔으며 대선에서는 이명박 캠프의 언론 특보를 지낸 경력 있음
- YTN노조는 구본홍을 사장 부적격 인물로 지목, 이에 대응할 것이라 밝힘

2008.5.29. - YTN 이사회, 구본홍을 사장으로 결정, 노조가 반발할 것을 알게 되자 급히 회의 장소 변경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 시민단체에서 구 사장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2) 배석규 사장 임명 개입 정황

2009.8.25.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 1팀이 작성한 2009년 8월 25일자 '1팀 사건 진행 상황' 문건에는 'BH하명'으로 분류된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사건 입수일이 2009년 7월27일로 돼 있고 처리결과는 '진행중'으로 되어 있었음

2009.9.3. -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배 사장에 대해 "신임 대표이사(실제로는 대표이사겸 사장 직무대행)로 취임한 지 1개월여 만에 노조의 경영 개입 차단, 좌편향 방송 시정 조치를 단행했다"며 "노조와 회사 양쪽을 기웃거린 간부들은 강력히 경고해 태도를 시정케 하는 한편, 친노조·좌편향 경영·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했다고 표현
-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우수한 경영능력 보유자임에도 전 정부 때 차별을 받아 온 자로서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과 YTN의 개혁에 몸을 바칠 각오가 돋보인다"고 평가
-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

2009.10.9. - YTN 이사회 배석규 사장 직무대행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

3) MBC 장악

(1) 김재철 사장 선임 (2010.2)

2010.2.16.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임시 이사회 개최, 김재철

청주 MBC 사장, 차기 사장으로 내정
- 김재철 사장은 정치부 기자 시절 이명박과 연을 맺은 뒤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옴. 2008년 사장 공모에 응시했을 당시 공공연히 한나라당 행사에 참여

(2) 방문진 이사장 MBC 장악 '고백' 발언 (2010.3)

2010.3.17.
-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신동아 인터뷰 논란
- 신동아에 <"김재철 사장, '큰 집'에 불려가 조인트 맞고 깨진 뒤 좌파 정리했다"> 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 게재
- "MBC 내의 좌빨 80% 척결했다."는 표현도 등장
- 지난 8일 관계사(19개 지역 MBC자회사) 인선과 관련, "대학살이 시작됐다"며 권력 기관의 인선 개입 시사
- "이번 인사는 김재철 사장(혼자 한) 인사가 아니다"며 "큰집도 (김 사장을) 불러다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라고 밝힘
- '큰집'과 관련, "만났다는 걸 확정적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만 해야 한다" 며 구체적인 대상 숨김
- MBC의 현실에 대해 "MBC가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좌편향된 지 10년이 넘었다. 하이라이트는 PD 수첩" 주장

2010.3.18.
-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언론노조 등에서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 비판, 김우룡 이사장, 김재철 사장 사퇴 촉구'

2010.3.19.
- 김우룡 이사장 사퇴
- 임시이사회 도중 다른 이사들이 김 이사장의 거취를 논의하기 위해 중도에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퇴장한 뒤 사퇴서를 방문진 사무처에 전달

(3) 김재철 아바타 안광한 MBC 사장 취임 (2014.2)

▶ 김재철의 최측근으로, 편성본부장 시절 시사 프로그램인 '후플러스'를 폐지하고 '<PD수첩>-4대강 수심 6미터의 비밀' 편의 불방 사태를 야기하는 등 제작 자율성을 침해한 전력. 2012년에는 인사위원장을 맡아 MBC 파업에 참여한 후배들에게 무더기 보복 인사를 자행한 인물로 비판 받음

▶ MBC를 권력의 방송으로 만든 정권의 공신

(4) 방문진, MBC 언론장악 청부 사장 선임 (2017.2)

2017.2.23.
-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MBC보도본부장을 사장으로 내정

- 정부 비판 보도에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며 '뉴스데스크' 시청률 하락의 책임자로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음. 김 본부장은 파업 당시 정부의 낙하산 사장으로 지목된 김재철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서, 보도 제작 아이템을 두고 기자들과 마찰을 빚는 등 파업의 단초를 제공

2017.2.27. - MBC 김장겸 사장이 취임 후 첫 인사를 단행.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박성제 기자, 최승호 PD를 '증거없이 해고'했다고 밝힌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영전. 안광한 체제에서 보직을 맡았던 인사들이 대부분 본부장급으로 승진

3. 보도 및 프로그램 통제

1)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국민일보 외압 (2008.5)

2008.4.29. - 국민일보노조가 '온라인 노보'를 통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의혹이 실린 기사를 외압에 의해 보도하지 않았다 폭로함(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일보 고위 간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기사 보도를 막았다 함.)

2008.4.30. - 언론개혁시민연대, 이동관 대변인이 국민일보 외에 다른 신문, 방송 편집장들에게도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사 쓰지 말라는 압력 넣었다 주장

2008.5.9. - 국민일보노조, 편집국장 사퇴 요구

※변재윤 편집국장은 외압 논란에 대해 외압이 아니라 친한 친구 사이라 덮어준 것이라 변명, 더욱 논란을 부추김

2008.6.20. -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전원 교체하기로 했으나 이동관 대변인만 유임된 것에 대해 야권이 "이동관 뒤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 는 의문 제기

2) 검찰 'MBC <PD수첩> 광우병 쇠고기 보도' 수사 (2008.6)

▶ 2008년

2008.4.29. -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2008.5.6. - 농수산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PD수첩> '편집·방영'에 반론·정정보도 신청

2008.5.9. - 청와대,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명예훼손 고소

2008.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2008.5.15. - 언론중재위원회,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 보도 직권결정

2008.6.20. - 농림수산식품부, <PD수첩>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

2008.7.11. - <PD수첩> 제작진 김보슬, 이춘근 PD와 작가 2명 총 4명에게 17일 오후 2시 출석 통보

2008.7.14. - 농수산식품부, <PD수첩> 해명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제 요청 / 검찰, 해명 보도 부적절 입장 표명

2008.7.15. - MBC, <PD수첩> '오역 실수' 반론보도 / 남부지법, 농식품부와 <PD수첩> 첫 공판

2008.7.29. -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PD수첩>에 서면질의서 발송 배경 및 이유 설명

2008.7.30.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반박 기자회견

2008.7.31. -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농림식품수산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광우병 보도' 일부분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판결

2008.8.1. - <PD수첩> 측,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비판

2008.8.18. - 검찰, <PD수첩> 제작진에게 최종 소환 통보

▶ 2009년

2009.1.7. - <PD수첩> 전담수사팀 팀장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표 제출

2009.2.3. - 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사건 재배당

2009.3.25. - PD진 검찰 소환 불응 / 검찰, 이춘근 PD 긴급체포

2009.4.15. - 검찰, 결혼 나흘 앞둔 김보슬 PD체포

2009.4.22. - 검찰, MBC본사 압수수색 및 제작진 체포영장 집행 두 번째 시도…직원들과 본관 앞에서 대치 뒤 철수

2009.4.27. - 검찰, 조능희 전 CP(책임프로듀서), 송일준 PD, 김은희·이연희 작가 등 제작진 4명 체포

2009.6.18. - 수사결과발표, PD와 작가 등 제작진 일부 기소 방침

2009.12.21. - 검찰,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 2010년

2010.1.20. -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PD수첩>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 검찰, 항소장 제출

2010.10.28. - 검찰, 항소심 결심공판서 <PD수첩> 제작진에 징역 2~3년 구형

2010.12.2.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제작진 전원 무죄 선고

▶ 2011년

2011.9.2.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 MBC 패소 부분 중 일부 파기, 서울고법으로 환송

-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검사 상고 기각해 <PD수첩> 제작진 무죄 확정

3) 법원은 징계 무효 판결 그러나 MBC <PD수첩> 제작진 중징계 (2014.4)

2011.9.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2008년 4월 방영)의 제작진인 조·김 PD에게 정직 3개월, 송·이 PD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림

- 제작진은 곧바로 징계무효 소송을 냈고, 사쪽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징계를 취소

2014.1. -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일부 보도가 허위지만(허위 보도가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제작진이 고의로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함. 특히 재판부는 "사쪽이 지난 10여년간 허위·왜곡보도가 문제된 방송의 제작자들에게 '감봉 2개월' 이상 처분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봐서도, (정직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지적

2014.4.7. - 이후 MBC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책임PD였던 조능희·김보슬 PD에게는 정직 1개월, 진행자인 송일준·이춘근 PD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림

2015.7.16. -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조능희 PD 등 당시 광우병 관련 내용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무효로 확인, 원고 승소 판결

4) 방통심의위 MBC <PD수첩> 중징계 (2008.7)

2008.7.16. - 방송통신심의위원회,<PD수첩> 심의 결과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 의결

5) KBS 2009년 가을 개편에서 비판 프로그램 폐지 (2009.11)

▶ TV 및 라디오 가을 개편에서 <미디어 포커스>와 <생방송 시사투나잇>의 명칭과 방송 시간대를 변경

<미디어 포커스>는 <미디어 비평>으로 바꿔 금요일 밤 11시30분부터 30분간 방송하고, <생방송 시사투나잇>은 <시사터치 오늘>로 명칭을 바꿔 월~목요일 밤 12시15분~12시45분 방송. 명칭, 시간대 변경과 함께 제작진도 교체하여 비판성 거세(그동안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세력은 <미디어 포커스>와 <생방송 시사투나잇>을 '좌파방송', '코드방송'으로 비난)

▶ 시사 교양 프로그램 <특파원 현장보고>, <아시아 투데이>, <아시아의 창>, <한국사 전>도 제작비 문제를 들어 폐지

▶ <생방송 심야토론>, <생방송 열린토론>의 진행자인 시사평론가 정관용 씨와 <윤도현의 러브레터> 진행자인 가수 윤도현 씨도 교체

6) 방통심의위 'YTN 블랙투쟁'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결정 (2008.11)

2008.10.8. - YTN의 앵커, 기자, 기상캐스터들이 노조원 징계에 항의하는 의미로 검정색 옷을 입고 방송

2008.11.26. - 방통심의위 전체 회의, YTN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의결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때 감점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7) KBS 용산 참사 축소·편파 보도 (2009.1)

2009.1.20. - 용산참사 당일부터 20여일 동안 KBS는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
- 전국철거민연합을 사태의 원흉이자 폭력집단으로 줄기차게 매도
- 유족들은 KBS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고, 심지어 용산참사 추모 현장에선 KBS 기자라는 이유로 야유와 욕설을 들음
- 당시의 보도국장은 고대영

8) 방통심의위 MBC <뉴스데스크> 중징계 (2009.3)

2008.12.10. - <뉴스 후> '뉴스 업데이트' 코너는 케이블TV의 예를 들어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에 진출할 경우 우려되는 시청률 경쟁과 선정적 프로그램의 범람을 지적하고, 신문방송겸영 확대로 우려되는 여론독과점 현상 보도

2008.12.25. - MBC <뉴스데스크> 진행자 박혜진 앵커, 방송 마무리하며 "내일부터 파업에 참가한다. 방송법 내용은 물론 제대로 된 토론도 없는 절차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해해 달라" 발언

2009.3.4. - 방통심의위, "불법 파업을 일으킨 MBC노조의 주장을 지속적으로 대변해 질적·양적 균형이 과도하게 편향됐다" 라며 뉴스데스크에 '경고' 중징계
- '뉴스 후'와 '시사 매거진 2580'에도 최고수준 징계인 '시청자 사과'와 '경고' 징계 처분

9) KBS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2009.5)

2009.5.23.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 눈물과 오열로 뒤범벅이 된 추모 현장을 촬영한 화면을 최대한 걸러낸 무미건조한 보도로 국민의 강력한 비판과 원성을 삼

- KBS 기자들이 취재 현장에서 위협과 모욕을 당해 정상적인 취재를 거부당하고, 촬영기자들은 카메라에 붙은 KBS 로고를 검은 테이프로 가렸다가 아예 로고 자체를 떼고 촬영을 함. 취재기자 역시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뷰를 시도

10)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의혹 보도 승인 거부 (2009.7)

2009.7.13.
- 스폰서 논란이 일었던 천 내정자와 관련한 의혹을 입증하는 기사를 KBS 법조팀이 취재 작성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음. 큐시트에서도 빠져 방송이 무산.
-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천 내정자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천 내정자가 거액을 빌린 박모씨와 해외여행을 같이 다녀왔다는 것이었고, 천 내정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었음. KBS 취재기자는 복수의 취재원을 만났고 '크로스체크'를 통해 천 내정자 부부와 박씨 부부의 항공권이 같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됐고 이 신용카드는 천 내정자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 이는 천 내정자가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낼 중요한 특종
- 하지만 고대영 보도국장은 "(취재기자가) 들은 이야기일 뿐 증거가 없다, 증거(신용카드 전표)를 가져오라"며 해당 아이템을 불방

2009.7.14.
- 천 내정자가 사퇴해서 영향이 없는 시점에서야 뉴스9에서 해당 아이템을 방송.

11) 4대강 시리즈 방송 중단 (2009.9)

2009.9.14.
- KBS <뉴스9>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 연속 보도
- 시리즈 첫 보도가 나가기 직전인 이날 저녁, 제작 중이던 취재기자에게 KBS 출신인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전화. 아이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와 정부 측 반론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었던 것으로 알려짐

2009.9.18.
- 청와대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방송되던 '4대강 시리즈'의 마지막 편은 결국 불방. 내용은 '4대강 예산 어떻게 마련하나'라는 제목의 예산 문제를 다

룬 리포트
- 방송 예정일이던 18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구미를 방문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과제입니다"라고 역설한 날임. 4대강 시리즈 마지막 편이 불방 된 이날 <뉴스9>에서는 대신 '4대강 살리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리포트가 12번째 꼭지로 방송
- 당시 보도국장은 고대영

12) <PD수첩> '4대강'편 불방 (2010.8)

2010.8.17. - 오후 2시 40분
: 국토해양부,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을 폭로할 예정이었던 MBC <PD수첩>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 오후 11시
: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의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 주장
- 오후 6시 20분
: 서울남부지법, "기록만으로는 방송예정인 프로그램의 내용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고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송이 이뤄진다고 해서 신청인에게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 오후 8시 30분
: MBC 오행운 PD 트위터에 긴급 메시지, "김재철 사장이 오후 11시 방송 예정이었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보류 결정 내려", "우루과이라운드 다룬 방송이 불방 되어 제작거부까지 간 이래 20년 만의 상황"
: 김 사장, 프로그램 방송 전 미리 방송분을 보자고 요구했으나 제작진이 이를 거부, 방송 3시간여 전에 임원회의를 통해 방송보류 결정: 국토해양부에서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자 방송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나가기 전에 먼저 시사 지시
- 오후 11시 10분~18일 새벽 12시 25분
: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 대체 프로그램 방영

2010.8.18. - 야당,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네티즌 사이에도 거센 비판 여론 확산

- 정치권에서는 이미 임원회의 이전 외압에 의해 불방이 결정되었을 가능성 제기
- 30여개 시민단체, MBC 본사 앞에서 기자 회견 열고 <PD수첩> 방영 촉구

2010.8.23. - '4대강의 비밀' 24일 방송 확정
MBC 김태현 <PD수첩> 책임 프로듀서(CP), 제작본부장, 편성본부장, 시사교양국장 등이 함께 방송을 보고 문제없다 결론

2010.8.26. - '4대강의 비밀' 방영 이후 제작진과 국토부 사이 갈등
: 방송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라는 쪽에 주목, '수심 6M'는 배를 띄우기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
: 국토부는 전체 구간 1362km 가운데 수심이 6m인 구간은 전체의 26.5%인 361km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 4대강과 대운하는 무관 주장

13) '대통령과의 대화' 방송 3사 공동 생중계 압력 (2011.1)

2011.1.28. - 청와대,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이란 제목의 신년 대담을 새달 1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혀
- 지상파 3사는 당일(2월 1일) 오전 10시부터 90분 동안 생방송
-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청와대가 주도
- 지상파 3사는 청와대에 중계 시스템만 제공한 '들러리' 신세로 전락

2011.1.31.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 '방송사가 청와대의 하부조직인가'
- 3개 지상파 방송사에서 같은 시간에 똑같은 방송을 내보내는 건 전파낭비
-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이라는 방송 독립의 가장 기본적 가치조차 무시하고 방송사를 청와대의 하부조직 정도로만 생각하는 청와대 비판
- 전국언론노조,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청와대 기획·연출, 지상파 3사 관제 중계방송'에 대한 중단을 요구

14) 김미화씨 등 KBS 블랙 리스트 폭로 (2010.7.6)와 블랙리스트 파문 (2011.2)

▶ 방송인 김미화씨가 자신이 KBS 출연을 못하도록 하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주장.

▶ KBS새노조는 4월 6일 성명을 통해 "어제 김인규 사장이 주재한 KBS 임원회의에서 '일부 프로그램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레이터가 잇따라 출연해 게이트키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 지적은 '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형태로 제작 현장으로 하달됐다"며 "4월 3일 방송된 <다큐멘터리 3일>의 내레이터를 맡은 김미화씨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밝힘

▶ KBS,사실무근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김미화 씨 고소

▶ 진중권씨는 저녁 'KBS 블랙리스트'와 관련, "하는 짓들 보면 저질도 저질들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긴데, KBS 'TV, 책을 말하다'의 높으신 분께서 진중권 나왔다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했다"며 "그래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했다가 영원히 못 뵙게 됐다"고 주장했다.

▶ 시사평론가 유창선씨도 이날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인 '유창선 닷컴'에 "지난 2009년 1월, 당시 고정출연 중이던 KBS 1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하차 통보를 받았다"며 "사유를 알 수 없는 위로부터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1.2.7.

- 8일 밤 방송예정인 <시사기획 KBS10> '국가인권위' 편에서 당초 윤도현씨가 내레이션을 맡기로 섭외됐음에도 KBS 제작책임자들이 완강히 반대해 결국 무산
- KBS는 윤씨가 '내레이터로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고, 시사프로그램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적이 없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가를 고집
- 하지만 윤도현씨는 KBS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한 적인 있는 베테랑 진행자였음
- 윤도현은 KBS 외에도 MBC SBS 등에서도 다수의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맡은 적이 있고, '탈북청소년 문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같은 시사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프로그램도 나레이션을 한 적이 있음

15)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 특종 무산 (2011.6)

2011.6.13.

- KBS는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소식을 먼저 취재. 그러나 보도국 간부들이 해당 보도를 막음.
- 해당 아이템을 편집회의에서 발제 한 후 리포트를 준비했지만, "김 전 비서관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며 보도국장의 지시로 불방. 하지만 다음날 SBS <8뉴스>가 관련 의혹을 '단독 보도'하자 KBS

는 해당 보도를 당일 <뉴스9>를 통해 그대로 내보냄.

- 새노조는 김인규 사장이 KBS가 작성한 원고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 새노조는 "SBS 보도 뒤 임창건 국장은 뉴스 후반부(30번째)에 있는 관련 리포트를 11번째로 끌어올렸으나 이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원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한국방송에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간부들 가운데 누군가가 원고내용을 귀띔해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라고 하며 내통과 외압 의혹 제기

16) KBS의 민주당 회의실 도청 사건 (2011.6)

2011.6.23. - 민주당 최고위원·문방위원 연석회의 비공개로 진행

2011.6.24.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연석회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공개

- 한선교 의원이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록, 녹취록"이라고 주장함.

2011.6.26. - 민주당은 '도청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며 영등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2011.6.30. -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한 관계자가 "KBS 기자가 비공개 회의 때 회의실인 당 대표실 주변을 서성이다 회의가 끝나자 당 대표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여럿 있다"며 "이런 내용을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2011.7.4.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4일 '민주당 대표실 불법도청 의혹' 사건 수사 결과, 내부 자료 유출 가능성은 거의 없고 외부에서 도청이 이뤄진 것으로 잠정 결론

-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들의 자료 내부 유출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했으며 민주당에서 쓰는 녹음기 외에 다른 녹음기를 이용한 외부 도청 가능성에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짐

- 또 민주당 대표실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대표실 문이 두꺼워 '회의실 귀대기' 방법으로는 회의 내용을 자세하게 엿들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음

2011.8.3. - 국회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KBS 장모(33) 기자가 도청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힘

- 경찰은 그동안 도청 당사자로 지목된 장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조사. 장 기자의 통화내역, 인터넷 메신저 기록, 신용카드 내역 등을 압수수색

- 장 기자가 6월 23일 민주당 최고위원 비공개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휴대전화로 도청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
-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분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나 KBS가 그 이전 경찰에 제출한 분실 보고서에는 '택시에 놓고 내렸다'고 기재돼 있었음. 하지만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직접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등을 놓고 내린 사실은 없었음
- 또한 장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국회 내 폐쇄회로TV(CCTV)에는 장 기자의 모습이 찍힘

2011.11.2.
- KBS 기자의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결국 무혐의 종결
-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KBS 장아무개 기자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 경찰은 4개월 이상 끌어온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부실,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음
- 경찰은 수사 착수 열흘 뒤에야 장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며, 국회 회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선교 의원을 소환조사 하지 않아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는 비난을 삼
- 당시 KBS 보도본부장은 고대영이었음

17) 프로그램의 풍자 내용을 이유로 안혜란 PD 징계한 MBC

2013.5.31.
- 2013년 4월 1일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비리로 퇴진한 김재철 전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 결정, 재심에서 3개월로 확정함.
- 안혜란 PD는 징계 무효소송을 제기해서 2015년 5월 11일 대법원에서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음.

18) KBS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 불방

2013.8.30. - 31일 방송예정이던 KBS 2TV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 결국 불방
- 29일 오후 6시 30분 경 31일 방송예정인 <추적60분>이 사전심의결과 방송보류판정
- KBS 심의실은 제작진에게 "이 사건이 1심만 판결이 끝났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사건이기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장 1절에 따라 방송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판정 이유를 밝힘
- 해당 규정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선 안 되며, 이와 관련된 심층취재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1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방송하는 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
- 언론노조 KBS본부는 "백운기 국장이 억지로 통진당 사건과 연결해 이 아이템을 결방시키려는 의도는 명백하다. 현재 통진당의 내란 음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원의 신뢰에 조금이라도 흠을 내지 않겠다는 정략적인 발상인 것이다."며 비판

2013.9.7. - 황우섭 심의실장 등 간부들이 방송 당일까지 <추적60분> 수정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결국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인터뷰 장면, '이석기 사태' 언급한 클로징 등이 삭제된 채 방송
- KBS 시사제작국은 6일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을 일부 수정해 방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방영

19) 방통심의위 <추적 60분> 중징계 (2013.11)

2013.10.2. - 3시부터 방통심의위 소위가 열려 <추적 60분> 국정원 간첩사건 무죄 편에 대한 방통심의위 징계 여부 논의

2013.11.21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9/7 방송, 연출 남진현PD)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 중인 사건 보도 제한)를 위반했다며 재허가시 감점대상인 '경고' 의결

2014.3.28. - 징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준비하던 KBS 법무팀은 갑자기 아무런 설명 없이 행정심판 추진을 포기. 그 결정은 언론노조 KBS본부의 확인 결과 법

무팀의 자체 판단이 아니라, 담당 국장이 행정 심판 제기에 대해 길환영 사장에게 보고했는데 길 사장이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함.

20) 세월호 오보와 MBC의 유가족 모독 보도 (2014.5)

2014.4.16.
- 11시1분 MBN과 MBC에서 "단원고 측 학생 모두 구조" 보도 → 오보
- YTN 채널 A 11시3분 경 학생 전원 구조 보도 이어 대부분의 언론 전원구조 보도 → 오보
- 11시 6분 단원고 교사 학부모에게 전원 구조 문자 발송과 함께 교육청 보고, 교육청 11시 9분 경 기자들에게 문자 발송
- KBS 11시26분10초(SBS 11시 19분 오보 정정보도했지만) 경기도교육청 대책반 "단원고 학생 전원 구조" → 오보
-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16일 정부는 아무런 구조 활동도 벌이지 않았으나 방송들은 이구동성으로 정부·관련부처·기관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도

2014.4.16.~4.17.
- 언론은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구조자 숫자를(전원 구조→161명→179명→368명→180명→164명→179명→174명→172명)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보도
- 사고 첫날 실제로 투입된 잠수사는 16명에 불과했지만, <육해공 총동원, 하늘과 바다서 입체적 구조작업>(KBS), <함정 23척, 병력 1천여 명 동원>(MBC), <해군 "가용 전력 모두 투입"', '장비·인원 총동원… 필사의 수색>(SBS)이라는 구조 당국의 말을 그대로 보도

2014.4.18.
- 11시 YTN은 '세월호 내부 진입 성공, 생존자 확인 중'이라고 보도. 그러나 실제 선내 첫 진입은 4시간 뒤인 오후 3시 38분
- KBS는 16:30분에 <엉켜있는 시신 다수 확인>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보도

2014.5.7.
- MBC <뉴스데스크>는 12번째 순서로 나온 데스크 리포트 <"분노와 슬픔을 넘어">에서 민간잠수사 이광욱씨의 죽음과 다이빙벨 실패를 다룸. 박상후 전국부장은 이날 "잠수가 불가능하다는 맹골수도에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라며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그를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

2014.8.25.
- MBC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 48일째였던 25일 "김 씨가 딸의 기저귀 한 번 갈아준 적 없으며", "이혼 후 10년간 누나가 혼자 애 둘을 키워

왔다"는 말을 보도하며 본질을 왜곡

2014.9.20. - MBC는 20일 뉴스데스크 5번째 소식으로 <'폭행 혐의' 세월호 유가족 전원 입건…경찰 대질조사 검토>라는 기사를 전달. 19일 오후 11시까지 경찰 조사를 받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만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고, 20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은 나머지 유가족 4명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MBC는 '유가족 전원 입건'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유가족을 공격

2015.1.6. - MBC 뉴스데스크는 배·보상 관련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소식을 전하며 "단원고 2학년 대입특례 합의"라는 제목으로 보도. 같은 날 TV조선 등의 타 방송들도 "세월호 배·보상법 합의"라며 '합의'를 강조했으나 MBC는 '대입특례'에 방점을 둠

21) 청와대, KBS 보도통제와 인사개입 (2014.5)

2014.5.7. - KBS 38~40기 막내기자들, 사내 보도정보시스템에 단체로 '반성하자'는 글 게재

2014.5.9. - 김시곤 전 보도국장, 긴급 기자회견서 사퇴의사 밝히고 '보도 독립성 침해' 주장하며 길환영 사장 동반 사퇴 촉구

2014.5.10. - 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 사퇴 촉구 및 보도 독립성 침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2014.5.12. - KBS, 백운기 신임 보도국장 임명

- KBS 노동조합, 기자회견 열고 백운기 보도국장 청와대 면접 의혹 제기

2014.5.16. - 김시곤 KBS 전 보도국장은 지난 16일 기자협회 긴급 총회에 참석해 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이 지속적으로 보도에 외압을 행사해온 사실을 폭로

- 그에 따르면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과 관련해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길환영 사장을 통해 거듭 지시를 내림. 지시당사자는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

2014.5.19. - 길환영 사장, 기자협회 총회와 기자회견 통해 사퇴 거부

2014.5.21. - KBS 길환영 사장이 오전 10시 사내방송을 통해 방송된 특별담화에서 사실상 '정면 돌파'를 선언. 청와대의 보도·인사 개입 의혹도 모두 부인하며 기자, PD 등의 제작거부와 파업투표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이자 "정치적 선동"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힘

2014.6.5. -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22) 박근혜 정권의 언론 소송 남발 (2013.11)

2013.10.4.
- 국민일보의 “진영 복지부 장관, 대통령 면담 요청 묵살 당하자 사퇴 결심” 이라는 특종 보도
- 청와대는 10월 17일 남부지법에 국민일보 상대로 정정보도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국민일보는 2014년 2월 5일 오보 인정 기사 내보냄. 국민일보노조, 소송으로 압박한 결과라고 비판함.

2013.10.24.
- 법무부 장관이 ‘삼성 떡값’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모두, 해당 언론사 뿐 아니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상대로 소송

2014.4.19.
- 한겨레는 19일 인터넷 한겨레 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진도체육관에서 쇼크상태였던 세월호 참사 생존자 권아무개양을 만난 것은 연출된 것일 수 있다는 의혹 제기.
-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등 4명 ,5월 12일 이 기사와 관련하여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명예훼손)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014년 12월 24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4명이 한겨레와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내림

2014.4.30.
- CBS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안산 분향소 방문 때 만난 조문객은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로 청와대가 연출한듯하다고 보도.
- 청와대는 5월 1일 김기춘 비서실장 명의로 CBS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 CBS는 정정 보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 보장 차원에서 반론을 실어줄 수 있다고 밝힘
- 5월 12일 청와대는 서울남부지법에 ‘CBS 노컷뉴스’의 “‘조문 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며,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4인이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청구

2014.5.
- 시사저널의 박지만 EG회장과 청와대 비서진이 갈등관계라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반론보도문 싣고 소 취하)

2014.12.
-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보도에 대해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 동아일보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윤회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

2015.9.7.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박근혜 정부 전반기 동안 국가기관 등이 시민·언론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소송 22건을 분석한 결과, 18건의 형사사건 중에서 현재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수사 중인 사건은 6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5건, 기소된 사건은 7건. 명예훼손죄 등으로 기소된 7건 중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는 1건이고, 1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5건은 현재 재판계속 중

23) 메르스 보도 통제 (2015.6)

2015.6.16. - <국민일보>는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대병원 방문 당시 병동 벽에 '살려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A4 용지가 붙은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설정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소개

- 직후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박현동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게 기사가 되느냐"고 항의
- 6월 19일 '메르스, 최고의 백신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의 정부 광고가 국민일보에만 실리지 않음
- 광고 대행을 담당하는 언론진흥재단 측도 정부로부터 "국민일보를 빼라"는 통보만 받았지 구체적인 경위와 근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

24) KBS '친일과 훈장' 불방 (2015.9)

2015.9.8. - KBS가 2013년부터 탐사보도팀이 취재해 온 <친일과 훈장>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의혹

- '친일과 훈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훈장'을 누가 왜 받았고 혹시 문제는 없는지를 알아보는 대기획 보도. '이승만·박정희 정부 시절 친일행적자 훈장 수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

- 친일 행적자와 일본인들에게 훈장이 가장 많이 수여됐던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 당시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민감하다'며, 담당 부장이 방송용 원고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됨.
- 당초 1TV <시사기획 창>을 통해 6월, 7월에 한 편씩 방송되기로 했던 <훈장>은 5월 말 터진 메르스 사태 때문에 7월 말로 연기
- 제작진은 "6월 말 '이승만 정부 망명요청설' 보도 이후 7월 초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8월에는 광복 70년 특집프로그램이 줄편성된다'는 이유로 7월말 훈장 방송 일에 훈장보다 늦게 발제된 아이템이 방송되더니 이후 <훈장 2부작>은 돌연 방송 목록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함.

2015.10.26.
- <훈장> 제작진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훈장>을 방송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사측을 비판
- 16년 2월 핵심내용이 변질된채 1부 '간첩과 훈장'이 <시사기획 창>을 통해 방영 2부는 방송 무기 연기 상태..

2016.7.28.
- 제작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최문호 기자가 지난 2월 뉴스타파로 자리를 옮겨 훈장 시리즈를 다시 기획해서 '훈장과 권력' 4부작 가운데 1부인 "민주' 훈장이 없는 나라' 방영
- 이후 총 세 편을 더 보내어 시리즈 마무리

25) 청와대 세월호 보도 통제와 공영방송 언론장악 (2016.7)

2016.6.27.
- 세월호특조위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과 당시 길환영 전 KBS 사장을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16.6.30.
- 전국언론노조 등 7개 언론시민단체는 6월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KBS 보도에 개입한 정황을 녹취록으로 공개
- 이 전 수석은 2014년 4월21일 오후 9시~10시, 2014년 4월30일 저녁 등 2차례에 걸쳐 김시곤 전 보도국장에 세월호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토로
- 녹음 파일에는 이 전 수석이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다시 녹음하도록 독촉하고, 대통령이 KBS를 봤다며 김 전 국장을 압박하는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등장

2016.7.13.
- KBS기자협회가 펴낸 청와대 길환영 사장 보도개입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

르면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 5일 길환영 당시 KBS 사장이 해경 비판 자제를 지시한 이후 실제로 'KBS뉴스9'는 애초 편집안에서 해경 비판내용을 완화 또는 삭제한 뒤 보도

→ 수정 전 '첫 신고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해경은 허둥댔다' '세월호 침몰 후에도 우왕좌왕했다' 등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한 내용은 삭제됐고 해경 조직의 역사 등 엉뚱한 내용이 빈 자리를 채움

- 이호찬 MBC 민실위 간사는 "'MBC 뉴스데스크'가 이정현 의원의 녹음된 육성 대신 '간절한 호소였다'는 이 의원의 해명만 구체적으로 다뤘다"며 "청와대의 언론 장악과 보도 통제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뉴스데스크'는) 이를 축소 보도하기 바빴다"고 지적

26) KBS 고대영 사장 '사드 보도지침' (2016.7)

2016.7.15.

-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 11일 고대영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종말고고도지역방어체계(사드) 관련 한국방송 '뉴스해설'에 불만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보도본부와 해설국 차원에서 2명의 해설위원들에게 주의를 주고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며 "고 사장은 불법적인 '보도 개입'과 '찍어내기'식 인사 시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
- 고대영 사장은 지난 11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그날 아침 <뉴스광장>에서 방송된 '사드 배치 결정… 과제는?' 제목의 '뉴스해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중국 관영매체의 주장과 다름없다", "안보에 있어선 다른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한국방송 뉴스 방향과 맞지 않다" 등의 지적을 한 것으로 알려짐
- 다음날인 12일 아침 보도본부 회의를 거쳐 김석호 해설국장에게 전해졌고, 해설국장은 해당 해설위원뿐 아니라 5달 전에 사드 관련된 뉴스해설(2월11일, '국가이익이 최우선')을 작성한 또다른 해설위원에게 "사장과 보도본부로부터 이런 지적이 있다"는 식의 주의를 줌

27) 선대인, 황교익 아침마당 출연 정지

2016.9.13. - 기 출연분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약속된 나머지 3회 출연을 취소함.

2017.1.16. - 황교익은 아침마당 출연을 약속하고 녹화까지 했지만 문재인 지지포럼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출연 정지 통보 받음. 선거기간도 아니었고, 선거기간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 없는 전문가가 녹화로 방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KBS의 선거보도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위반한 것임.

28) KBS 스페셜 '광장의 기억' 편성 보류

2017.4. - 촛불 정국에서 미온적이었던 KBS의 보도 태도를 반성하고 만회하고자 PD들이 요구한 3부작 중 '블랙리스트'(2017년 2월 11일 방송),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탄핵'(2017년 3월 11일 방송) 등과 달리 '광장의 기억'은 대선에 영향을 준다며 방송을 불가함. TV본부장은 평화 집회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 광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여 편성을 막음.

4. 공정방송 요구 탄압

1) KBS 비판적 기자 및 PD 탄압,비판적 프로그램 약화 (2008.9)

▶ 이명박 정권의 '청부사장' 이병순 사장, KBS사원행동 중심인물 비제작부서 발령: 지방이나 한직으로 내쫓아 방송장악 저지 활동을 무력화하는 동시에, 스페셜 팀, 시사보도팀 등에서 공영방송의 위상을 높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온 제작진을 일선에서 쫓아냄으로써 비판적인 프로그램의 제작 역량을 파괴하겠다는 의도

▶ 양승동 '사원행동' 공동대표는 TV제작본부 스페셜 팀에서 심의실로 전보하고, 같은 부서의

이강택 PD도 수원에 있는 인적자원센터 연수팀으로 발령. 또 탐사보도팀의 경우는 인원의 절반을 다른 부서로 옮겨 사실상 탐사보도팀을 해체하는 수준.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던 <미디어포커스>의 용태용 시사보도팀 기자도 보도본부 문화복지팀으로 전보됐다. 그밖에 '사원행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다른 사원들도 지방으로 좌천되거나 한직으로 발령.

2) YTN 노조원 징계 및 고소고발 (2008.9) 노종면,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해고 (2008.10)

2008.7.	- 이명박 대선 캠프 언론 특보 출신 구본홍 YTN 사장으로 내정, YTN노조 반발, 낙하산 저지 투쟁
2008.8.4.	- 구본홍 사장, 사내 게시판에 "집단 점거 농성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함은 물론 특가법상 가중 처벌되는 중대 범죄이며, 조합원이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상태로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도 노사관계법에 따라 형사 처벌되고 별도 사규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문책 방침 시사하는 글 게시
2008.9.9.~17.	- 9일 YTN 사측, 노종면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6명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 12일 사원 6명 추가 고발 - 17일 인사이동 조치 거부한 노조원 23명에 대한 징계 논의
2008.10.6.	- 노조 위원장 노종면 기자, 현덕수 조승호 권석재 정유신 우장균 조합원 해고 - 6명 해고, 6명 정직, 8명 감봉, 11명 경고 총 33명 징계 조치로 80년대 이후 최초의 언론 해직, 징계사태
2009.3.22.	- 노종면 전 위원장,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 조합원 체포 - 검찰은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2009.3.24.	- 노종면 전 위원장 구속 (2009.4.2. 출소)
2009.4.1.	- YTN 노사, 파업 사태와 해직자 문제 해결 위해 노사 합의서 작성, 2008년 10월 해직자들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 따르기로, 고소 취하, 파업 종료 합의 - 2009년 배석규 사장, 보도국장 복수추천제 폐지
2009.11.	- 법원이 1심에서 해고자 6명 전원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YTN 경영진은 항소

2012.1.15. - 2010년 이명박의 측근 김재철이 MBC 사장으로 취임한 뒤 공정방송으로서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비판을 받던 MBC에서 기자들이 뉴스 제작을 거부하며 시작된 파업, MBC에 이어 YTN, KBS도 동참

2012.4. - 김종욱 전 언론노조 YTN 지부장 외 조합원 60명, 파업 도중 '배석규 YTN 사장이 충성심이 높다'는 내용의 MB정부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건이 폭로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임원실을 점거하고 연좌농성

- 사측의 형사고소에 경찰은 무혐의 송치
- 검찰은 2년 뒤인 2014년 조합원들 불구속 기소

2014.11.27. - 대법원 해고자중 권석재,우장균,정유신 해고 무효확정

2016.6. - 1심 재판부는 "2012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 선고, 검찰 항소

2016.9.30. -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 검찰의 항소 기각, 무죄 선고

2017.3.16. - 대법원 2부,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3명(김종욱·하성준·임장혁)에게 무죄 선고 원심 확정

3)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경찰 연행 (2009.11)

2009.11.5. -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 중인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주변 경찰 포위, 1인 시위를 가장한 불법시위라는 이유, 최 위원장 연행 시도했으나 시민들의 항의로 5M쯤 끌고 가다 풀어준 뒤 플래카드, 피켓, 음향시설 등 농성장 물품 모두 압수

2009.11.9. - 미디어법 국회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던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경찰연행

-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단식농성 도중 '불법 집회이니 해산하라'는 경찰의 경고 방송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오후 2시께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와 함께 서초경찰서로 연행됨,

4) MBC , 노조 무더기 징계 (2010.6)

2010.6.4.
- MBC, 인사위원회서 노조 파업 주도한 이근행 위원장, MBC 사내 게시판에 김재철 사장 비판하는 글 올린 오행운 PD 해고
- 41명 사원들에게 무더기 징계 조처, 노조 집행부 20명 정직 1~3개월 또는 감봉 1~3개월, 입사 동기별 성명서 주도한 이채훈 PD 정직 1개월, 다른 직능부문별 단체장과 실명으로 성명서를 낸 편성제작국 보직부장 등 구두경고
-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경영진이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을 거쳤다 주장
- "징계자 명단이 MBC가 아닌 청와대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 "큰집으로부터 조인트를 까인 김재철·황희만이 노동조합 집행부 탄압에 청와대의 실시간 지도를 받아가며 대행해 왔다는 증거이고, 선거이후 더 이상 여론에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징계안을 결재한 것" 이라 주장

5) MBC 파업과 사측의 노조 중징계 (2012.5-6)

2012.2.29.
- MBC 인사위원회, 제작 거부를 주도했다는 이유, 박성호 기자회장 해고

2012.4.9.
- MBC 사측 인사위, 노조 집행부 9명, 보직 사퇴 간부 6명 등 15명에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박성호 기자회장은 정직 6개월로 낮춰
- MBC노조 조합원 200여명 검은 정장 입고 10층 사장실 앞에서 시위

2012.5.17.
- <뉴스데스크> 권재홍 본부장, 퇴근 도중 파업한 노조원들 수십 명에게 저지당해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았고 20분간 노조원들에게 둘러싸여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주장

2012.5.18.
- 노조 영상 공개, 권 본부장과 신체 접촉 없었음이 확인, MBC 사측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급히 말을 바꿨으나 거짓 보도라 비난받게 됨

2012.5.30.
- 박성호 기자회장 재해고,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과 왕종명 기자에 대해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
-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징계 사유에 대해 "정상적 뉴스 제작 방해, 권재홍 보도본부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발언

2012.5.31.
-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성호 기자회장의 징계는 '지난 17일 권재홍 보도본

부장의 부상을 조작해 노조를 음해하려다 영상 공개로 무산되자 저지른 보복성 징계' 라 논평

2012.6.20. - <PD 수첩> 최승호 PD 해고, 김 사장 취임 이후 해고된 사람 총 8명으로 늘어남
- 인사위 회부된 인사 전원 중징계 처분, '스타급' 노조 조합원들 대거 징계 대상
- 노조의 강경 투쟁이 꺾이지 않자 노조 홍보의 상징성을 지닌 인물들만 솎아낸 게 아니냐는 지적 제기, 전직 노조 위원장들이 모두 해고된 것도 그 지적을 뒷받침하는 처사로 풀이됨

6) MBC <PD수첩> 작가 전원 해고 (2012.7)

2012.7.25. - MBC, <PD 수첩> 작가 전원 해고
- 해고당한 작가들은 10분 분량의 생생이슈 코너를 맡은 임효주, 이김보라 작가와 40분 분량의 심층보도 코너를 맡은 정재홍, 장형운, 이화정, 이소영 작가 등 총 6명
- 해고 이유는 "아이템이 진부하고 시청률 낮다", 그러나 제작진은 윤길용 전 시사국장체제 이전에는 검사 스폰서, 민간인 사찰, 기무사 민간인 사찰, 4대강 문제 등 국민들이 알아야할 프로들을 방송에 내보냈고, 시청률도 10%를 넘는 일이 많았다며 반박
- 한진중공업 사태, 한미 FTA 문제, 4대강 문제, 제주 해군기지 문제, 대북 경제제재 문제 등의 사건들을 통제, 시청자들에게 외면을 받은 걸 모두 작가에게 책임 물어
- <PD수첩> PD 10명 중 1명을 징계 조치하고 다섯 명을 대기발령한 상황에서 이뤄진 조치, <PD수첩>의 싹을 잘라내겠다는 분석
- MBC는 1년 후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PD' 5명을 채용한 뒤 그 중 3명을 PD 수첩에 배치하며 <PD수첩> 싹 자르기
- 정재홍 작가, "이번 해고 조치는 <PD수첩>으로 상징되는 언론적 비판 기능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 이라 비판, 언론 학살 언급
- 12월까지 계약이 유효함에도 해고 조치
- MBC PD들, 작가들에 대한 해고 조치 철회 요구 담은 성명서 발표 예정
- 정재홍 작가 "이번 사태는 <PD수첩> 무력화를 위한 마지막 종결판"

-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아이템 선정부터 스토리 틀을 만들고 취재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는 구성 작가들의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사교양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7) MBC 교양제작국 폐지 등 조직 개편 (2014.10)

▶ 교양제작국 해체와 시사 교양 프로그램 축소를 통해 비판적 PD 들의 입지 약화 기도
▶ 사회 비판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PD들의 내부 조직약화의도
▶ PD 해고 또는 비제작부서로 발령

8) MBC 기자·PD 등 무더기 부당전보 (2014.10)

2014.10.31.
- MBC가 인사배치를 통해 교양국 PD들을 비제작부서로 잇따라 발령한 가운데, MBC 기자들도 보도와 무관한 예능·드라마마케팅 부서로 발령
- '잇몸약 과장광고'로 한국PD대상 교양부문상을 수상한 이우환 PD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알린 이춘근 PD, <PD수첩>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점을 짚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다가 제작 중지 명령을 받고 신천교육대에 들어갔던 김영호 PD는 교육 발령
- 방송기자연합회장 출신인 임대근 기자와 <시사매거진 2580>에서 활약한 강연섭, 이용주 기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
- 영화 <제보자>의 모델이 된 한학수 PD와 김환균 PD, 조능희 PD는 현재 <다큐스페셜> 취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비제작부서로 발령
- 한학수 PD는 스케이트장 관리 운영직으로 전보되었으나 결국 계획 철회

2016.12.
- MBC 김환균, 한학수 PD 등 9명의 PD와 기자들이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 1심에 이어 항소심 승소
-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적힌 원칙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보발령을 무효라고 한 제1심 판결의 평가는 정당하

다"고 판결

- "원고들이 전보발령으로 취재나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다양한 사회현실을 취재하고 그 중 공적인 관심과 토론의 대상이 돼야 할 주제를 선별해 보도함으로써 시민의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는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됐다면 이는 당연히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

2017.4.14. - 대법원에서 는 13일 김환균 PD 등 9명의 기자·PD들이 항소심까지 승소한 전보발령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승소 확정

9) KBS, MBC 부당징계 (2014.6)

▶ MBC에서는170일 파업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첫 날부터 보복인사, 부당전보, 부당교육, 부당징계가 마구잡이로 자행.

▶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조합원은 파업 중 해고된 6명을 비롯해 정직(38), 대기(54), 부당전보(47), 부당교육(87) 등 150여명에 이름

▶ MBC 경영진은 파업 종료와 함께 이들의 복귀를 지연시킬 수단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급조해서 운용. 신천교육대는 교육장소인 잠실 MBC아카데미 위치가 신천역이어서 불리게 된 이름으로 인문교양, 요리, 요가 등을 가르치며 격리목적으로 운용된 대표적인 부당교육 사례

2014.6.2. - MBC 인사위원회에서 신지영 기자는 지난달 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조급증이 민간잠수부의 죽음을 떠밀었다는 내용의 데스크리포트가 출고되기 전 다른 부서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 기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기사를 걱정하며 같이 판단해보자고 한 것을 외부 유출이라며 징계 한다"며 비판
- KBS 길환영 사장은 자신의 퇴진을 주장하며 보직사퇴한 보도본부 부장들을 각 지역 평기자로 보내는 인사를 강행
- 길 사장은 이날 유석조 전 뉴스제작2부장, 조재익 전 사회1부장, 장한식 전 사회2부장, 이재강 전 국제부장, 김혜례 라디오뉴스제작부장, 홍사훈 시사제작1부장(직대) 등 6명의 보직사퇴 부장을 각각 부산·춘천·창원·대전·광주·전주 방송총국으로 평기자 발령
- 신택진 제작기술센터 중계기술국 총감독을 경기 과천 관악산 송신소로, 김명중 제작기술센터 보도기술국장은 경기 시흥 소래 송신소로 보내는

등 기술직군 부장들도 인사 조처

10) MBC 경영진 소송남발 배임행위 (2016.5)

2015.10.3. -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에 따르면 10월 기준, MBC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해고 등 징계 건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51개. 이중 39건이 판결났고 그 결과 회사가 패소한 경우가 33건이며 회사가 징계와 관련해 승소한 경우는 단 1건인 것으로 드러남

- 송 의원은 MBC는 이 소송을 위해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등 대형로펌 7곳에서 46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으며 이들에 대한 수임료와 소송에 들어가는 인지대만 해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MBC는 송 의원의 관련자료 제출요청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

2016.4.29. - MBC가 지난해 언론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 박석운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림

2016.5.10. - MBC 공동대책위원회는 "비판하는 이들을 옭아매기 위해 공영방송의 재원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오늘 날 MBC의 명예는 과연 누가 훼손하는가"라고 지적

11) MBC 권성민 PD 해고 (2015.1)

2014.5.17. - 권성민 PD가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엠병신 PD입니다.'라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문화방송의 보도 내용을 비판하고 시청자한테 사과하는 내용의 글 게시

2014.6.10. - MBC는 회사 명예 실추 및 MBC 소셜미디어가이드라인 위반 이유로 권성민 PD에 정직 6개월 징계 처분

2014.12.11. - 정직 종료 후 즉시 예능1국에서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

2015.1.21. - <문화방송>(MBC)이 회사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 등을 담은 만화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등 해사 행위를 반복했다는 이유로 권성민

PD의 해고를 확정

2015.2.16. - 권성민 PD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보발령무효 및 해고무효의 소를 제기

2015.9.24. -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 권성민 PD 정직 및 해고 무효 판결

2015.12.9. -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김대웅 부장판사)가 9일 MBC가 권성민 PD를 해고 및 부당 전보한 조치가 무효하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MBC의 항소를 기각

2016.5.13. -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사측이 상고를 기각해 권 PD의 해고무효가 확정

2016.5.23. - 권성민 MBC PD가 23일 복직 후 예능국으로 복귀

12) 'MBC 녹취록'과 사측의 보복 해고 (2016.1)

2016.1.24.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백종문 MBC 미래전략본부장이 2014년 4월 한 식당에서 극우 인터넷 언론사 대표와 나눈 녹취록 공개

- 2012년 MBC노조의 파업때 해고된 최승호PD와 박성제 기자는 노조집행부가 아닐뿐더러 파업이나 쟁의행위에 앞장 선 사람도 아닌, 당시로서는 파업에 참가한 일반 조합원임에도 해고를 당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었음
- 녹취록에서 이 두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해고됐다는 사실이 드러남
- 백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박성제 기자와 최승호 PD를 해고한 것에 대해,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서 증거는 없지만 해고했다"고 실토. 그러면서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수십명이든 상관없다"며 증거도 없는 불법·부당 해고를 자행하고, 회사돈을 쏟아부어 해결하겠다는 말도 덧붙임. 회사의 재산 손실을 뻔히 알고도 저지른 불법의 배임행위
- 고영주 이사장은 부산 임원 워크샵을 핑계로 이사들이 제기한 긴급 임시 이사회의 요구를 거부

13) KBS 정홍규, 김준범 징계

2016.2.19. - KBS 본부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 간사 정홍규 6개월 감봉 징계

결정: 2015년 11월 14일 KBS 메인뉴스 <뉴스9> '민중총궐기 집회 교통체증-수험생 발 동동' 취재기자와 담당 부서장에게 취재 경위 문의하고 불공정 보도 우려를 전했다는 이유임.
- 2016년 7월 12일 지방노동위원회 징계 무효 확인 결정
- 기자협회 공정방송국장 김준범 주의 결정: 박근혜 정부 인수위 청년특별위원 출신 이종식의 중소기업 특혜 선전 의혹 제기 이유로.

14) KBS 정연욱 기자 부당 전보 (2016.7)

2016.7.13. - 정연욱 KBS기자가 '이정현 녹취록'에 대한 KBS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을 "침묵에 휩싸인 KBS…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으로 기자협회보에 기고
- 6월30일 사회2부에서 작성한 <언론노조, 이정현 전 홍보수석-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통화 녹음 공개>란 제목의 단신은 승인을 받지 못했음을 공개하며 비판

2016.7.15. - KBS가 정연욱 기자를 제주방송총국으로 보복성 인사 조치

2016.10.10. - 정연욱 KBS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정 기자에 대한 KBS의 인사발령과 관련해 "제주방송총국 근무를 명하는 내용의 인사명령 효력을 임시로 정지한다"고 밝힘

2017.3.31.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3부는 31일 정 기자가 지난해 10월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효력정지 1심 선고공판에서 해당 전보발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힘. 법원이 해당인사의 부당함을 인정

2017.4.21. - KBS는 지난 20일 정 기자를 제주로 발령 냈던 지난해 7월15일 인사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히고 1심에서 패소한 KBS 사측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 이에 따라 정 기자는 제주 발령 전 근무 부서인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경인방송센터'로 원직 복귀

15)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보도 지시 항의 기자 징계 : 결국 무효 판결

2016.8.24. - '인천상륙작전' 홍보성 보도 지시 항의한 송명훈, 서영민 기자 징계: 2016년 7월 29일 문화부 팀장과 부장이 지시한 전문가 평점 비판 기사 시의적절하지 않고 근거가 없다고 거부한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함. 징계는 편성 독립성 규정한 방송법 4조와 KBS 방송편성규약 5조 2항과 4항을 위반한 것임.

5. 미디어법 강행 및 종편 허가

1) 한나라당 '미디어 악법' 발의 (2008.12)

2008.12.4.~5. -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발의
-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기준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 사실상 재벌들의 지상파 소유 제한 규정을 완전히 없애
- 신문·통신사와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은 4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008.12.21. - 민주당,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중 하나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송법, 거대 신문사들의 시장지배를 허용하고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신문법 등 언론장악 악법 선정

2008.12.24.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나라당의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 26일 아침 6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 언론노조는 이번 사태를 이명박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로 규정

2009.1.6. - 여야 합의, "방송법을 비롯한 미디어 관련 법안 6건(방송법·신문법·IPTV법·정보통신망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미디어 관련 법안 2건(언론중재법·전파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협의 처리한다"

2009.2.25. -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문방위 전체회의서 여야가 대립하던 미디어 관련법 기습 상정
- 고 위원장, '보도자료' 통해 "미디어 관련 법안이 문방위로 회부된 지 2~6개월이 지났으나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위배되는 것

이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으로서 미디어관련법안의 개인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국회법 제77조에 의거, 의사일정의 변경의 절차를 통해 미디어 관련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다"고 밝힘

2009.3.6.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쟁점 미디어법의 여론수렴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 의결. 한나라당(10명), 민주당(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2명) 등3개 교섭단체가 위원 추천

2)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활동

2009.3.13.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미발위) 발족
-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한나라당 추천)와 강상현 연세대 교수(민주당 추천)이 공동 위원장
- 논의시한 연장/연장불가, 공개/비공개 토론 등 여러 부분에서 갈등 발생

2009.6.5.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미발위)의 활동 시한을 기존 15일에서 25일로 연장

2009.6.17. - 미디어위 파행종료, 여론조사 실시 여부 놓고 여야가 합의점 찾지 못함
- 야 : 미디어법 처리 앞서 여론조사 실시 주장 / 여: 현실적으로 불가능, 여론조사 수용 불가
- 민주당은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를 거친 뒤 보고서 작성 하겠다 밝혀, 여야 갈등, 각자 독자행보

3) 미디어악법 날치기 처리 (2009.7)

2009.6.22. - 한나라당 측 추천위원들, 민주당 측이 불참한 가운데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소유제한은 완화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디어법 대안 발표

- 민주당, 일반국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한국리서치에 미디어법안 개정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 미디어법 6월 처리 반대 입장

2009.6.25. - 한나라당, 방송법을 비롯 쟁점 미디어법에 대한 심의 본격 착수
- 미디어위, 민주당 제외 한나라당, 선진당 추천 위원 11명만이 자리한 회의에서 최종 보고서 확정,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에 제출

2009.6.29. - 한나라당, 친박연대 등과 9일 문화예술진흥법과 정보통신공사기술관리법 등 31개 법안 논의 위해 문방위 전체회의 소집 요구
- 한나라당, 이번 임시국회에 반드시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 강조

2009.7.9. ▶ 민주당, 미디어법 대안 제시
- 시장점유율 10% 미만인 신문 및 뉴스통신에 한해 종합편성채널의 20%까지만 지분을 보유. 기업은 자산규모 10조원 미만에 한해 지분보유 상한을 30%로 규정
-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 분야를 제외한 이른바 `준종합편성채널'에는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모든 신문.뉴스 통신 및 대기업도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보도전문채널이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유지

▶ 한나라당 제시 미디어법
- 국회에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에서 종합편성에 대한 신문 등의 지분보유 상한을 30%까지 허용했으며, 기업의 자산규모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
- 보도전문채널에는 49%, 지상파 방송에는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최근 2013년부터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 핵심적인 차이는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및 지상파 방송에 대한 진출 장벽의 유지 여부이며, 신문이 방송에 진출할 경우 여론 독과점 우려에 따라 1개 방송그룹의 시청률이 일정 비율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 프로그램은 위탁하도록 하는 `시청자점유율 상한제도'를 두는 사후규제 방안은 동일

2009.7.14. - 안상수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을 이끌고 국회의장실 방문,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법이나 비정규직법 등이 제대로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며 "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 공식요청

2009.7.22. - 한나라당, 오전에 협상 결렬 선언, 의장석 점거
-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법 직권 상정을 밝혔으며 오후 2시 즈음 질서 유지권 발동
- 오후 3시, 한나라당 의원들 국회 본회의장 진입, 의장석 차지, 의결정족수(148명) 채움
- 김형오 의장, 한나라당 출신 이윤성 국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줌, 3

시 30분에 이윤성 부의장 본회의장 들어옴
- 의장석을 차지하기 위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간의 대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윤성 부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회를 선언, 미디어 관련법을 직권 상정, 투표 실시함
- 신문법 개정안이 재적 163명 가운데 찬성 152명으로 법안이 가결
- 다음 방송법 수정안을 투표하였으나 재적 145명, 찬성 142명으로 재적 의원의 수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재투표를 실시, 재적 153명, 찬성 150명으로 가결. 재투표는 민주주의를 완벽히 무시한 한나라당의 독단으로 진행
-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 진행과정에서의 대리 투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어 원래대로라면 나중에 다시 논의되어야 할 방송법의 바로 재투표 등을 제기하며 무효 주장

2009.10.29. ▶ 민주당, 미디어법 위헌 소송제기
-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판결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법안은 실효성 인정, 무효청구는 기각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재투표에 붙인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되므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러나 방송법안가결선포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 진보신당 노회찬대표의 '위조지폐는 맞는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 라고할 수는 없다'는 표현에 이어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합격은 인정한다',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장물은 합법이다' 등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패러디가 유행함. 민주당은 처리과정이 위법하므로 국회에서 재논의하자고 했지만 한나라당의 묵살로 무산

4) 방통위 조중동 종편 추진 기본 계획안 의결 (2010.9)

2010.9.17.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과 보도전문PP 선정 기본 계획 의결

2010.9.19. - 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 언론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종편의 탄생은 여론다양성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 산업 전반을 망가뜨릴 거라 지적했으나 방통위는 조중동에 방송을 나눠주겠다는 정략적 목적을 관철시키려한다고 비판
- 광고시장 규모를 볼 때 한 개 정도의 종편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을 무시하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모두 사업자로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 비판, 종편과 보도전문PP를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해 종편에서 떨어진다 해도 보도전문PP라도 주겠다는 발상, '조중동을 위한 계획'임이 여실히 드러남을 지적

5) 종합편성 채널 개국 (2011.12)

2010.12. - 종편, 조선일보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CSTV를 포함, 동아일보(채널명 채널A), 중앙일보(jTBC), 매일경제신문(MBS), 한국경제신문(HUB), 태광그룹(CUN)사 등 6개 사업자 신청
- 보도전문채널, 연합뉴스(채널명 연합뉴스TV), 서울신문(SNN), 헤럴드미디어(HTV), CBS(굿뉴스), 머니투데이(MTNe ws) 등 5개 사업자 신청
- 승인 심사 방식과 관련, 선정 사업자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총점의 80%를 넘는 사업자는 모두 허가하는 이른바 '절대평가' 방식 채택

2010.12.31. - 방통위,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종편 채널 : 조선일보(TV조선),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
보도전문채널 : 연합뉴스(뉴스Y)

2011.12.1. - 조선일보(TV조선), 중앙일보(JTBC), 동아일보(채널A), 매일경제(MBN), 연합뉴스(뉴스Y) 개국

6) 방통위 종편 재승인 기본계획안 의결 (2013.9)

2013.9.5.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서 종편 재승인 기본 계획안 최종 의결

2013.9.6. ▶ 민주언론연합 논평
- 방통위는 우려한 대로 애초 연구반에서 제시했던 종편 심사안보다 크게 후퇴된 심사안을 의결함으로써 사실상 '종편 생명줄 연장'의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냈음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한 '계량항목 확대' 요구 묵살
- 종편의 편법적인 주주구성과 주주 적정성 문제, 이행실적 평가 등은 심사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막말방송 등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제재결과를 엄격히 적용하라는 언론시민단체들의 요구마저 무시
- 연구반의 재승인 심사안조차 반영 X,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항목,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정성' 항목 등 주요핵심항목의 과락기준을 60%미만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방통위는 50%미만으로 과락기준을 완화, 종편의 살길만을 마련한 점 강력 비판

7) 결격인사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참여 (2014.4)

2014.1. - 조선·중앙·동아일보 종편 사업자들은 지난 1월 중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명단'(결격사유 명단)을 제출했으나 이중 몇몇을 누락

2014.3.10.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이 제출한 결격사유 명단을 토대로 심사위원 검증 없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시작

8) 종편의 불법, 탈법 광고행태 방조 (2015.5)

2015.3.8. - <선데이저널>이 MBN 미디어렙 영업1팀의 영업일지 일부를 공개하여 종합편성채널 MBN의 추악한 광고영업 행태를 폭로
- 이 일지를 통해 그동안 언론 시민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던 종편의 약탈적 광고 행위가 실제로 종편의 광고영업 현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남
- MBN 미디어렙 광고1팀의 업무일지에는 경쟁사인 다른 종편 방송사들의 공격적인 광고영업 행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MBN 뿐만 아니라 모든 종편 방송사들이 약탈적인 광고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줌

2015.3.27. - 민언련이 MBN의 영업일지를 분석한 보고서 발표
- MBN은 광고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자사 기자들을 광고 프로그램제작에 투입
- 또한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한전에 돈을 받고 홍보치적을 일삼는 등 불법 탈법 행위를 자행
- 기자를 광고영업과 협찬유치에 동원하고 있다는 점 지적

2015.5.5. - 최민희 의원실은 TV조선과 채널A, MBN의 광고영업 행태가 심각하다고 폭로
- 이들은 모회사, 자회사, 또는 방송사 스스로 광고나 협찬 계약을 맺는 등 미디어렙법을 위반하고 돈을 받고 보도에 출연을 시켜주며 시상을 빙자해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태도 있었음

2015.9.16.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미디어렙이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
-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단 6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과태료를 감경하는 데에서 '솜방망이' 처벌 의심

9) 방통위 TV조선 '부정 재승인' (2017.3)

2017.3.24. -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결과 '탈락점수'를 받은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아 생명 연장. TV조선이 재승인 합격선인 650점을 넘지 못한 625점을 받았지만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
- 방통위는 총평으로 "TV조선은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 마련하려는 의지 부족하다"면서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다.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됐으나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향후 5년간 계획도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됐다"고 밝힘
- 그러나 "TV조선이 청문회 때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의지를 보인 점과 청문주재자 의견, 시청권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서 "재승인을 바로 거부하기보다는 한차례 기회를 주되, 사업계획 및 추가개선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함
- 재승인 조건이 까다롭게 부과됐지만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

6. 공영방송 이사회 극우인사 배치 및 장악 체제 공고화

1)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연임과 논문 표절 (2012.8-9)

2012.7.27. - 김재우 이사장, 방통위 전체회의서 연임 결정, 이명박 임기 끝날 때까지 김재철 체제 유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 야당 추천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 연임 강행에 대해 이명박 정권의 불통 먹통 인사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폭거라 비난

2012.8.5. - 김재우 이사는 2005년에 단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받았음
* 민주 신경민 의원, 김 이사의 박사논문 116쪽 중 수십 페이지 이상에서 심각한 표절 혐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장
- "현재까지 활용된 것만 연구소 보고서 4건, 논문 3건, 언론사 기사 2건, 백과사전 내용 1건 등 10건" 이며, 일부 내용은 토싸까지 똑같을만큼 벽산 내부 자료 분석을 제외한 대부분이 표절로 의심된다 주장

2012.8.27. - MBC 최대 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9기 이사장으로 김재우 이사장 선임

2012.9.24. - 단국대,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본조사로 넘김, 대학까지 정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 제기

2013.1.16. -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김 이사장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한 부분이 양적으로 방대하다"며 "표절된 부분이 전체적 논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며 김재우 이사장 논문 표절 확정,

2013.1.24. - 방문진 이사회, "김재우 이사장 논문표절 소명하지 않으면 이사장직 불신임, 사퇴권고 등 엄중히 판단하겠다", 김재우 이사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 김 이사장 측은 단국대에 재심 신청
- 이사들, "업무보고 불참은 진흥회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전면 부정한 것이며 이사들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진흥회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이라며 김 이사장이 다음 달 7일 이사회에 출석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촉구

2013.2.26. - 논문 표절 판정과 재심 기각에도 불구, 김재우 이사장 버티기 일관, 방문진 파행 거듭, 이사 5명 회의 거부, 사실상 업무 마비
- 김재우 "단국대가 학위 취소시키면 물러나겠다" 입장 고수, 표절 의혹 제기 할 때는 "표절 판명나면 이 자리 오지 않겠다" 하더니 예비조사에서 표

절 판정이 나자 "본조사 결론이 나면 물러나겠다" 는 등 계속 말 바꿈
- 단국대 관계자, 학사 일정 때문에 위원회 개최가 늦어졌을 뿐, 학위취소는 기정 사실이라 밝힘

2013.1.30. -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 사퇴권고 만장일치 결정

2013.3.13 - 김재우 이사장, 제 3차 임시 이사회에 출석, 사퇴 (오전 8~9시)

2)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2013.3)

2013.3.17. - 여야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타결
- 최종 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원안을 지키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내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법(가칭)도 제정키로 함

2013.3.18. ▶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 전파는 국민의 자산이며 이를 운용하는 방송정책의 책임과 방송 공공성 보장에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마땅함을 주장
- 방송정책의 미래부 이관이 방송공정성 유지는커녕 방송시장의 황폐화와 방송장악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촉구

3) '역사 왜곡' 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 (2014.9)

2014.9.4. - 국회의원 30명과 사회원로, 시민단체들이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의 KBS 이사장 임명 움직임에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이인호 KBS 이사장 임명 철회 촉구 성명발표

▶ 성명내용
- 이인호 씨는 민심의 제척을 당한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동영상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한 사람이고, 대표적 친일파였던 조부 이명세의 행각에 반성은커녕 변명과 궤변으로 옹호해 온 친일 극우적 사관을 가진 인물

-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끊임없이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하는 극우인사를 중용
- 이런 일련의 흐름이 박근혜 정부가 역사를 왜곡하고 거꾸로 되돌리려고 하는 시도로 보고, 결연한 심정으로 박근혜 정부에 경고함
- 박근혜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고 처절한 반성 속에서 민생을 챙기는 국정운영에 충실할 것을 촉구

2014.9.5. - KBS 이사회는 지난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야권추천이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인호 이사장을 선출

2014.9.30. - 민주언론시민연합, 역사정의실천연대 등 9개의 언론·역사 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이인호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

2015.9.2. - KBS 이사회는 이인호를 10대 KBS 이사장으로 재선출

4)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무력화 (2013.9)

2013.4.15. - 방송공정성특위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방송 독립성 보장, 해직 언론인 복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

2013.7.18. -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소위 구성 완료

2013.7.29.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전병헌 위원장이 사임하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

2013.8.20.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산하 '방송규제개선 및 공정성보장 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위원은 단 3명만 참석

2013.8.24. - 방송공정성특위 전체회의에서 방문진에 특위위원장 이름으로 이사회 회의록과 참석현황, 수당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을 거부

2013.9.27. ▶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 지난 3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이하 방송공정성특위)가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될 위기에 처함
- 방송공정성특위는 우려했던 대로 시작부터 삐걱거림. 4월 중순이 되어서야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공전을 거듭해 '공전특위'라는 오명을 자초

- 방송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나 대안을 내놓기는커녕 어렵게 열린 회의조차 이런 저런 이유로 불참하는 등 새누리당이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시간만 낭비한 점 지적
- 조해진 의원은 방송사가 정치적으로 독립해도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한 '반쪽자리 중립'에 그칠 것이라며 노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싸워온 노조를 오히려 공정방송의 걸림돌인 양 호도한 것을 비판
- 방송공정성특위에 해직된 언론인 복귀 및 명예회복, 방송사 지배구조개선,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촉구

2013.9.27. -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1월 30일까지 연장

2013.11.28. -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에는 KBS·EBS 이사 결격사유,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 결격사유, 방통위·방통심의위 속기록 의무화 법률 규정, KBS·EBS·방문진 속기록 공개(비공개 시 합당한 사유는 법률로 제한), 방송의 보도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송사 내 편성위원회 노사동수 추천 구성 등이 포함
- 해직 언론인 여야 결의문도 약식으로나마 처리
- 새누리 "핵심의제 수용 못한다"며 공영방송 사장선임 특별다수제 등 공정성 확보방안 성과 없이 8달만에 종료

5) 보수 인터넷 매체와 국정원 연계의혹 (2013.12)

2013.11.22.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이 3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기사를 쓰도록 청탁한 뒤, 해당 기사가 보도되면 이를 트위터에 대량 유포한 사실 확인

2013.12.9. ▶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 국정원이 지난 대선기간,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등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남
- 더불어 국정원이 보수단체와 보수인터넷 매체를 '관리'하며 원하는 기사 내용을 청탁하기도 하고, 보수인터넷 매체들의 기사를 게시 혹은 리트윗하며 '선거개입'에 활용해 온 정황도 포착
- 보수인터넷 매체들은 기사의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마치 자사 기자가 작성한 기사인양 자사 매체에 기사를 올림

- 보수인터넷 매체가 '돌려쓰기'한 기사량이 많아, '인터넷 신문'이 갖추어야 할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 제기
- 이른바 '국정원통신'이 기사를 작성하고 이들 보수인터넷 매체들이 그 기사를 마치 자사가 작성한 기사인양 위장해서 보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제시
- 국회와 검찰은 국정원과 일부 보수인터넷 매체가 '대선여론조작 범죄행위'에 연루됐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히고, 이들 매체를 관리하는 서울시와 문화부 역시 등록요건 미달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입장 표명과 대책 요구

6) 뉴라이트 방통심의위 위원장 내정 (2014.5)

2014.5.13.
- 청와대가 방송프로그램 내용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5·16쿠데타를 미화한 뉴라이트 출신의 박효종 전 교수를 내정

2014.6.17.
- 박효종 서울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제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 박 위원장은 방송 전력이 전무한데다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포럼 회장으로 활동하며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 근대화의 초석을 닦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방송에서 5·16쿠데타를 두고 "쿠데타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고 말하기도 함
- 또한 대선에서 정치발전위원으로 박근혜 캠프에 참여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를 지내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는 지적
- 전국언론노조, 한국PD연합회 등 16개 언론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에 이어 방통심의위원장까지 극편향 역사관을 지닌 자를 임명했다"며 "방송을 장악·통제하겠다는 대국민·대언론 선전포고"라고 비난

7)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매카시즘 광풍' (2015.10)

2015.9.2. -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고영주 당시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했던 발언 내용을 공개
- 고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자신이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부림사건을 수사했다고 소개하며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에 문재인 후보도 변호사였다"면서 "그러므로 나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발언

2015.9.6. - 고영주 이사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인지 묻는 질의에 "민중민주주의자다.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전향한 공산주의자"로 평한 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쿠데타는 "형식은 쿠데타인데, 정신적으론 혁명"이라 발언

2015.9.4.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2016.9.28.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이사장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17.5.12. - 검찰이 1년 8개월 만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

8) KBS 차기환 이사,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등 임명 (2015.11)

2015.8.13. -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상임위원 5명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선임안을 의결. 그 중 고영주 감사는 방문진 이사로, KBS 이사 후보로는 차기환 방문진 이사를 추천
- 차기환 이사는 방문진 이사를 연임안 바 있어 3연임으로 논란

2015.8.21. - 방송문화진흥회 10기 이사회 첫 회의가 21일 열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막말로 자질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이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결정
- 이사장 선출 방법을 둘러싸고 여야 추천 이사들 간 의견 충돌로 야권 추천 이사들이 퇴장, 다수표를 가진 여권 추천 이사들이 표결을 강행

2015.9.1. - KBS 제10기 이사회 출범

9) 박근혜 대통령 MBC 사태 해결 약속 파기 (2016.2)

2016.1.29.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MBC 관련 약속을 파기한 것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던 이 교수는 2012년 MBC노조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일 때 박근혜 당시 의원으로부터 '노조가 파업을 풀면 MBC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노조에 전달하는 등 '메신저' 구실을 함

▶ 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 최승호PD·박성제 기자에 대한 '보복 해고'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MBC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했다는 주장까지 터져 나옴
- 이상돈 교수는 그해 8월에 취임 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통해 파업의 원인 제공자인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려는 구상을 했으나 청와대와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 등의 외압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말함
- 박근혜 정권이 MBC 사태 해결을 방기함으로써 MBC는 국민들로부터 점점 멀어져갔고 이에 대한 반사이익은 박근혜 정권이 독점했다고 주장
- 박근혜 대통령에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 증거도 없이 불법으로 후배들의 목줄을 끊은 파렴치한 MBC경영진들을 해임하고 2012년 약속을 지킬 것 요구

10) 조영기 방통심의위원과 국정원 커넥션 의혹 (2016.3)

2013.7.25. - 조영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강원도민일보>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칼럼을 기고
- 이 칼럼에서 국정원의 대북심리활동이 책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국정조

사중인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마치 당연한 직무수행 결과라고 강조

2016.3.9. - 뉴스타파는 <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기사에서"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한 대학교수의 이름으로 지역신문에 실렸던 국정원 옹호 내용의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폭로

-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13년 7월 현직 대학 교수에게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 기고문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오피니언 기고문 형태로 그대로 실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교수에게 보낸 이 글은 2013년 7월 25일 자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조 교수의 이름으로 오피니언 기고면에 그대로 실림. 국정원 직원이 첨부한 문서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음
- 만약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리던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대학교수의 이름을 빌려 마치 전문가의 목소리인양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한 셈. 또 조영기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기고문을 사전에 국정원과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여론 대응에 있어 교수와 국정원이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국정원이 지역 일간지의 기고문 하나까지 간섭하고 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함

11) MBC 경영진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 거부 (2016.5)

2016.5.2. -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당시 보도본부장) 대전MBC 사장, 박상후(당시 전국부장) 문화레저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

-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월호 특조위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경우 발부. 이마저 거부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016.5.11. -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은 이진숙 사장에게 출근길에 동행명령장 전달을 시도했지만, 이 사장은 회사 경비원 등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후 사장실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가 특조위의 공무집행을 방해

2016.5.12. - 박상후 부장이 정상적으로 출근했음에도 MBC 측은 특조위 조사관들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박 부장이 해외 출장 관계로 부재중이라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

2016.5.16. - MBC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비상식적인 조사"라며 불응 의사를 밝힘

- MBC는 '세월호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과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MBC를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조위의)자료와 답변 요구는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

2016.7.21. - 방송문화진흥회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한 안광한 MBC 사장 등 임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

-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MBC 주요 간부들의 세월호 특위 동행명령 거부에 관한 진상규명 및 조치의 건' 결의사항에 대해 여야 6대 3 구성의 이사회 여권 추천 이사 6명 다수의 찬성으로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 불응한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에 대해 '불문'에 부치기로 결정하게 됨